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Ⅳ 미주·EU

AMERICAS · EU

목 차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Ⅳ

미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제3장 검역제도 11
제4장 라벨링 제도 14

캐나다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5
제2장 통관제도 27
제3장 검역제도 37
제4장 라벨링 제도 43

브라질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5
제2장 통관제도 56
제3장 검역제도 76
제4장 라벨링 제도 81

멕시코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93
제2장 통관제도 94
제3장 검역제도 105
제4장 라벨링 제도 115

EU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25
제2장 통관제도 126
제3장 검역제도 155
제4장 관세제도 166
제5장 라벨링 제도 169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Ⅳ

미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1. 관리・법률체계 6
2. 통관절차 6
3. 관세제도 8

제3장 검역제도 11

1. 관리・법률체계 11
2. 품목별 검역절차 11

제4장 라벨링 제도 14

1. 미국의 식품 라벨링 14
2. 표시사항 14
3. 라벨링 샘플 19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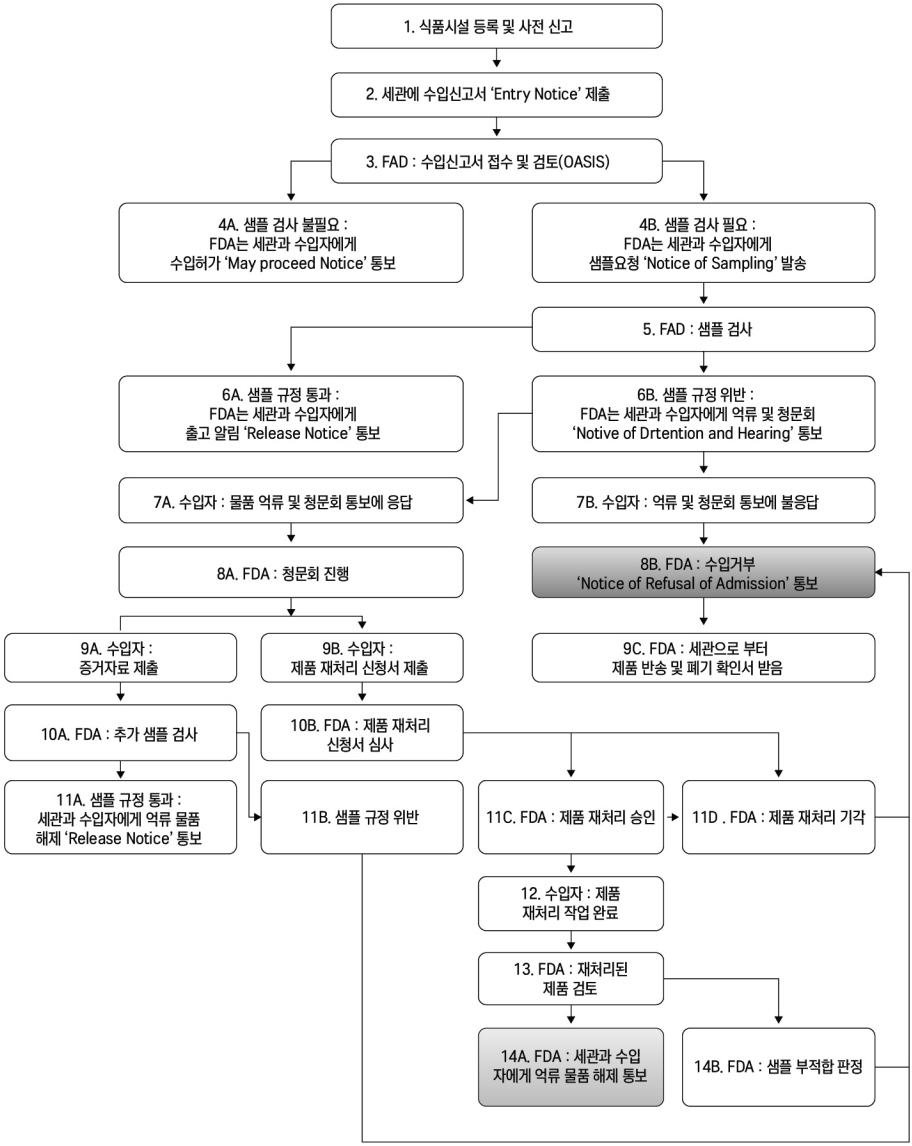

* 출처 : FDA, 수입식품 검사 절차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식품수입 관련 주요기관 및 규정

○ 통관 관련 전반적인 업무는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이 관장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식품 관련 주요기관〉

기관명	관할 품목
식품의약국(FDA)	식품(FSIS 관리-육류 및 가금류 제외), 사료, 의약, 화장품, 등 수입규제
식품안전검사국(FSIS)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리 및 규제
동식물검역소(APHIS)	동물 및 식물 검역
환경보호청(EPA)	독성물질 및 폐기물 관리 및 규제

❑ 식품 수입 관련 주요 규정

○ 연방규정 21섹션-식품의약품화장품법(CFR Title 21-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

○ 바이오테러대응법(The Bioterrorism Act)

○ 수입우유법(Import Milk Act/Filled Milk Act)

○ 연방규정 19섹션-관세(CFR Title 19- Customs Duties)

2. 통관절차

가. 수입통관절차

○ 통관절차는 식품시설 등록→사전신고→수입신고→납세신고→관세납부→물품 반출 순으로 진행됨

○ 수입물품은 선박(혹은 항공) 도착 후 수입신고서(Entry & Entry Summary)를 제출함. 화물 도착 하루 전에 화물전자신고시스템(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해 적하목록을 CBP에 제출함.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지에서 출고 24시간 전에 Importer Security Filing(ISF 혹은 '10+2'라고도 불림)을 제출해야 함
○ 신고된 물품이 고 위험군에 속할 경우, 서류 및 물품검사를 실시함
○ 수입자는 물품의 출고 허가를 받으면 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물품을 출고함
○ 관세 정산은 관세청에서 검토 후 납세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사후 조정을 통해 정산을 진행함

❑ **식품시설 등록(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및 수입식품 사전신고(Prior Notice)**

○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 가공, 포장 및 보관 업체는 FDA에 식품시설을 등록해야 함
- 시설 등록은 https://www.access.fda.gov를 통해 2년마다 갱신해야 함
○ FSMA 시행 이후 오염식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입식품은 미국 도착 전에 수입식품 사전신고(Prior Notice)가 의무임. 만일 수입식품이 다른 국가에서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사전신고를 통해 어떤 국가에서 수입이 거부됐는지 알려야 함

❑ **수입신고(Entry)**

○ 수입신고는 통관의 첫 단계로 수입물품의 출고를 허가 받는 절차임. 항구도착 5일 전부터 사전신고가 가능하며 항구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함
○ 수입신고의 세관양식은 CBP Form 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사용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혹은 항공증권(Airway Bill), 보증금(Customs Bond)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
○ 품목에 따라 FDA와 EPA, 미국 교통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함

❑ **납세신고(Entry Summary)**

○ 물품 신고 후 10일 이내에 추정 관세와 필요 서류를 세관에 납부해야 함
- 일반적인 통관의 경우는 세관양식 CBP Form 7501(Entry Summary)을 사용하나 통관 종류에 따라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음
- 추정관세를 계산하여 세관양식(Form 7501과 3461),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혹은 항공증권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

나. FDA 수입식품 검사 절차

- ㅇ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증금을 준비함. 세관은 FDA에 이를 통보하고 수입허가 여부를 요청함
- ㅇ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한 후 샘플검사가 필요 없으면 수입허가를 통보함. 만일 샘플검사가 필요하다면 세관과 수입자에게 샘플을 요청하고 검토함
- ㅇ FDA는 샘플을 검토한 후 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허가를 통보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제품 억류와 청문회를 통보함
- ㅇ 수입자는 청문회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만일 청문회에 응답하지 않으면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해야 함
- ㅇ 수입자는 제품의 재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이 서류는 제품에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반입한다는 계획에 대한 허가 요청서임
- ㅇ FDA는 서류를 심사한 후 재처리 작업 과정을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음
- ㅇ 수입자는 승인된 재처리 작업을 완료한 후 이를 FDA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서류와 샘플을 제출함
- ㅇ FDA는 재처리된 제품의 샘플이 재처리 허가 기준에 맞게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함

3. 관세제도

가. 관리체계

- ㅇ CBP는 미국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수입자는 CBP에 수입식품의 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ㅇ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 HTSUS)에는 관세율이 명시된 2개의 열(Column)로 구분되어 있음

〈미국 관세율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18) Revision 11

Annotated for Statistical Reporting Purposes

II
7-2

Heading/ Subheading	Stat. Suf-fix	Articl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Rates of Duty 1 General	Rates of Duty 1 Special	Rates of Duty 2
0701		Potatoes, fresh or chilled:				
0701.10.00		Seed		0.5¢/kg	Free (A+, AU,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1.7¢/kg
	20	In immediate containers of not over 45 kg net weight	kg			
	40	Other	kg			
0701.90		Other:				
0701.90.10	00	Yellow (Solano) potatoes	kg	0.5¢/kg	Free (A, AU,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1.7¢/kg
0701.90.50		Other		0.5¢/kg	Free (A+, AU,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1.7¢/kg
		In immediate containers of not over 1200 kg net weight:				
	15	Russet or netted gem varieties	kg			
	25	Red skin varieties	kg			
	35	Other	kg			
		Other:				
	45	Russet or netted gem varieties	kg			
	55	Red skin varieties	kg			
	65	Other	kg			

나. 법률체계

○ 1열(Column 1)에는 일반 및 특별 관세율이 있음. 일반에는 미국과 일반적인 무역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관세율이고 특별 관세율은 특혜 협정 대상국의 관세율임

○ 2열(Column 2)에는 북한 등 테러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1열의 관세율과 동일한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관세율보다 세율이 더 높은 편임

- 관세 산출 방법은 수입제품의 총 구매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함. 따라서 관세율을 결정하는 HS 코드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관세가 계산됨

- HS코드는 미국 통상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ITC)에서 DB를 관장하고 있으며 〈http://hts.usitc.gov〉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S코드는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 분류이나 8단위 및 10단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미국 수입 시 미국에 맞는 HS 코드를 사용해야 함
- 식품 및 음료는 02섹션부터 22섹션으로 구성됨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검역절차

가. 수입허가증신청(수입상 → 농무부 동식물 검역국)
나. 수입허가(동식물 검역국 → 수입상)
다. 도착통지서(수입상 → 부두/공항검역소[CBP])
라. 도착통지서 전달/유통경로 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동식물 검역국)
마. 검역절차사항통보(부두/공항검역소[CBP] → 수입상)
바. 검역(CBP농산물 서비스)
사. 통관(CBP)

❑ 검역기관

○ 미국에서 동식물의 검역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농무성 산하의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에서 담당함

○ 주요임무
-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한 외국 농산물의 해충과 질병 유입방지
- 유해 외국 농산물의 국내 반입에 따른 긴급조치 및 해소
- 국내의 동식물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결함 해결
- 국내의 가축 질병과 식물 해충의 퇴치
- 과학적인 식물위생 규격 설정에 의한 농산물 수출 촉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천연자원, 국민보건 및 안전에 대한 피해 예방
- 생명공학 및 유전자 조작기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

2. 품목별 검역절차

❑ 식물검역법

○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tine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해외 검역공고, 법령 등을 통하여 규정됨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 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대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물,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상기 묘목 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 동물검역

○ 위생 검사제도(육류검사법)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국(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 가공공장에 상주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사 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칙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자체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으로 불리는 Process Control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 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E. Coli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최종제품이 유해 미생물로부터 오염이 감소된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공정(SOP : Standard Operationg Procedure)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함

❑ 유제품검역

○ 검역제도 일반

- 검역 조건 : 함유량과 관계없이 미농무성 산하의 동물검역소의 허가를 받아야 됨

○ 밀크 : 전유 혹은 탈지유(일부 혹은 완전탈지한 것)를 말함. 밀크제품은 밀크에서 얻어지는 제품으로 농축유(Evaporated milk, condensed milk, dry milk), 당분이 들어있는 밀크, 버터, 치즈, 숙성밀크 등임

○ 낙농품류 : 미국 수출입 종합편람 제4류(낙농품)의 소호주(additional US notes)와 밀크를 원료로 만들어진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2202. 90. 10 ~ 2202. 90. 28로 표현되는 밀크가 일부 포함된 제품을 의미함. 여기에는 밀크류 혹은 크림으로(흰초콜릿과 비식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유지방 중량이 제품의 5.5% 이상이 되는 제품 즉,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제18류 소호주 2와 소호주 3에 나온 수입쿼터 제외)임; 건조밀크, 유장, 혹은 버터 밀크로(0402.10, 0402.21, 0403.90, 0404.10) 단일재료와 혼합한 재료의 유지방중량이 5.5% 이하인 제품으로 보통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는 제품이나 설탕첨가 여부를 불문; 유지방을 첨가한 제품으로 전체중량의 응고유가 16%이상 들어있어 차후 가공을 위하거나 직접 소비제품이 아닐 경우임

○ 제외 : 식료품 가운데 밀크 혹은 밀크제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소량 포함(예를 들어 건조밀크-밀크 지방 건조 그리고 밀크 비유지방 건조물이 평균 5% 미만) 혹은 지금까지 직접 소비 제품으로 밀크 식품산업역 사에서 낙농품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예 : Sugar confectionary, non-sugar confectionary로 빵, 비스킷, 스낵, 전병, 와플과 같은 제품으로 한국 수의과학검역원에서 Health Certificate이나 미국 내 동식물검역소 산하의 동물검역소(V/S)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을 필요는 없음

○ CBP(국토안보부) 통과요건 : 요구르트는 종류에 따라 쿼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음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미국의 식품 라벨링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제품명, 순준량, 원재료명, 식품영양분석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도 의무사항임

〈식품표기 위치 및 내용〉

위치	표기 대상 및 내용
주 표시면	▸ 제품명 – 제품의 통상적인 명칭 – 식품이 액체가 아닌 경우 형태(Silced, Unsliced, Halves) 등 명시 – 활자 크기는 주 표시면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1/2 이상 – 외국어 표기일 경우, 영어 및 외국어 둘 다 표기 – 주스(과일 및 채소)가 들어있는 음료의 경우, 주스 함유량(%) 표기가 필요함 ▸ 순중량 – 주 표시면 하단 30% 위치 – 포장용기 내부에 담겨있는 식품의 양 – 미국단위(oz, lb)와 국제단위(g, kg, L) 함께 표기
정보 표시면	▸ 제조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정보, 이름 및 주소 ▸ 식품 알러지 유발 물질(Major food allergen) 포함된 경우 반드시 기재 –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사이즈로 표기 – 주요 알러지 유발 물질 :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조개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콩 – 신선농산물(신선과일 및 채소)의 경우 알러지 라벨링은 불필요 ▸ 성분 리스트 – 사용된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 – 통상적인 이름 사용(예 : Ingredients – Apples, sugar, Water and Spices) – 허가된 방부제 첨가 시 방부제 통상 명칭 및 기능 표기(예 : 부패지연, 향미보호 등) – 공인된 색소의 약어 또는 특정 이름 사용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 라벨링 위치는 주 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과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됨. 주 표시면은 제품명,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이며 정보 표시면은 소비자들의 시선으로 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 옆면에 위치함

○ FDA는 2014년 3월에 식품 라벨링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최종 개정안은 2016년 5월에 확정됨. 새 영양 성분표 기준에 따라 연간 판매량이 최소 1천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체는 2020년,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2021년까지 준수해야 함

○ 2개 이상의 언어로 영양분석표를 표기할 경우, 각각의 언어로 된 영양분석표를 부착하거나 하나의 영양분석표에 두 언어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나. 표기방식

○ 기본표시사항 및 용어 정리

- 앞면/주 패널(PDP) : 소비자가 소매점 선반이나 매장 디스플레이에서 처음으로 보게 될 패키지의 주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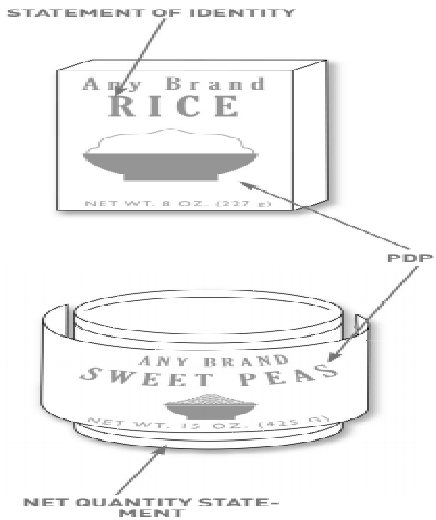

○ PDP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

- Statement of Identity(제품명) - 제품명, 식품명 또는 상호명
- Net quantity statement(순 용량) - 포장에 있는 제품의 양. 제품의 양은 US 및 미터법 단위. Metric 버전은 US 버전 전후로, 또는 그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할 수 있음. 그램 단위의 미터법은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됨
- Picture of product(제품 그림 또는 사진) - 제품 또는 원래 형태의 그림 또는 사진, 제품에 추가로 더해지는 것이 있으면 serving suggestion 표기해야 함

○ 정보 패널(Information Panel): 소비자가 볼 수 있는 PDP의 오른쪽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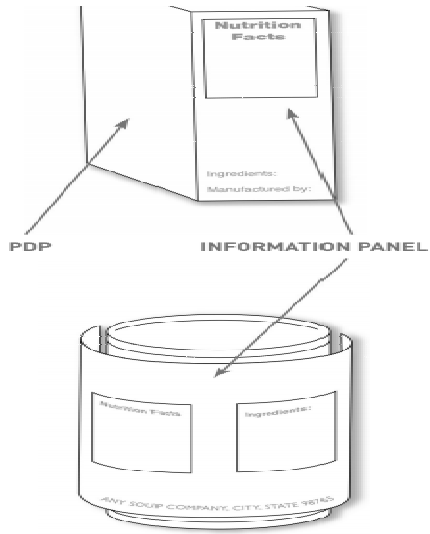

○ 정보 패널 사양 (영양 정보 제외)

- 문자 크기는 소문자 o(대문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대문자 O)를 기준으로 최소 1/16 인치(1.6mm) 이상이어야 함
- 글자의 높이는 너비의 3배를 넘을 수 없음
- 정보는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읽기 쉬워야 함
- 외국어가 패키지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경우 모든 정보는 영어와 외국어로 모두 나와야 함

○ 정보 패널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

- Nutrition Facts(영양 정보) - 영양 정보는 FDA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함
- Ingredients list(성분 목록) - 성분은 양이 가장 많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까지 순서대로 모두 나열되어야 함. 하위 구성 요소의 경우 괄호 안에 넣음
- 제품에 아스파탐(aspartame)이 포함되어 있으면 “aspartame contains phenylalanine”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Allergen Statement(알레르기 항원) – 8가지 Allergen 성분 : milk, egg, fish (must list species), crustacean shellfish(must list species), tree nuts(must list specific nuts), wheat, peanuts and soybeans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표기하여야 함. Allergen Statement는 Ingredients의 바로 뒤 또는 인접해 있어야 함. 글씨 사이즈는 최소한 성분 사이즈만큼 커야 함

-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er(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 이름과 주소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이름과 주소는 또한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포함해야 함(예 : “manufactured for” or “distributed by.”) 주소가 미국 주소이고 디렉토리 또는 전화번호부에 나열되어 있으면, 도시, 주 및 우편번호(또는 미국 이외 지역의 우편번호)만 표시
-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모든 수입 식품에 필요. 원산지 국가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바로 아래 또는 가까운 곳에 등재되어야 하며, 같은 글씨 크기여야 함

❑ **새 영양성분표(New Nutrition Facts) 특징**

○ 칼로리 표기 확대 : 열량 표기의 글자 크기가 커지고 열량을 표기하는 숫자 역시 볼드체로 써서 소비자들이 한눈에 읽기 쉽게 변화할 예정임

○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 함유량 의무 표기 : 제조사는 제품의 비타민D, 칼슘, 철분, 칼륨의 양을 영양성분표에 표기하여야 하며 기존에 표시되었던 비타민A, C는 의무표기 사항에서 제외됨

○ 일일 권장 섭취량과 칼로리에 관해 표기 : 성인의 하루 평균 권장 칼로리(2,000kacl)를 기준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The % Daily Value))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표기해야 함

○ 첨가당 표기 : 첨가당을 그램 단위로 표기하고 제품에 포함된 첨가당이 1일 섭취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표기해야 함

○ 지방량(포화지방,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계속 기입해야 하지만 지방의 열량 표시는 삭제됨

○ 일부 제품 1회 제공량 및 전체 제공량 표기 : 현재까지의 패키지는 1회 또는 2회 제공량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1회 이상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한 번에 다 섭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제공량에 맞게(“per serving” and “per package”/“per unit”) 표기해야 함

〈식품 라벨링 샘플 및 표기〉

영양분석표 예시 - 기본 서식 및 2열 서식

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 Daily Value*
Total Fat 8g	10%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3%
Dietary Fiber 4g	14%
Total Sugars 12g	
Includes 10g Added Sugars	20%
Protein 3g	
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35mg	6%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Nutrition Facts

2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1 cup (255g)

	Per serving		Per container	
Calories	**220**		**440**	
		% DV*		% DV*
Total Fat	5g	6%	10g	13%
Saturated Fat	2g	10%	4g	20%
Trans Fat	0g		0g	
Cholesterol	15mg	5%	30mg	10%
Sodium	240mg	10%	480mg	21%
Total Carb.	35g	13%	70g	25%
Dietary Fiber	6g	21%	12g	43%
Total Sugars	7g		14g	
Incl. Added Sugars	4g	8%	8g	16%
Protein	9g		18g	
Vitamin D	5mcg	25%	10mcg	50%
Calcium	200mg	15%	400mg	30%
Iron	1mg	6%	2mg	10%
Potassium	470mg	10%	940mg	20%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신규 영양분석표 라벨 표기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위치
- 칼로리(Calories), 컨테이너 당 제공량(Servings per container) 및 제공량(Serving size)은 큰 글씨 표기
- 칼로리 숫자 및 제공량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
- 제공량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먹는 양 기준
- 1회 섭취 혹은 여러번에 나눠 섭취하는 경우, 2열 서식 라벨을 통해 칼로리 및 영양소를 제공량, 패키지당 제공량, 제품 한개당 제공량 모두 표기
- 총 지방량,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표기
- 비타민 D, 칼슘, 칼륨, 철분의 실제 중량과 일일섭취량 표기
- 첨가당을 그램(g) 단위로 표기, 제품에 포함된 첨가당이 일일섭취량의 몇 % 차지하는지 표기
- 일일섭취량과 칼로리는 다음과 같은 문구 표기
  "The % Daily Value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다. 건강 관련 표기(Health Claim) 유의사항

○ 건강 관련 표기(Health Claim)는 식품이나 식이보조제의 건강 관련 문구, 상징 등 식품 내용물, 질병, 건강과 관련된 표기를 의미함

- 건질병의 위험성을 줄이는 내용이어야 하며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혹은 치료에 대한 주장이나 표기는 금지됨
- 식이보조제 라벨은 영양소 및 구성요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표기할 수 있지만 질병에 대한 표기와 관련이 없어야 함
- 영양소 부족에 관한 질병 표기(예 : 비타민 C 부족 괴혈병 등)는 할 수 없음

3. 라벨링 샘플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품명	공로단 액티브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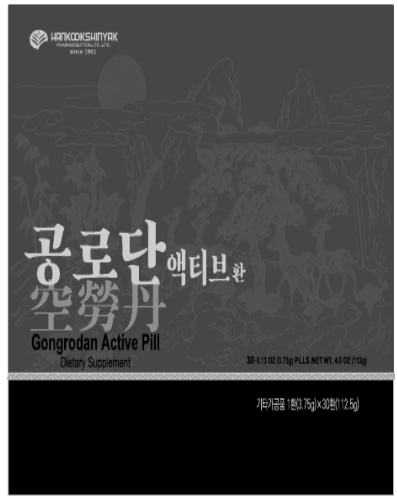
원료	상황버섯, 100년 산삼배양근, 노루궁뎅이버섯, 동충하초, 침향, 녹용, 당귀, 산수유, 숙지황, 아연, 비타민 c	
제조업체	한국신약	
영양표시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1 Pill (3.75g) Serving Per Container 30 Amount Per Serving / %DV* Calories 15 Total Carbohydrate 3g 1% Dietary Fiber Less than 1g 3% Total Sugars Less than 1g Includes Less than 1g Added Sugars 2% Rehmannia Glutinosa Root Powder 338mg † Cultivated Wild Ginseng (*Panax ginseng*) Root Extract 100mg † *Percent daily values (DV)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Sugarcane honey, Fennel powder, Angelica sinensis powder, Longanae arillus powder, Aquilaria agallocha powder, Deer antler powder, Rhodiola rosea extract powder, Tribulus terrestris fruit powder, Vitamin C, Zinc Gluconate,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Cordyceps militaris extract powder, Hericium americanum extract powder and grapefruit seed extract.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Ⅳ

캐나다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5

제2장 통관제도 27

1. 관리・법률체계 27
2. 통관절차 30
3. 제출서류 33
4. 관세제도 35

제3장 검역제도 37

1. 관리・법률체계 37
2. 품목별 검역절차 38
3. 제출서류 41

제4장 라벨링 제도 43

1. 관리・법률체계 43
2. 표시사항 43
3. 라벨링 샘플 47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책임자	#	절차	관리기관	
수출업체		정식수입허가증 소지 및 사업자번호(BN) 등록 바이어 발굴 및 계약진행	–	사전 절차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관련 서류 준비	–	
수입 업체	1	원산지 수입금지품목리스트, 원료리스트 확인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2	세관화물취급처(Custom Broker) 지정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ustom Broker 리스트 공유)	
	3	관련 제출통관서류 확인 (원산지증명서, Health Certificate 등 각종 필요 증명서 포함)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Fisheries and Oceans Canada Global Affairs Canada Health Canada	
	4	HS코드(10자리) 확인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관세/ 세금
	5	관세 확인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6	GST 확인	Canada Revenue Agency	
	7	물품 CBSA 사전(선적 전) 신고 (Electronic Data Input(온라인 또는 서면 신고)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통관/ 검역
	8	CBSA 통관사무소 결정 (수입품 도착지 인근 사무소로 결정)		
	9	화물신고		
	10	물품검사 및 검역 결과 통보	Canada Foods Inspection Agency (* 부적합 판정 시, 재검역 신청 가능)	
	11	– 선적검사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및 관련 통관서류 제출 – 관세/세금 납부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12	반출		
	13	수입 관련 기록문서 6년 동안 보관		사후 절차

*출처 : 캐나다 국경관리국

Summary : The Importing Proced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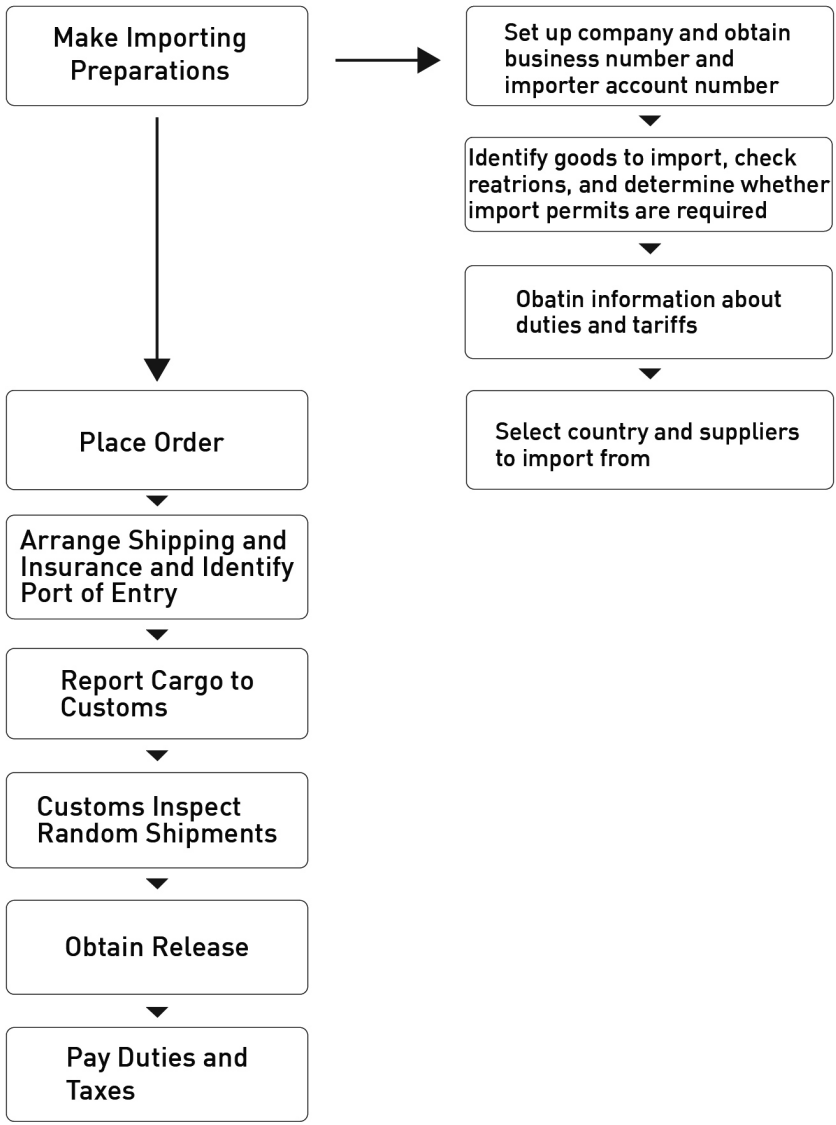

* 출처 : TFO Canada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과 국경관리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서 캐나다로 수입되어 오는 모든 농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을 진행함

○ 그 밖의 관련 주요 정부기관은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수산해양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보건복지부(Health Canada) 등임

정부기관	개요
식품검역청(CFIA)	– 캐나다 농림부 산하 연방정부기관 – 캐나다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검역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관리, 라벨링 규제, 리콜 외 해충 통제 등을 총괄적 관리
국경관리국(CBSA)	– 수입되는 화물의 통관서류 관리 – 선택적 샘플조사를 통한 물품검사를 진행하며 검사에 따라 보류, 압류, 폐기, 재이용에 대한 권한 보유
환경부	–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협정 이행
수산해양부	–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허가증 발급
외교통상부	– 수출입 통제 농산품 규제 및 허가증 발급
보건복지부	– 해충구제 및 살충제 법률에 따라 농약 및 살충제 잔류 최대허용치 관련 규정 수립

나. 법률체계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에 따르면, 2019년 1월 15일부터 기존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이 발효될 예정

○ 캐나다 내 생산, 제조 · 가공, 수출입, 운반 · 저장, 조리 ·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을 통해 행정 간소화 예상

- 교차오염, 세균감염, 식중독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예방 차원 규정 강화
- 포장 및 라벨링 요건도 추후 변경 예정

○ 해당 식품군은 가공된 농산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및 가공식품 등이며 애완동물 사료와 항공기, 기차, 유람선, 군함 등 수송용 식품은 제외

구분	법률	관할
식품안전	Safe Food for Canadians Act	- 식품안전 관련 위생관리, 라벨링, 검역, 교역, 동식물 질병, 해충통제 등 통합 운영
	↑	하기 14개의 기존 식품 규정 통합 제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규정
신선과일 및 채소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신선과일 및 야채 외 유제품, 꿀, 아이스와인, 유기농, 메이플, 가공식품 등 총 11가지 규정
육류 및 육가공품	Meat Inspection Act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Health of Animal Act 육류 관련 법률)	육류검역시스템 및 수입금지 관련 * 육류, 가금육 2% 이상 함유품 수입금지
수산물	Fish Inspection Act	수산물 검역

* 출처 : CFIA

○ 식품안전법 발효 시, ① 생산 및 수출입 면허 발급, ② 식품 예방 적방제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③ 식품이력 추적관리가 도입될 예정

① 면허

- 캐나다 내 식품을 수출입하거나 생산, 가공, 보존, 패키지, 라벨 외 가축도살 등의 활동을 하는 업체들은 CFIA에서 발급하는 면허 신청 필수
  * 면허 신청비용은 C$250이며 발급 후, 2년간 유효
  * 주요 품목별 면허 발급 기한은 아래와 같음
- 이미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와 Fish Inspection Act에 의거하여 면허를 발급받았을 경우, 만료일까지는 기존 면허 유효

품목명	면허 발급 기한
유제품(Dairy Products)	2019. 1. 15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Fish)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비가공 식품(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 7. 15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과자, 소스, 견과류, 각종음료, 파스타, 씨리얼, 빵 등이 해당)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2021. 1. 15
식품첨가물 및 주류(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 출처 : CFIA

② 식품 예방 적방제(Preventive Food Safety Controls)

- 대부분의 식품 관련 기업들은 식품안전통제 규정 시행에 따라야 하며 식품 안전 예방 정책계획서(PCP, Preventive Control Plan)[1]를 수립해 CFIA 제출 필수
  * 단,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필요 없는 식품(육류 및 수산물 제외) 또는 연간 식품 매출액이 C$10만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신규 법력 발효 즉시 PCP 제출 필수
  * 가공식품은 판매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21년까지 유예

품목명	제출 기한
유제품(Dairy Products)	2019. 1. 15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Fish)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비가공 식품(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 7. 15 (판매액 C$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상) 2021. 7.16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하)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과자, 소스, 견과류, 각종음료, 파스타, 시리얼, 빵 등이 해당)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2021. 1. 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 출처 : CFIA

③ 식품이력 추적관리 (Traceability)

- 캐나다에서 수출입되고 생산, 유통되는 모든 식품들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단, 요식업체는 제외 대상임
- 기업들은 식품의 원재료 출처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함

1) PCP는 기업들의 식품 안정성 유지 현황, 라벨링, 포장, 등급 부여 등의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인도적인 동물 도살활동 등의 규정 이행여부를 증명하기 위함

품목명	등록 기한
유제품(Dairy Products)	2019. 1. 15
신선 과일 및 채소(Fresh fruit or vegetables)	
가공 과일 및 채소(Processed fruit of vegetables)	
수산물(Fish)	
육류(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꿀 및 메이플 관련 제품(Honey and maple products)	
비가공 식품(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 7. 15 (판매액 C$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상) 2021. 7.16 (판매액 C$ 10만 이상, 종업원 4인 이하)
기타 가공식품(All other foods) (과자, 소스, 견과류, 각종음료, 파스타, 시리얼, 빵 등이 해당)	
양식업 제품(Aquaculture products)	2021. 1. 15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 출처 : CFIA

2. 통관절차

○ 선적 전 보고

- 한국에서 수출 시, 흔히 사용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도착 24시간 전에 CBSA에 사전보고 필수
- 물품 적재 24시간 전에 관련 서류를 전자송부 할 수 있으며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나 포워딩사가 대행
- 수입조회자동화시스템(AIRS,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을 통해 품목의 수입 가능 여부 및 필수 서류 확인 가능
- 그 밖에 운송경로에 따른 사전보고 시간은 아래와 같음

항공 (Air)	해상 (Marine)	기차 (Rail)	국도 (Highway)
4 hours	24 hours	2 hours	1 hour

* 출처 : CBSA

○ 통관・화물신고

- 대부분의 화물은 도착한 곳의 인근 CBSA 통관 사무소에서 관할함. 수입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산시스템(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또는 서면을 통해 신고 가능

  * EDI는 관세청 제공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수입신고 진행

○ 물품검사

- 처음으로 수출되거나 위생, 라벨,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경비 부담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면제 대상 : 과거 규정 위반 이력 없이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 검사방법

Vacis Exam	X-ray 검사
Dock Side Exam	항구 도착 후, 컨테이너를 열어 진행되는 검사
Wooden Package Exam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창고에서 진행되는 검사
Random Exam	임의 검사
Impact Exam	세부 검사

* 출처 : CBSA

○ 검역 결과 통보 및 반출

- 수입 통과 시, 상품 반출 허가 및 관세납부 고지서(K84) 발부
- 부적합 판정 시, 폐기처분 또는 반송(재검역 신청 가능)

〈화물 컨테이너 검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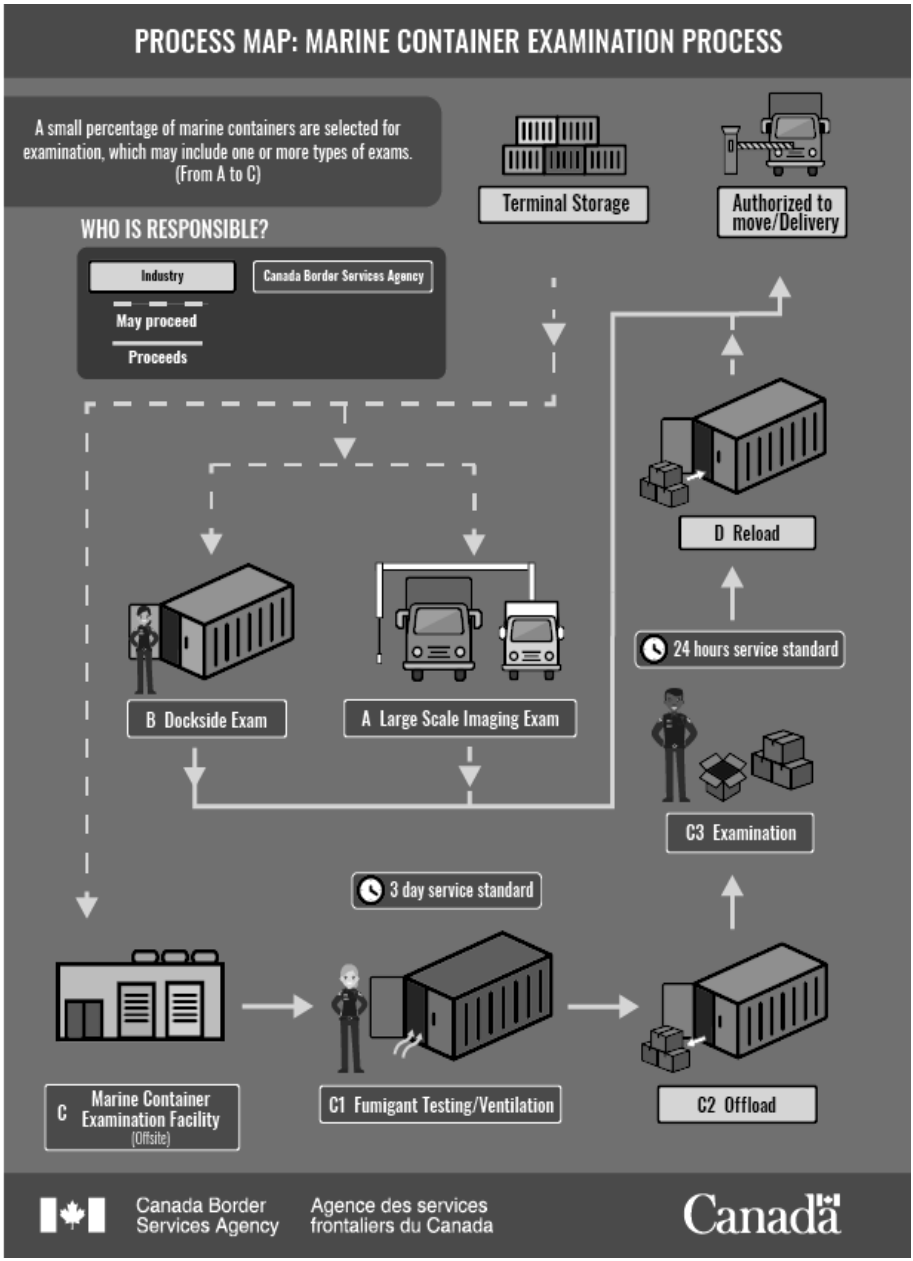
PROCESS MAP: MARINE CONTAINER EXAMINATION PROCESS
A small percentage of marine containers are selected for examination, which may include one or more types of exams. (From A to C)
Terminal Storage
Authorized to move/Delivery
WHO IS RESPONSIBLE?
Industry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May proceed
Proceeds
D Reload
24 hours service standard
B Dockside Exam
A Large Scale Imaging Exam
C3 Examination
3 day service standard
C Marine Container Examination Facility (Offsite)
C1 Fumigant Testing/Ventilation
C2 Offload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Canada

3. 제출서류

○ 통관선적서류

Cargo Control Documents(CCD) or Bill of Ladding 2부(화물통제문서・화물운송장)
Commercial Invoice 2부(상업송장)
B3 양식[2](Canada Customs Coding Form) 2부 - (수입자에 해당) (세금부과목적으로 운송가액이 C$1,600 이상일 경우, 3부 필요)
BSF760 양식(Certificate of Origin-한-캐 FTA) (한-캐 FTA 발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로 수출업체가 서명하여 제출) (국문버전의 양식도 CBSA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시)

* 출처 : CBSA

2) B3 양식에는 수입자명, 수출입 계정 넘버, 품목설명, 선적일자, 원산지, 특혜 관세, 원산지, 면세액, 세금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CANADA CUSTOMS CODING FORM
DOUANES CANADA - FORMULE DE CODAGE

PROTECTED B (WHEN COMPLETED)
PROTÉGÉ B (LIRE FOIS REMPLI)

Help | Aide | Restore - Restaurer

1 IMPORTER NAME AND ADDRESS / NOM ET ADRESSE DE L'IMPORTATEUR — NO. - N°
2 TRANSACTION NO. - N° DE TRANSACTION
3 TYPE
4 OFFICE NO. / N° DE BUREAU
5 GST REGISTRATION NO. / N° DE TPS
6 PAYMENT CODE / CODE DE PAIEMENT
7 MODE OF TRANS. / DE TRANS.
8 PORT OF UNLOADING / PORT DE DÉBARQ.
9 TOTAL VFD - TOTAL DE LA VD
10 SUB HDR NO. / N° DE SOUS-EN-TÊTE
11 VENDOR NAME - NOM DU VENDEUR — NO. - N°
12 COUNTRY OF ORIGIN / PAYS D'ORIGINE
13 PLACE OF EXPORT / LIEU D'EXPORTATION
14 TARIFF TREATMENT / TRAITEMENT TARIFAIRE
15 U.S. PORT OF EXIT / BUREAU DE SORTIE DES E.-U.
16 DIRECT SHIPMENT DATE / DATE D'EXPÉDITION DIRECTE — M — DJ
17 CRCY. CODE / DEVISE
18 TIME LIMIT - DÉLAI
19 FREIGHT - FRET
20 RELEASE DATE - DATE DE LA MAINLEVÉE
RESERVED FOR CBSA USE / RÉSERVÉ À L'USAGE DE L'ASFC

21 LINE / LIGNE — 22 DESCRIPTION / DÉSIGNATION — 23 WEIGHT / KGM / POIDS / KGM — PREVIOUS TRANSACTION - TRANSACTION ANTÉRIEURE: 24 NUMBER - NUMÉRO, 25 LINE-LIGNE — 26 SPECIAL AUTHORITY / AUTORISATION SPÉCIALE
27 CLASSIFICATION NO. / N° DE CLASSEMENT — 28 TARIFF CODE / TARIFAIRE — 29 QUANTITY / QUANTITÉ — 30 U - M — 31 VFD CODE / CODE VD — 32 BIMA CODE / CODE DE LMSI — 33 RATE OF CUSTOMS DUTY / TAUX DE DROIT DE DOUANE — 34 E.T. RATE / TAUX T.A. — 35 RATE OF GST / TAUX DE TPS — 36 VALUE FOR CURRENCY CONVERSION / CONVERSION VALEUR POUR CHANGE
37 VALUE FOR DUTY / VALEUR EN DOUANE — 38 CUSTOMS DUTIES / DROITS DE DOUANE — 39 BIMA ASSESSMENT / COTISATION DE LMSI — 40 EXCISE TAX / TAXE D'ACCISE — 41 VALUE FOR TAX / VALEUR POUR TAXE — 42 GST / TPS

21 LINE / LIGNE — 22 DESCRIPTION / DÉSIGNATION — 23 WEIGHT / KGM / POIDS / KGM — PREVIOUS TRANSACTION - TRANSACTION ANTÉRIEURE: 24 NUMBER - NUMÉRO, 25 LINE-LIGNE — 26 SPECIAL AUTHORITY / AUTORISATION SPÉCIALE
27 CLASSIFICATION NO. / N° DE CLASSEMENT — 28 TARIFF CODE / TARIFAIRE — 29 QUANTITY / QUANTITÉ — 30 U - M — 31 VFD CODE / CODE VD — 32 BIMA CODE / CODE DE LMSI — 33 RATE OF CUSTOMS DUTY / TAUX DE DROIT DE DOUANE — 34 E.T. RATE / TAUX T.A. — 35 RATE OF GST / TAUX DE TPS — 36 VALUE FOR CURRENCY CONVERSION / CONVERSION VALEUR POUR CHANGE
37 VALUE FOR DUTY / VALEUR EN DOUANE — 38 CUSTOMS DUTIES / DROITS DE DOUANE — 39 BIMA ASSESSMENT / COTISATION DE LMSI — 40 EXCISE TAX / TAXE D'ACCISE — 41 VALUE FOR TAX / VALEUR POUR TAXE — 42 GST / TPS

21 LINE / LIGNE — 22 DESCRIPTION / DÉSIGNATION — 23 WEIGHT / KGM / POIDS / KGM — PREVIOUS TRANSACTION - TRANSACTION ANTÉRIEURE: 24 NUMBER - NUMÉRO, 25 LINE-LIGNE — 26 SPECIAL AUTHORITY / AUTORISATION SPÉCIALE
27 CLASSIFICATION NO. / N° DE CLASSEMENT — 28 TARIFF CODE / TARIFAIRE — 29 QUANTITY / QUANTITÉ — 30 U - M — 31 VFD CODE / CODE VD — 32 BIMA CODE / CODE DE LMSI — 33 RATE OF CUSTOMS DUTY / TAUX DE DROIT DE DOUANE — 34 E.T. RATE / TAUX T.A. — 35 RATE OF GST / TAUX DE TPS — 36 VALUE FOR CURRENCY CONVERSION / CONVERSION VALEUR POUR CHANGE
37 VALUE FOR DUTY / VALEUR EN DOUANE — 38 CUSTOMS DUTIES / DROITS DE DOUANE — 39 BIMA ASSESSMENT / COTISATION DE LMSI — 40 EXCISE TAX / TAXE D'ACCISE — 41 VALUE FOR TAX / VALEUR POUR TAXE — 42 GST / TPS

21 LINE / LIGNE — 22 DESCRIPTION / DÉSIGNATION — 23 WEIGHT / KGM / POIDS / KGM — PREVIOUS TRANSACTION - TRANSACTION ANTÉRIEURE: 24 NUMBER - NUMÉRO, 25 LINE-LIGNE — 26 SPECIAL AUTHORITY / AUTORISATION SPÉCIALE
27 CLASSIFICATION NO. / N° DE CLASSEMENT — 28 TARIFF CODE / TARIFAIRE — 29 QUANTITY / QUANTITÉ — 30 U - M — 31 VFD CODE / CODE VD — 32 BIMA CODE / CODE DE LMSI — 33 RATE OF CUSTOMS DUTY / TAUX DE DROIT DE DOUANE — 34 E.T. RATE / TAUX T.A. — 35 RATE OF GST / TAUX DE TPS — 36 VALUE FOR CURRENCY CONVERSION / CONVERSION VALEUR POUR CHANGE
37 VALUE FOR DUTY / VALEUR EN DOUANE — 38 CUSTOMS DUTIES / DROITS DE DOUANE — 39 BIMA ASSESSMENT / COTISATION DE LMSI — 40 EXCISE TAX / TAXE D'ACCISE — 41 VALUE FOR TAX / VALEUR POUR TAXE — 42 GST / TPS

DECLARATION - DÉCLARATION
I / JE _____
PLEASE PRINT NAME - LETTRES MOULÉES S.V.P.
OF / DE _____
IMPORTER / AGENT - IMPORTATEUR / AGENT
DECLARE THE PARTICULARS OF THIS DOCUMENT TO BE TRUE, ACCURATE AND COMPLETE.
DÉCLARE QUE LES RENSEIGNEMENTS CI-DESSUS SONT VRAIS ET COMPLETS.
DATE — SIGNATURE

43 DEPOSIT - DÉPÔT
44 WAREHOUSE NO. - N° D'ENTREPÔT
45 CARGO CONTROL NO. - N° DE CONTRÔLE DU FRET
46 CARRIER CODE AT IMPORTATION / CODE DE TRANSPORTEUR À L'IMPORTATION

47 CUSTOMS DUTIES / DROITS DE DOUANE
48 BIMA ASSESSMENT / COTISATION DE LMSI
49 EXCISE TAX / TAXE D'ACCISE
50 GST / TPS
51 TOTAL

* 출처 : CBSA

- 원산지증명서
  *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일반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Canada-Korea FTA 서식에 반드시 작성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임
  * 또는 관세 혜택 품목이 아닐 경우, 작성이 간편한 수출업자 원산지신고서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로 대체 가능

원산지증명서(CKFTA)	수출업자 원산지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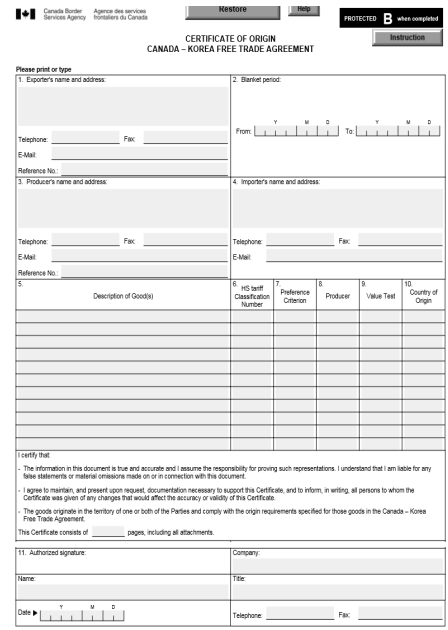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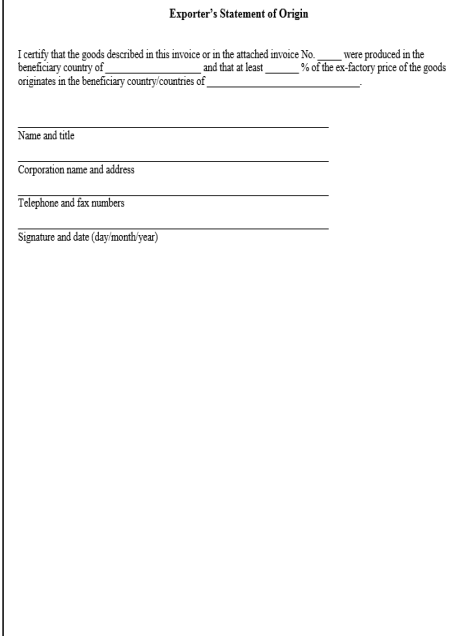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Agence des services frontaliers du Canada

Restore | Help | PROTECTED B when completed | Instruction

CERTIFICATE OF ORIGIN
CANADA – KOREA FREE TRADE AGREEMENT

Please print or typ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Reference No.: _____

2. Blanket period:
From: Y M D To: Y M D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Reference No.: _____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Canada – 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 Y M D
Telephone: _____ Fax: _____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

I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in this invoice or in the attached invoice No. _____ were produced in the beneficiary country of _____ and that at least _____ % of the ex-factory price of the goods originates in the beneficiary country/countries of _____.

_____
Name and title

_____
Corporation name and address

_____
Telephone and fax numbers

_____
Signature and date (day/month/year)

* 출처 : CBSA

4. 관세제도

○ 관리체계
- 2015년 체결된 한-캐 FTA 기준, A부터 F까지 그룹별 분류에 따라, 관세의 단계적 철폐가 이루어짐
- 5년차에 접어든 2019년부터는 C분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무관세가 될 예정

* 대표적인 예로 최대 12.5%까지 관세율이 부과되었던 케첩, 간장 등의 소스류 및 전분・분말, 주스,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에 무관세 적용 예정

〈2019년 주요 무관세 품목〉

HS 코드	품목	2017 수출액	2014 수출액	증감율 (17/14)	2014 관세율
2103	식품 (소스류)	5,774	4,902	17.8	0.0-12.5
2202	음료	5,094	4,587	11.1	0.0-11.0

* 출처 : Innovation, Science, Economic, Development Canada

- 양허제외 품목은 총 181가지로 주로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과 소세지 또는 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유사 식품류임
- 캐나다 관세표는 CBSA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직접 검색 가능[3)]

3) https://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8/menu-eng.html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연방정부 산하,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주체로 국경관리국(CBSA).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환경부(Environment Canada), 해양수산부 (Fisheries and Oceans Canada), 보건부(Health Canada), Measurement Canada(도량형사무국),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률에 준수해야 함

○ 상위 정부 기관들은 아래의 연방법률에 의거함

- 식품의약법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에 의거, 상표, 성분 구성, 패키징, 처리, 가공, 판매 및 광고 관련 조항 포함)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 Fish Inspection Act
- Meat Inspection Act
- Canada Agricultural Act

나. 법률체계

○ CFIA는 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식품 안전 시스템 강화와 자국 식물, 식품, 동물 자원 보호 차원, 캐나다로 수입되는 식물과 식물생산품의 검역을 관리

○ 질병, 해충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수입되는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해 식물 검역증명서 요구

○ 캐나다 외교통상부에서는 닭, 칠면조, 병아리, 달걀 및 달걀제품, 치즈, 버터, 마가린, 아이스크림 및 요겉, 기타 유제품, 보리 및 보리 가공품, 밀 및 밀 가공품 외 NA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CBSA와 CFIA에 통관서류 및 수산물 수입 확인증 등의 관련 자료 제출 필수

2. 품목별 검역절차

가. 수출 가능 주요 농산물

품목	검역 조건
배	- CFIA 지정 수출단지에서만 수입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캐나다 수출단지 지정 가능 - 봉지 씌우기 재배 * 봉지 씌우기 작업 후 검사, 수확 전(연 2회) 검사, 응애예찰조사로 구성 (6월부터 수확 1주 전까지 월 1회씩 조사) - 수확 과실에 대한 한국 검역관의 선과장 과실 검사 필요 - '캐나다측 우려 병행충이 없음'이 부기된 한국의 식품검역증(PC, Phytosanitary Certificate) 첨부 - 캐나다 우려 해충 발견 시, 수출 불가
사과	아래 2가지 조건 중 택일 ① 재배 중 병해충 관리방안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 - 봉지씌우기 재배 * 과실 수확 전(약 4주전)에 봉지를 벗기는 경우, 봉지를 제거 후, 수확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캐나다측이 우려하는 3종의 과일심식 나방(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 여부 예찰조사 실시, 동 심식나방류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재배지검사(봉지씌운 직후 및 수확전 : 연2회) 및 응애예찰조사(4월~수확 약 1주전까지 : 월 1회) - 수확 과실에 대한 한국검역관의 선과장 과실검사 - '캐나다측 우려 병해충이 없음'이 부기된 한국의 식물검역증(PC) 첨부 ② MB훈증처리 + 저온처리 - 상기 ①항에 의한 봉지씌우기를 하지 않고 재배한 사과 생과실의 경우, 아래에 의거 'MB훈증처리'와 '저온처리'를 병행실시 하고, * MB 훈증: (예) 10oC 이상, 24g/m3, 2시간 등 * 저온처리: 0.6oC 또는 그 이하에서 21일 이상 - 동 '소독처리 내역'에 대한 식물검역증(PC) 첨부
포도	- 한국의 국제 식물 보호 기관(NPPO)에서 승인한 포도원 - 훈증소독 처리된 것(PC 첨부)(CFIA의 Treatment Schedule 2 기준할 것) - 식물보호 수입허가 및 공인 장관 면제서를 함께 첨부
딸기	- 상업적인 용도로 재배되는 딸기여야 하며 한국 NPPO에서 선과포장시설에 대한 병해충 정찰활동 및 트래핑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함. - 캐나다측 우려 병해충이 없음"에 대한 식물검역증 첨부
감귤	- 병해충, 흙, 모래, 나뭇잎 및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함
가공 과일	- 건조・가공 또는 냉동되었거나 캔에 든 것은 제약조건 없음
생과실	- 사전에 캐나다 정부의 병해충위험평가(PRA)가 요구되는 과일 : 살구, 포도, 복숭아, 자두, 양벚, 딸기, 나무딸기, 블루베리, 서양배, 마르멜로, 크랜배리, 건포도

품목	검역 조건
신선채소	- 식용감자(Table Potatoes) : 수입금지 - 신선옥수수 : 11월 1일부터 3월 1일(겨울철)기간 동안 수입가능 식물위생증 첨부 - 가공, 연마 또는 제조한 옥수수 : 수입가능(수입 시 검사 실시) - 토마토, 상추, 양배추 등의 기타 신선채로 : 수입가능(수입 시 검사 실시)
밤	- 수입 전에 캐나다 농무장관의 수입허가 필요 - 훈증이나 온탕처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식물 위생증명서 첨부

* 출처 : CFIA(이하동일)

나. 수산물

○ 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CFIA 소속 Fish부서에서 담당

○ 캐나다로 수산물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수산물 수입허가증(Fish Import License) 또는 QMPI 라이센스(Quality Management Program Import License)를 보유해야 함

〈라이센스 종류〉

	기본 수입자	QMPI 수입자
취득 해당자	기본 수입자	제조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수입자
연간비용	$500	$5,000
유효기간	1년	

○ 첫 수출 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의무사항이며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역 진행

○ 검역 진행 시, 수입업체 보유 라이선스에 따라, Lab에 들어가는 경우(QMPI)와 CFIA에서 일반적인 검역을 받는 경우로 나뉨. 통상적으로 Lab검역이 일반 검역(약12일 소요)보다 10일 정도가 더 소요됨

○ 검역 결과가 해충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일 경우, 폐기하거나 본국으로 반송처리 함. 이 경우, 수출입업체 모두 기록에 남아 추후 수입 시 검역을 거쳐야 하는 불이익이 따름

* 무작위로 추출된 수산물은 10-20일의 검역을 거치며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반입불허가 통보 후, 45일 이내 폐기처리 또는 반송됨

〈수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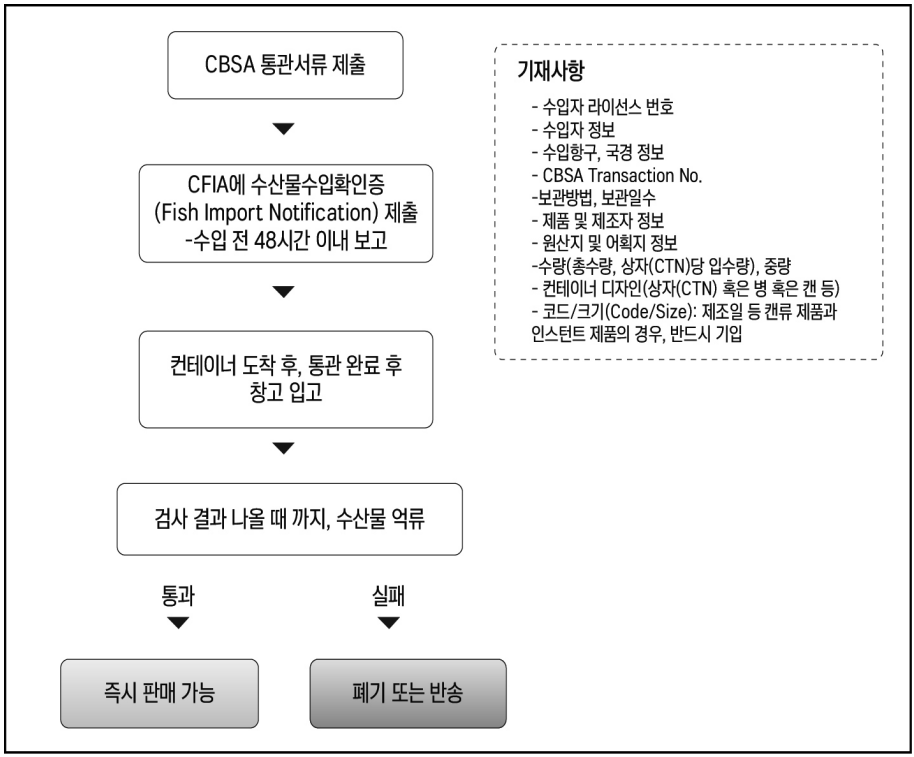

- ○ CFIA는 캐나다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HACCP Plan(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구 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캔류의 가공 수산물은 공정관리양식(Process Control Form)을 제출해야 하며 저산식품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넙치 같은 생선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이 아닐 경우, 기본적 수입 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추가 요구사항이 없으나 굴, 전복 등의 경우, 조개류 등록일련번호(Shellfish Registration No.)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캐나다 어패류 수출자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 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인 조미김은 기본 수입사항 외 추가 요구사항 없음

다. 가공식품

품목	검역 조건
소스 및 장류	- 필요 서류 없음 (원재료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
김치	- 수출 전 CFIA AIRS에서 유의사항 검토 - 알레르기 유발 가능 어류 등의 성분 반드시 명시
건조인삼	- 필요 서류 없음 (원재료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
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육류나 어류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라면은 필요 서류가 없음 - 육류가 함유된 라면은 통관 불가 * 원재료에 따라 서류가 필요하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CFIA AIRS 반드시 확인

3. 제출서류

가. CFIA 요구사항

	증빙서류
1	수입업자 정보(이름, 등록번호 등)
2	운송업자(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록번호)
3	CBSA Transactio No(각 수입 선박에 부과되는 14자리 숫자, 바코드)
4	도착예정일, 도착지, 창고명, 창고주소
5	수출업체 정보(이름, 주소, 원산지 시설등록번호 등)
6	수입식품설명(브랜드명, 심품명, 통칭, 위험식품군 위험처리방법, 용도, 수량, 무게, 사이드 코드 등)
7	수입관리번호(Import Control Number, 각 선박에 부여되는 번호)

나. 수산물 라벨링 규정

○ 의무표시사항(영문과 불어 표기)

- 영문과 불어로 표기해야 함
- 제품명(Common Name)
- 중량(Net Quantity)
- 품질, 규격, 부류, 수량, 수분함량(Grade, Size, Class, Count, Moisture Content)

- 품질명칭표시(Quality Designations)
-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 코드표시(Code Markings): 제조자 정보, 제조일자(dd/mm/yyyy)
- 기타 표기사항: 보관상태 표시 (예) 냉동보관
- 외부 박스 레이블 표기사항: 제품명, 제조자, 제조일자, 원산지
- 알레르기에 대한 표시사항(재료명)

  * 생선류 함유 시, 반드시 라벨에 생선품목 함유 명시(Contains Fish, Crustaceans, Shellfish 등으로 표기)

제 4 장 |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ㅇ 캐나다 보건부는 식품의약품규제(FDA)에 의거하여, 2016년 식품 라벨링 표기법을 개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모든 라벨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ㅇ 캐나다 이중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기재 필수
- ㅇ 소문자 “o”를 기준, 최소 활자 유형 높이는 1.6mm(1/16inch) 이상
- ㅇ 제품의 순 용량표기는 미터법(ml 또는 g)을 준수
- ㅇ 알레르기 주요 유발 성분, 우유, 겨자, 깨, 땅콩 등의 너트류, 달걀, 갑각류, 패류, 어류, 글루텐(곡물에서 얻은 글루텐단백질), 아황산염(10ppm이상)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함유 여부에 대한 정확한 라벨링 표기 필수
  - 어길 시에는 벌금, 판매 금지, 리콜 등의 강력 조치가 이루어짐
  - 다수의 한국산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명확한 성분표기가 되지 않아 리콜 조치되어 폐기된 바 있음
- ㅇ 캐나다는 식품에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함유된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됨
- ㅇ 주로 신선 과일 및 채소, 도넛, 식당이나 비행기 납품 개인 포장된 식품 등은 유통기한 기재 불요
- ㅇ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항목별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① 영양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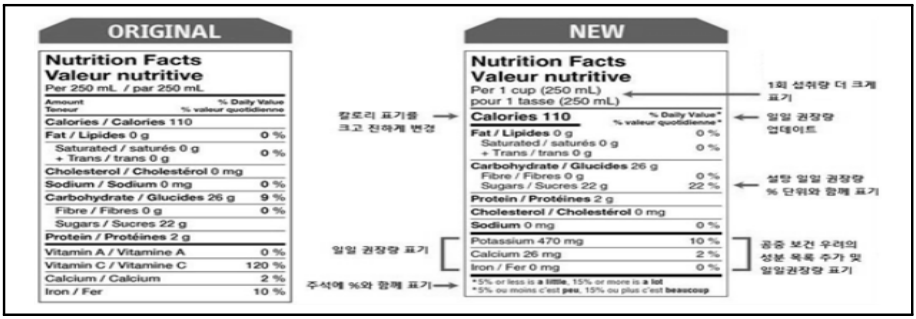

② 성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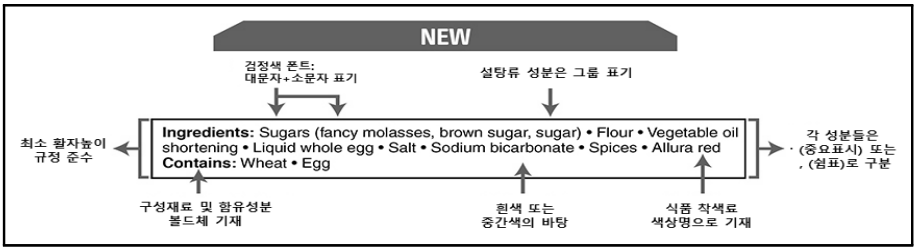

③ 일회 제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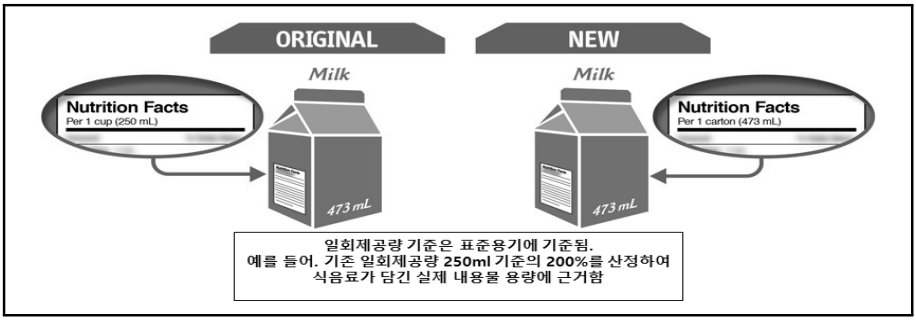

④ 멀티제공용기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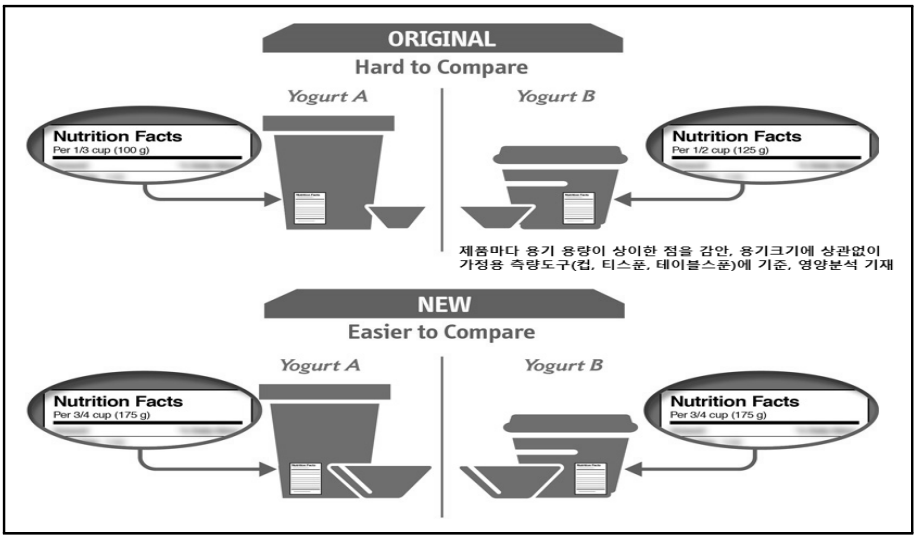

⑤ 조각으로 섭취 가능한 과자류 등의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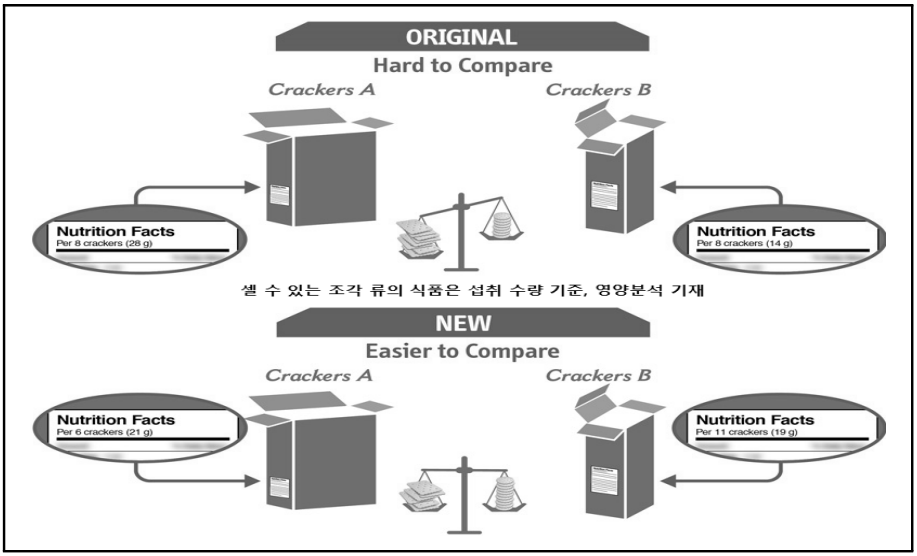

⑥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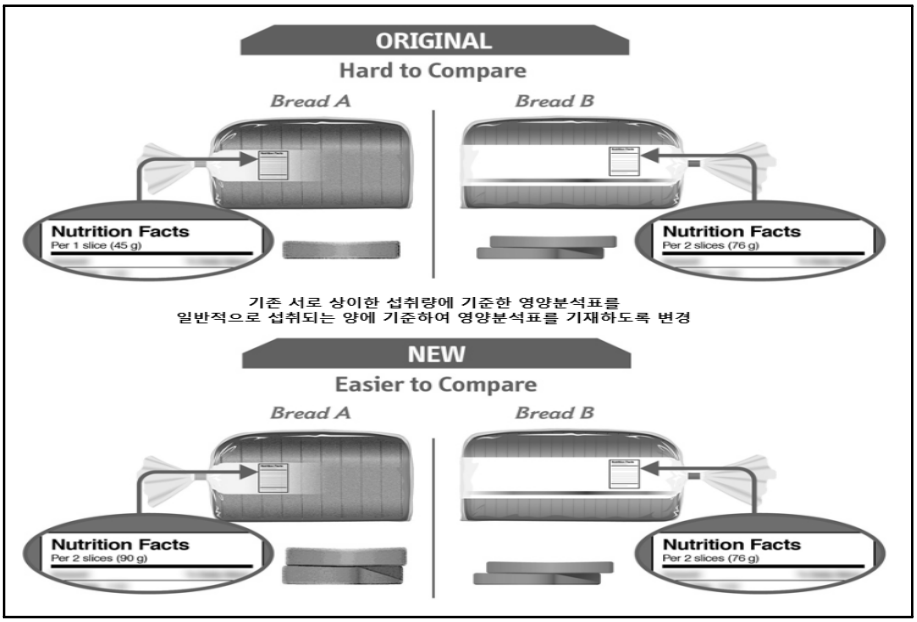

⑦ 당류 영양분석표 표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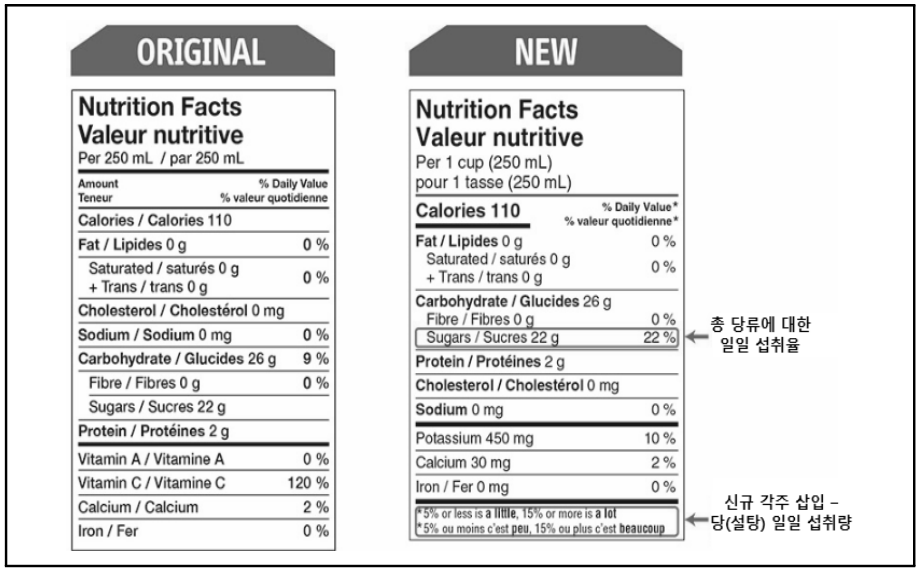

⑧ 유통기한

3. 라벨링 샘플

표기항목	표기내용
품 명	고추장 키트
원 료	콩
수입업체	T-Brothers Food & Trading Ltd
영양표시	**AUTHENTIC KOREAN RED PEPPER PASTE** **Pâte de piment rouge coréenne authentique** **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 Per 1 serving (100 g) pour 1 portion (100 g) **Calories 250** — % Daily Value* / % Valeur Quotidienne* **Fat / Lipides 0 g** — 0 % Saturated / saturés 0 g + Trans / trans 0 g — 0 % **Carbohydrate / Glucides 181 g** Fibre / Fibres 0 g — 0 % Sugars / Sucres 31 g — 5 % **Protein / Protéines 5 g** **Cholesterol / Cholestérol 0 mg** **Sodium 1340 mg** — 58 % Potassium — 0 % Calcium — 0 % Iron / Fer — 0 % * 5% or less is a little, 15% or more is a lot * 5% ou moins c'est peu, 15% ou plus c'est beaucoup **INGREDIENTS :** Dried red pepper, Glutinous rice powder, Salt, Barley malt powder, Water, Soybean, Honey, Rice syrup **CONTAINS : Soy** **INGRÉDIENTS :** Poivre rouge séché, Poudre de riz gluant, Sel, Poudre de malt d'orge, Eau, Soja, Miel, Sirop de riz **CONTIENT : Soja** **Net weight / Poids net : 3.7 Kg** **Best before :** Printed on the package **Meilleur avant :** Imprimé sur le paquet **IMPORTED BY / IMPORTÉ PAR** T-Brothers Food & Trading Ltd. #100 - 88 Brigantine Drive Coquitlam, BC Canada V3K 6Z6 **PRODUCT OF KOREA** **PRODUCT DE CORÉE**

표기항목	표기내용
품 명	취나물
원 료	취나물
수입업체	T-Brothers Food & Trading Ltd
영양표시	**DRIED EDIBLE ASTER (취나물)** **Aster comestible séché** **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 Per 1 serving (80 g) / par 1 portion (80 g) **Amount / Teneur** — **% Daily Value / % Valeur** **Calories / Calories 183** **Fat / Lipides 2 g** — 3 % Saturated / Saturés 0 g + Trans / Trans 0 g — 0 % **Cholesterol / Cholestérol 0 mg** **Sodium / Sodium 0 mg** — 0 % **Carbohydrate / Glucides 42 g** — 9 % Fibre / Fibres 0 g — 0 % Sugars / Sucres 0 g **Protein / Protéines 17 g** Vitamin A / Vitamine A — 0 % Vitamin C / Vitamine C — 8 % Calcium / Calcium — 29 % Iron / Fer — 60 %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 Pourcentage de la valeur quotidienne seion un regime allmentaire de 2,000 calories.

표기항목	표기내용
품 명	낙지젓
원 료	낙지, 참깨
수입업체	T-Brothers Food & Trading Ltd
영양표시	**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 Per 1 serving (100g) / par 1 portion (100g) Amount / Teneur — % Daily Value / % Valeur Quotidienne **Calories / Calories 176** **Fat / Lipides 2.6 g** — **5 %** Saturated / Saturés 0 g + Trans / Trans 0 g — **0 %** **Cholesterol / Cholestérol 91** **Sodium / Sodium 856 mg** — **43 %** **Carbohydrate / Glucides 29 g** — **9 %** Fibre / Fibres 0 g — **0 %** Sugars / Sucres 10 g **Protein / Protéines 9 g** Vitamin A / Vitamine A — 0 % Vitamin C / Vitamine C — 0 % Calcium / Calcium — 0 % Iron / Fer — 0 %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 Pourcentage de la valeur quotidienne seion un regime allmentaire de 2,000 calories:
	SALTED & SEASONED OCTOPUS (낙지젓) **Pieuvre salée et assaisonnée** **INGREDIENTS** : Octopus, Thick malt syrup, Red pepper powder, Salt, Garlic, Ginger, Sesame seeds **CONTAINS : Crustaceans(Octopus), Sesame** **INGRÉDIENTS** : Poulpe, Sirop de malt épais, Poudre de poivron rouge, Sel, Ail, Gingembre, Graine de sésame **CONTIENT : Crustacés(Pieuvre), Sésame** **Net W't / Poids Net : 500g** BEST BEFORE / MEILLEUR AVANT Keep refrigerated / Garder réfrigéré : **2018. October 11** Keep frozen / Garder congelé : **2019. October 11** ***Note : The Expiraton date will vary depending on storage condition (refrigerated or frozen)** ***Note : La date d'expiration varie en fonction des conditions de stockage. (réfrigérée ou congelée)** IMPORTED BY / IMPORTÉ PAR T-Brothers Food & Trading Ltd. #100 - 88 Brigantine Drive Coquitlam, BC Canada V3K 6Z6 **PRODUCT OF KOREA** **PRODUIT DE COREE**

표기항목	표기내용
품 명	뚝딱 곤드레된장국
원 료	콩, 밀, 멸치
수입업체	T-Brothers Food & Trading Ltd
영양표시	

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
Per 1 serving (10g) / par 1 portion (10g)

Amount Teneur	% Daily Value % Valeur Quotidienne
Calories / Calories 34	
Fat / Lipides 0 g	**0 %**
Saturated / Saturés 0 g + Trans / Trans 0 g	**0 %**
Cholesterol / Cholestérol 0 n	
Sodium / Sodium 480 mg	**24 %**
Carbohydrate / Glucides 6 g	**2 %**
Fibre / Fibres 0 g	**0 %**
Sugars / Sucres 2 g	
Protein / Protéines 2 g	
Vitamin A / Vitamine A	0 %
Vitamin C / Vitamine C	0 %
Calcium / Calcium	0 %
Iron / Fer	0 %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 Pourcentage de la valeur quotidienne seion un regime allmentaire de 2,000 calories:

INGREDIENTS : Soybean paste (Soybean, Wheat flour, Salt, Wheat berry, Ethyl alcohol, Monosodium glutamate, Potassium sorbate), Dried edible thistle, Spring onion, Corn starch syrup, Red pepper paste (Red pepper powder, Wheat flour, Corn syrup, Salt), Onion, Anchovy extract, Red pepper powder, Potato starch, Garlic, Kelp extract, Rice flour, Disodum 5'-ribonucleotide

CONTAINS : Soy, Wheat, Fish (Anchovy)

INGRÉDIENTS : Pâte de soja (Soja, Farine de blé, Sel, Baie de blé, Alcool éthylique, Glutamate monosodique, Sorbate de potassium), Chardon comestible séché, Oignon de printemps, Sirop d'amidon de maïs, Pâte de piment rouge (Poudre de poivron rouge, farine de blé, Sirop de maïs, sel), Oignon, Extrait d'anchois, Poudre de poivron rouge, Fécule de pomme de terre, Ail, Extrait de varech, Farine de

CONTIENT : Soja, Blé, Poisson (Anchois)

Net W't / Poids Net : 50g

BEST BEFORE : Printed on Package
MEILLEUR AVANT : Imprimé sur du Paquet

IMPORTED BY / IMPORTÉ PAR
T-Brothers Food & Trading Ltd.
#100 - 88 Brigantine Drive
Coquitlam, BC Canada V3K 6Z6

PRODUCT OF KOREA
PRODUIT DE COREE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Ⅳ

브라질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5

제2장 통관제도 56

1. 관리・법률체계 56
2. 통관절차 59
3. 제출서류 63
4. 관세제도 75

제3장 검역제도 76

1. 관리・법률체계 76
2. 품목별 검역절차 79
3. 동물 기원 제품 79

제4장 라벨링 제도 81

1. 관리・법률체계 81
2. 표시사항 83
3. 라벨링 샘플 87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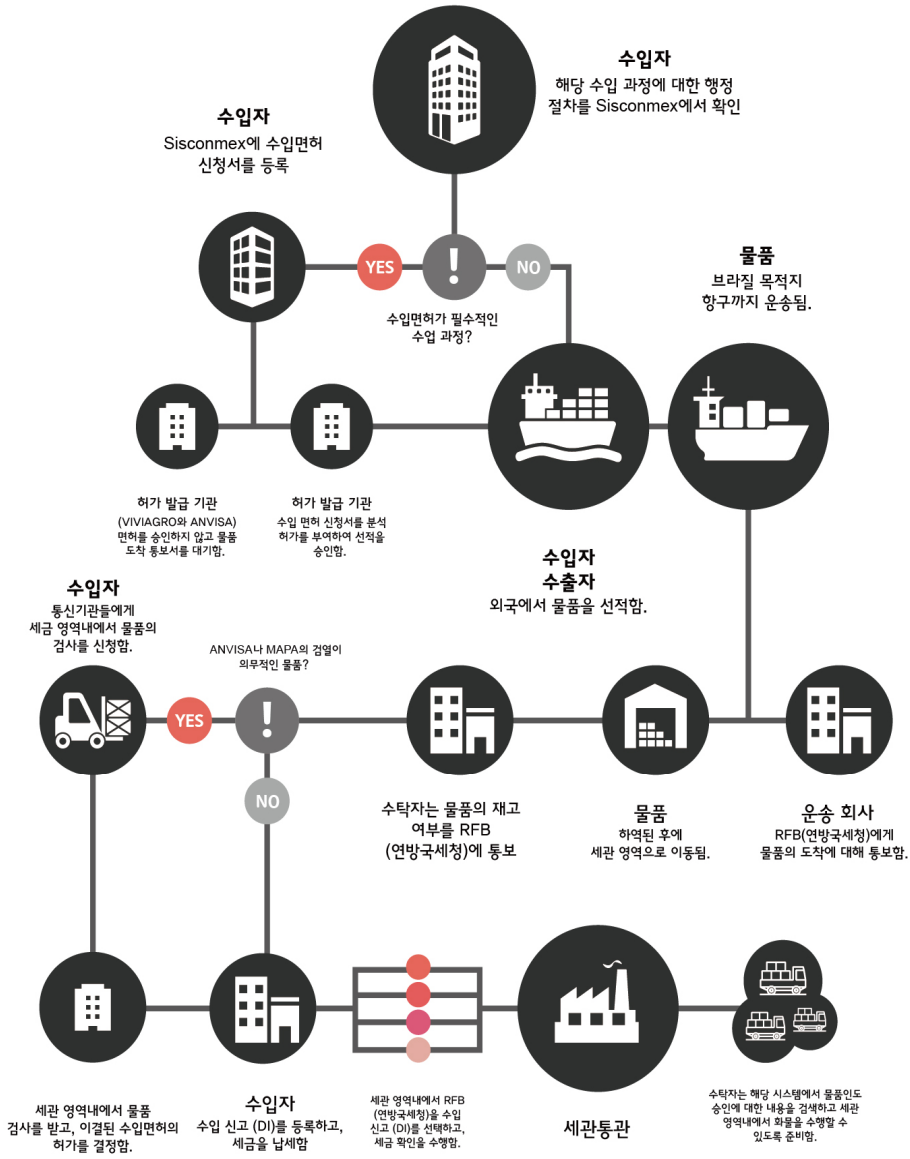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 MDIC[1)]는 대외 무역 정책 및 상업적 행정관리를 수행함

○ 이 외에 대외무역국(SECEX)은 대외 무역 활동을 규제, 감독, 안내, 계획, 통제 및 평가함

○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브라질정부의 국제무역협정 협상 참여
- 수출 문화 진흥 장려
- 환급(Drawback) 허가 결정
- 수출입 영업허가 승인
- 국내생산 연구를 위한 유사성 검사 촉진
- 무역수지 통계 집계
- 국내무역체계 보호

○ 수입 과정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단위로 구분됨

- 정부 기관(ANVISA, MAPA, CNPQ, DECEX, IBAMA 등)이 발행하는 수입 허가서 발부
- 공급자(수출자)에게 외화로 대금 지불
-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물품 통관

○ 또한 브라질의 수입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짐

- 행정 단계 : 수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수입 과정 또는 유형에 따라 적용됨. 이 업무단계에서는 수입허가 승인 및 수입면허 발급을 포함하며 대외무역국(SECEX)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함
- 외환 거래 단계 : 외화를 해외로 이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이 담당하며, 외환 거래를 허가 받은 일반 은행을 통해 처리됨
- 세납 단계 : 세금 징수를 통한 통관 과정 및 세관에서의 물품 반출 등

1) www.mdic.gov.br

나. 법률체계

○ 통관은 일반적으로 Siscomex에서 진행되며 세관 규정 제542조(시행령 제6.759/2009호)는 통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제542조. 수입 통관은 수입 물품, 제출된 서류 및 특정 법률과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임

○ 추가로 세관 규정(시행령 제 6.759/09)은 아래와 같이 통관을 정의함

- 제543조.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최종 목적지인지 아닌지, 또는 수입관세 납세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기준으로 함[2)]

○ 세관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율됨[3)]

- 제1조.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은 최종적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본 법률 또는 특별 법률로 규정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4)]
- 제1항. 이 조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수출 통관을 위해 제출된 물품에게도 적용됨
  - Ⅰ – 브라질로 회수
  - Ⅱ - 특정 법령에 따라 브라질에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체류
- 제2항. 이 외에도 국내에 반입할 당시 적용된 세관 통관과 무관하게 외국이 원산지인 물품이 특수 관세체제로 이전되거나 또는 소비를 위해 이전이 될 경우 해당 물품은 통관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2-A항. 위 조항에서 언급된 수입 관세 통관은 다음에 기준하여 수행됨[5)]
  - Ⅰ - 통합 대외무역 시스템(Siscomex)에 등록된 수입신고서(DI)
  - Ⅱ - 대외무역 단일 포털(Portal Único de Comércio Exterior)에 등록된 단일 수입신고서(Duimp)
- 제3항. 본 법률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통관과 관련된 감사 절차는 브라질 연방국세청(AFRFB)의 세무 감사원이 주관하고 집행함[6)]

○ 세관 규정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제549조. 수입 통관이 중단되고 물품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입신고는 모든 징수 목적을 위해 유효함

---

2) 관련 법령 : 제37/ 1966호, 제44조항, 법령 제2,472/1988호, 제2조항
3) 관련 법령 : 브라질 연방국세청의 지시 규범 제680/06
4) 관련 법령 : 브라질 연방국세청 지시 규범 IN RFB 제1833호(2018년 9월 25일)
5) 관련 법령 : 브라질 연방국세청 지시 규범 IN RFB 제1833호(2018년 9월 25일)
6) 관련 법령 : 브라질 연방국세청 지시 규범 IN RFB 제957조(2009년 7월 15일)

○ 브라질 연방국세청의 지시 규범 제 680/06호 제4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해 수입신고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또한 세관 통관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 수입신고서(DI)는 수입업자에 의해 Siscomex에서 작성이 되어 단일 첨부자료(Anexo Único)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함. 이는 신고서 종류와 통관 유형에 따라 구성됨
- 제1항. 한 개의 신고서에 수입품과 특별관세 체제가 적용되거나 또는 특별지정 구역에 적용되는 국내물품을 동시에 기재할 수 없음
- 제2항. 수입품의 일부가 소비용이거나 특별관세 체제 적용 대상(임시수입 또는 재수입)일 경우 한 개의 신고서 작성이 허용됨
- 제3항. 관세평가협정(Acordo de Valoração Aduaneira)으로 제정된 규칙으로 인해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또는 지불될 가격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물품들을 동일한 그룹으로 묶을 수 없음

○ 세관 규정 IN/SRF 제680/06호

- 제545조. 수입신고서의 등록일부터 수입 통관이 시작됨
- 제1항. 수입신고서의 등록은 SISCOMEX를 통한 브라질 연방 국세청의 번호 발급임
- 제2항. 브라질 연방 국세청은 SISCOMEX에 수입신고서의 등록 및 등록 면제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함
- 제571조. 물품 통관은 세관이 심사한 결론이 기록이 되는 행위임[7)]

○ 지시 규범 IN/SRF 제680/06

- 제15조. 수입신고서(DI)의 등록은 수입 통관의 시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함
  - Ⅰ – 수입업자 등록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 Ⅱ – 수입허가를 받은 후, 연방 정부 관할기관에 의해 환전 규칙을 준수함이 확인된 후
  - Ⅲ - 물품이 도착한 후, 제 17조에 명시된 DI 사전등록 종목의 경우는 제외됨
  - Ⅳ - SISCOMEX 사용금을 포함하여 세금 및 기타 의무납부 사항을 거래은행이 수용한 이후
  - Ⅴ – 등록조건에 미달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8)]
  - Ⅵ - 브라질 연방국세청(RFB) 화물제어시스템에 속할 수 있는 화물의 경우[9)]

○ 위 사항은 수입세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수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임

---

7) 관련 법령 : 제37/ 1966호, 제51조, 본문, 법령 제2472/1988호, 제2조
8) 관련 법령 : 브라질 연방국세청 지시 규범 IN RFB 제1759/2017호
9) 관련 법령 : 브라질 연방국세청 지시 규범 IN RFB 제1759/2017호

2. 통관절차

- 수입 절차는 통합대외무역시스템(SISCOMEX; Sistema Integrado de Comércio Exterior)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행됨. 이 시스템을 통해 브라질 정부는 모든 수출입 업무를 모니터링및 관리하고 있음
- Siscomex는 타 정부기관들과의 정보마찰을 방지하여 수출입에 관련한 정보 단일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임. 이로 인해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는 정부기관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음(환전업무 포함)
- 법인 설립 후 수입자로 활동할 개인 또는 법인이 브라질 연방 국세청의 지부에 직접 찾아가 Siscomex를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Radar" 또는 "Senha(Password)"의 활성화라고 칭함. 즉, Radar은 수출입허가서라고 이해할 수 있음
- Radar 신청이 면제된 법인이 아닐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개인)의 수출입 허가를 별도로 Siscomex에 신청해야 함. 대부분의 경우 Siscomex의 허가는 Portal Habilita(Habilita 포털)에서 부여함[10)]
- Radar의 종류는 Limitada(수출입금액한정 - 6개월 기준 USD 50,000~USD150,000) 또는 Ilimitada(수출입금액무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를 발급받기 전 Siscomex는 법인의 세무분석을 이행하게 됨.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브라질 연방 국세청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 서류 서비스(Dossiê Digital de Atendimento-DDA)를 통해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세무분석을 위해 해당 허가 신청서가 선정되었다는 시스템 화면 증빙(Screen shot)과 기타 서류[11)]를 제출해야 함
- 개인 소기업(MEI) 또는 개인 사업자,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Expressa(특수 Radar)의 몇몇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절차가 적용됨
  - 금액 제한 없이 수출입 하고자 하는 법인 및 6개월 단위로 US $50.000,00 까지 수입하고자 하는 법인
  - 상장회사 또는 장외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법인 및 자회사(Subsidiárias Integrais)
  - 공인경제운영자(Operador Econômico Autorizado- AEO)로 인증이 된 법인
  - 공공기업(Empresa Pública) 또는 혼합경제기업(Sociedade de Economia Mista)
  - 공공 행정기관, 지역기관 및 공공재단, 공공 자치기관, 국제기관 및 기타 역외 기관

10) https://portalunico.siscomex.gov.br/portal/
11) 관련 법령 : 브라질 연방 국세청 지시법규 제1.603/2015호, 제3조항 참조

- 법률 제12.780/2013호에 명시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
- 기타 법인(RFB 브라질연방국세청의 상세한 분석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수출입 허가 신청은 반드시 본사 명의로 제출해야 함

○ 수출입 허가 발급 후 법인의 대표이사는 통관 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Portal Habilita에 등록할 수 있음

○ 수입신고서(DI)를 등록하기 전에는 수입세 납부의무가 없음.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DI) 등록해야만 수입업자의 조건을 취득하게 되고 선적된 물품의 수입업자로 인정됨

○ 수입신고서(DI)가 등록되면 해당 신고서의 기재된 모든 내용은 세무내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세관 통관은 브라질 전역 세관영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화물의 Bill of Landing(선하증권)에 명시된 물품의 최종 목적지로써 하역하는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통관할 세관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통관 이동체제(regime de trânsito aduaneiro)를 사용해야 함

○ 세관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서(DI)의 등록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관 규정 및 지시 규범 IN/SRF 제680/06호가 명시한 바에 따라 물품 통관으로 완료됨

○ 수입과 관련된 세금은 사전에 모두 지불해야 하며 Siscomex는 통관 사전절차 등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신고서를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기타 미흡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세관 감독원은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수입 절차의 복잡성과 특이성으로 인해 경험이 충분하고 Siscomex에 등록된 전문가(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용이함

○ 특정 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위생검역관리가 필요함

식품/농산물	여러 보건기관 공동 수행 – Anvisa(위생감시국/식약처)와 Anvisa가 주(州), 시(市)에서 운영하는 위생감시기관(Vigilância Sanitária), – 브라질 농축부(MAPA)를 포함한 농업기관
공산품 통제·검사 식품검사	위생감시기관(Vigilância Sanitária)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및 음료	브라질 농축부(MAPA)

○ 별도로 위생 등록을 해야 하는 식품이 있음[12)]

- 기능성 또는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
- 유아식
- 장내 영양처리 과정을 위한 레시피가 포함 된 제품
- 새로운 포장기술로 패키징된 제품(재활용품 사용 시)
- 새로운 식품과 새로운 식재료
- 효소 또는 생균제(probiotics)를 함유한 식품보조제(RDC 제240/2018)

○ 식품등록은 5년 동안 브라질 전국에서 유효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 획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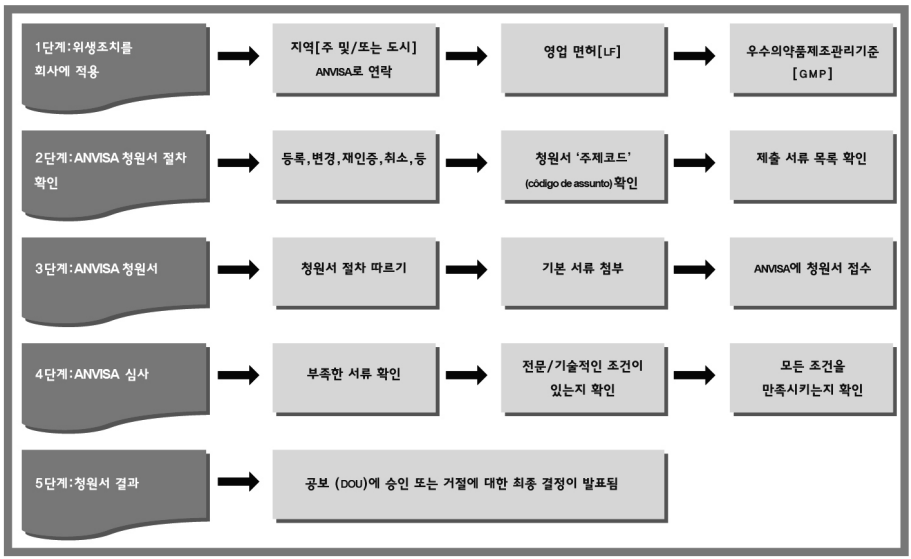

○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240/2018호 및 제27/2010호의 첨부파일 I에는 위생감시기관(Vigilância Sanitária)의 등록 의무에서 면제되는 식품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음

○ 이 외에도 등록 의무에서 면제되었으나 제조일 또는 수입 개시일 통보의 의무를 가진 식품명단은 아래와 같음

- 설탕 및 감미료 식품

12) 관련 법령 :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27/2010의 첨부 II,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240/2018호

- 식품 첨가물
- 규정식 감미료(다이어트용 감미료)
- 염분이 추가된 물
- 천연 미네랄워터 및 천연수
- 체중 조절용 식품
- 영양소 제한이 있는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 당분 섭취 조절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 노인을 위한 식품
- 사탕, 초코볼 및 껌
- 커피, 보리, 차, 마테차 및 가용성 식품
- 초콜릿 및 코코아 식품
- 기술 지원 첨가물
- 포장
- 효소 및 효소 제제
- 향신료, 조미료 및 소스
- 식용 아이스크림 및 식용 아이스크림 재료
- 얼음
- 식품을 준비하기 위한 혼합물 및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
- 식물성 기름, 식물성 지방 및 식물성 크림
- 곡류, 전분, 밀가루 및 가루 식품
- 식물성 단백질 식품
- 야채(야자순 제외), 과일 제품 및 식용 버섯
- 야채 통조림(야자순)
- 소금
- 저나트륨 소금/소금 대용품
- 식품 보조제(효소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식품 보조제 제외)

○ 위생감시국(Anvisa)의 위생 검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위생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생감시국(Anvisa) 결의안 RDC 제240/2018호는 면제되는 식품과 포장의 종류 및 위생 등록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식품 보조제 대부분은 등록이 면제됨. 예외적으로 프로바이오틱 또는 효소가 포함된 식품 보조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함

○ 수입/유통업체의 위생면허 또는 허가 취득을 위해 해당 사는 수입업자(보관자)가 위치한 지역의 위생감시 기관을 찾아가야 함. 수입 제품 관련 절차는 항상 브라질에 있는 수입 회사, 자회사 또는 제조업체 대표자가 수행해야 함

○ 물품통관 후 수입업자는 물품을 실제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물품이 브라질 내 유통물품이 되는 것을 의미함

○ 수입 통관 과정은 수입(수출)업자가 신고한 정보, 제출된 서류 및 제품에 관한 특정 법률의 준수 여부 심사를 포함하고 있음

○ 물품 통관은 세관의 문서 및 실사 확인이 완료되면 시작됨. 만약 확인 중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관이 승인되며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전 세관 당국 담당자가 Siscomex에 통관기록을 등록해야 함

○ Siscomex에 통관 절차가 등록되면 국내에서 물품유통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수입증명서(Comprovante de Importação)가 발급되고 수입업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됨. 이 후 수입업자가 선하증권(conhecimento de carga), 해운 담당부서(Marinha Mercante)의 요금 지불 영수증(해상운송일 경우) 및 유통세(ICMS)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물품을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인도할 수 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됨

3. 제출서류

○ 필요한 제출서류는 회사가 수행할 수입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음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상업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로 견적송장(fatura pró-forma)에 신고한 모든 초기 정보와 수출이 실제로 수행됨을 확인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가능하면 영어 또는 수입국의 언어로 발급하며 기본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상업적 거래를 보여 주며 구매자에게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공식화하는 문서임. 수출업자가 직접 발행하며 세무관리의 대상이 아님
- 해당 서류는 최소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함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과 주소
  - 운송 유형
  - 적재 및 하역 장소
  -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 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
- 통화, 단가, 총 금액
- 판매 또는 거래조건(INCOTERMS).
- 수출업자의 서명
- 지불 방식.
- 포장 유형과 수량 및 부피 표시
- 발행일

〈Invoice 샘플〉

COMMERCIAL INVOICE

SELLER		*INVOICE NUMBER*		*DATE*
		CUSTOMER REFERENCE NUMBER		*DATE*
SOLD TO		*TERMS OF SALE/*		
		TERMS OF PAYMENT		
SHIP T0		*CURRENCY OF SETTLEMENT*		
		MODE OF SHIPMENT		*BILL OF LADING/AWB*

QTY	*PRODUCT DESCRIPTION AND HARMONIZED CODE*	*UNIT OF MEASURE*	*UNIT PRICE*	*TOTAL PRICE*

PACKAGE MARKS	*TOTAL COMMERCIAL VALUE*	
	MISC CHARGES (PACKING, INSURANCCE, ETC.)	
	TOTAL INVOICE VALUE	

CERTIFICATIONS	*I CERTIFY THA THTE STATED EXPORT PROCES AND DESCRIPTION OF GOODS ARE TRUE AND CORRECT* _____ *SIGNED* *TITLE*_____

➢ 선하증권(B/L - Conhecimento de Transporte)

- 국제운송거래 계약을 상징하며 원산지에서 물품을 수령함과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함. 물품의 보유 또는 소유권의 증거도 되는 물품을 지원하고 운송 작업을 설명함
- 선하증권은 운송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명칭을 부여 받음 : CRT(육송), TIF(철도), BL(해운) 또는 AWB(항공)
- 선하증권의 위탁은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뉨
  - 기명식 선하증권 – 물품을 받을 수화인의 명칭이 선하증권 원본에 표시됨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of Shipper) – 소유권이 물품을 보내는 자에게 위탁될 때
  - 지시식 선하증권(무기명) – 물품의 소유자는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그 누구나 될 수 있음
- 선하증권은 발행자와 수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유일 B/L	수화인이 화물을 분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아닌 경우, 운송회사(해운회사, 항공, 선박 소유자)가 직접 발행
마스터 B/L (genérico or máster)	수화인이 화물을 분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일 경우 운송회사(해운회사, 항공, 선박 소유자)가 직접 발행
하우스 B/L (agregado, house or filhote)	수화인이 화물을 분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아닌 경우 화물 집합 에이전시가 발행
서브마스터 B/L 또는 코로더 B/L (Sub-master or co-loader)	수화인이 화물을 분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인 경우 화물 집합 에이전시가 발행

※ “하우스 B/L” 및 “유일 B/L” 유형의 선하증권은 수입 통관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서류임 마스터
※ B/L과 서브마스터 B/L은 세관의 특별통관절차에 통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각 선하증권은 단 하나의 DI(수입신고서)에 해당해야 하며 지시 규범 IN SRF 제680/2006호의 제67조 및 제68조와 세관 규정 제555조에 정해진 예외사항만 인정됨
- 특별 관세체제(예, 임시 입국 및 보세구역)에서 내국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DI는 선하증권의 수화인 명의로 등록되어야 함
-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배서(endorsement)는 수화인이 “해운 혁신을 위한 추가 요금” AFRMM(Adicional ao frete para renovação da marinha mercante-세금의 한 종류)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함

- 선하증권에 관한 공식요구사항, 양도 및 다른 기타 사항은 상법 및 민법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조세 부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립되지 않음(세관 규정 제 556조)
- 세금징수를 위해 선하증권의 모든 수정 사항은 선하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품을 하역할 세관의 담당자에게 공식수정문서(해당 선하증권에 명시 필요)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승인 후 운송사의 전자서류(manifesto)를 수정해야 함(세관 규정 제556조)
- 만약에 운송사 전자서류(manifesto)와 선하증권에 기재된 정보가 다를 경우 선하증권의 정보가 우선시 되며 manifesto는 원격으로 수정됨(세관 규정 제47조)
- 선하증권과 운송사 전자서류(manifesto) 원본 관련 추가 내용, 수정, 보충 및 줄 사이 정보 추가 시 필수적으로 발행인 서명을 필요로 함(세관 규정 제50조)
- 선하증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13)]
  - 특별법을 따라 통관을 완료한 후 임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던 내국화 된 물품 또는 소비를 위한 수입품을 통관할 경우
  - 외국이 원산지인 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적용되었던 통관과 상관없이 다른 특별 관세체제로 이전되거나 소비를 위해 통관할 경우
  - 물품이 국내에 아래와 같이 반입될 경우
    ① 자체적인 방법
    ② 핸드캐리
    ③ 법이 의무적으로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또는 목적을 가진 물품
    ④ COANA(General Coordination of Customs Administratio)가 정한 기타 가정 사항
  - 전자 선하증권(CE)의 적용을 받는 해상 운송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통관
- 세금징수를 위해 선하증권의 발행일에 물품이 선적되었다고 인정됨(세관 규정 제708조)
- 선하증권은 서류에서 다루는 물품이 화물 내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함(세관 규정 제42조, 제2항)
- 만약에 수입신고서(Declaração de Importação)가 사전에 등록된 경우 선하증권 원본을 물품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함(지시규범 IN SRF 제680/2006호, 제19조, 제2항)

13) 관련 법령 : 지시 규범 IN SRF 제680/2006호, 제18조, 제2항, 항목 I

〈선하증권 샘플〉

Date:

BILL OF LADING

Page 1 of _____

SHIP FROM

Name:
Address:
City/State/Zip:
SID#: FOB: ☐

Bill of Lading Number: _____

BAR CODE SPACE

SHIP TO

Name: Location #: _____
Address:
City/State/Zip:
CID#: FOB: ☐

CARRIER NAME: _____
Trailer number:
Seal number(s):

SCAC:
Pro number:

BAR CODE SPACE

THIRD PARTY FREIGHT CHARGES BILL TO:

Name:
Address:
City/State/Zip:

Freight Charge Terms: ***(freight charges are prepaid unless marked otherwise)***
Prepaid _____ **Collect** _____ **3rd Party** _____

SPECIAL INSTRUCTIONS:

☐ (check box) Master Bill of Lading: with attached underlying Bills of Lading

CUSTOMER ORDER INFORMATION

CUSTOMER ORDER NUMBER	# PKGS	WEIGHT	PALLET/SLIP (CIRCLE ONE)		ADDITIONAL SHIPPER INFO
			Y	N	
			Y	N	
			Y	N	
			Y	N	
			Y	N	
			Y	N	
			Y	N	
			Y	N	
GRAND TOTAL					

CARRIER INFORMATION

HANDLING UNIT		PACKAGE		WEIGHT	H.M. (X)	COMMODITY DESCRIPTION	LTL ONLY	
QTY	TYPE	QTY	TYPE			Commodities requiring special or additional care or attention in handling or stowing must be so marked and packaged as to ensure safe transportation with ordinary care. *See Section 2(e) of NMFC Item 360*	NMFC #	CLASS
							RECEIVING	
							STAMP SPACE	
						GRAND TOTAL		

Where the rate is dependent on value, shippers are required to state specifically in writing the agreed or declared value of the property as follows:
"The agreed or declared value of the property is specifically stated by the shipper to be not exceeding _____ per _____."

COD Amount: $ _____
Fee Terms: Collect: ☐ **Prepaid:** ☐
Customer check acceptable: ☐

NOTE Liability Limitation for loss or damage in this shipment may be applicable. See 49 U.S.C. • 14706(c)(1)(A) and (B).

RECEIVED, subject to individually determined rates or contracts that have been agreed upon in writing between the carrier and shipper, if applicable, otherwise to the rates, classifications and rul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carrier and are available to the shipper, on request, and to all applicable state and federal regulations.

The carrier shall not make delivery of this shipment without payment of freight and all other lawful charges.

_____ **Shipper Signature**

SHIPPER SIGNATURE / DAT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materials are properly classified, packaged, marked and labeled, and are in proper condition for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DOT.

Trailer Loaded:
☐ By Shipper
☐ By Driver

Freight Counted:
☐ By Shipper
☐ By Driver/pallets said to contain
☐ By Driver/Pieces

CARRIER SIGNATURE / PICKUP DATE
Carrier acknowledges receipt of packages and required placards. Carrier certifies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was made available and/or carrier has the DOT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or equivalent documentation in the vehicle. ***Property described above is received in good order, except as noted.***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명세서(romaneio de carga)는 적재된 모든 물품을 구분하거나 한 화물에 구성 파트들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명세히 기록한 선적 서류임[14)]
- Packing List는 한 배치(batch) 안에서 그 어떠한 물품이라도 쉽게 식별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기재하여 선적 또는 하역 시 물품의 검사를 수월하게 해야 함
-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기재됨
  - 총 용량(포장)
  - 용량 표시
  - 숫자 순으로 용량 식별
  - 포장 종류(상자, 팔레트 등)에 순 중량, 총 중량, 단위 치수 및 화물의 총 용량
- 수입신고서는 Packing List를 포함해야 함. 통관 시 Packing List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일반적으로 발행을 하는 상황일 경우), 벌금 R$ 500,00(오백 헤알)이 부과됨[15)]
- 이 서류를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 아닌 상황에서는 수입신고서에 Packing List를 포함하는 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벌금이 부과 될 수 없음
- Packing List 발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 예 : 벌크 및 포장되지 않은 화물은 그 자체로 식별될 경우. 자동차(자동차차대번호) 또는 대형 기계 및 장비(일련 번호)와 같은 제품들

14) 관련 법령 : 세관 규정 제533조의 단일 항과 지시 규범 IN SRF 제680/06호, 제18조, 항목 III
15) 관련 법령 : 세관 규정 제728조, 항목 VIII, “e”

〈Packing List 샘플〉

Company Logo Here

Address Line Here
Ph: 555-555-555555
www.templatesmob.com

Company Name

Packing List

Date: _____

To:	From:	Ship Date:
		Ship Via:
		F.O.B. Shipping Point:
		Account No.:
		Order No.:
		Department:

Terms:

Quantity Ordered	Quantity Shipped	Product Number	Description	Unit Weight	Total Weight	Total Cubic Ft.
		Totals		Totals		

Comments/ Notes: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Person

Packing list templat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C/O)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서류이며 공증된 발행 기관이 인증함. 수출을 위해 한 특정 배치(batch)가 어떠한 국가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을 했음을 증명함. 해당 문서는 또 다른 명칭 “Form A”로도 알려져 있음

〈원산지증명서 샘플〉

CERTIFICATE OF ORIGIN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SAPTA)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SAPTA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수입 면허(Licença de Importação)

- 정부기관이 수입을 허가하거나 물품의 선적을 승인함
- 이는 국가가 보건 통제, 경제 영역 통제 또는 다른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타국 물품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함을 의미
- 수입업은 면허제가 아닌 신고제로 수입업자는 연방국세청(RFB) 지부와의 통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Siscomex에 DI(수입신고서)를 등록하면 통관이 가능함
- 특정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이 특정 법령을 따라서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입 면허 신청서는 수입업자 또는 해당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Siscomex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수입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수입신고서를 등록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Siscomex 샘플〉

Número: 10/0000577-6 **Data de Registro:** 03/11/2010 **Impresso em:** 09/12/10 14:56
Situação: PARA ANALISE

SISCOMEX IMPORTAÇÃO

SISCOMEX - Sistema Licenciamento de Importação

Extrato de Licença de Importacao

Básicas

Importador

Tipo do Importador: Pessoa Jurídica
CNPJ: 00000000/0001-91
Razão Social: C&A C & A ESTARNOMEPARATESNOMEPARA TESTAR NOME
País de Procedência: ALEMANHA
URF de Despacho: ABAETETUBA
URF de Entrada: ABAETETUBA

Informações Complementares

TESTETES00100000KG

Fornecedor

Exportador/Fabricante/Produtor

Nome: TESTE
Logradouro: RUA XX
Complemento: 22 *Nº.:* 3434
Cidade: RERE
Estado: RJ
País de Aquisição: AFEGANISTAO
País de Origem: AFEGANISTAO

Mercadoria

Dados Gerais

NCM: 9018.90.99
Descrição da NCM: OUTRS.INSTRS./APARS.P/MEDICINA,CIRURGIA,ETC.
Peso Líquido (Kg): 1,00000
Moeda Negociada: DOLAR DOS EUA
Valor Total no Local do Embarque na Moeda Negociada: 1,00
INCOTERMS: COST AND FREIGHT
Qtde. na Medida Estatística: 1,00000
Unidade da Medida Estatística:

Detalhes da Mercadoria

➢ 수입신고서(Declaração de Importação)

- 세관 통관은 해당 수입 대상 물품에 관해 수입업자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또한 제출한 서류가 현행 특정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관 당국이 확인을 하는 절차임
- 모든 것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행될 시 수입물품은 비로소 통관이 가능해짐 (수입업자에게 물품반출 용인함을 의미)
-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영구적 수입 또는 임시 수입인 경우에도 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 원칙적으로 이 반출 절차는 해당 국가에 물품이 도착한 후에 이루어져야 함. 부패하기 쉬운 제품, 살아있는 동물, 위험성이 있는 제품, 벌크 등과 같은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는 있음
- 세관통관의 기본적인 충족사항은 Siscomex에 등록된 수입신고서의 보유임
- 수입신고서(DI)는 수입업자 또는 수입/유통업체의 법정대리인이 Siscomex에서 작성한 전자문서이며 수입한 물품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여러 정보들 중 수입업자의 정보 및 물품 구매자 또는 주문을 한 자의 정보(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화물의 정보(용량, 무게, 운송 단위), 물품의 분류, 통관금액, 원산지정보, 원산지역 및 취득지역, 수출업자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수입신고서 샘플〉

Declaração: 12/0000096-1 Data do Registro: 24/02/2012 1 / 4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DO BRASIL - RFB
AEROPORTO INTERNACIONAL DO RIO DE JANEIRO
EXTRATO DA DECLARAÇÃO DE IMPORTAÇÃO
CONSUMO

Modalidade do despacho: NORMAL

Quantidade de adições: 1

Importado
CNPJ: 99.999.999/9999-99 EMPRESA TESTE

Adquirente da Mercadoria
CNPJ: 99.999.999/9999-99 EMPRESA TESTE

Representante Legal
CPF: 999.999.999-99 FULANO DE TAL

Processos
JUDICIAL Ident: IDENTPROC123456

Carga
Recinto Aduaneiro: AEROPORTO INTER DO RIO - INFRAERO

Armazém: TECA

Embalagem: BIG BAG Quantidade: 2

Peso Bruto: 12,00000 Kg Peso 10,00000 Kg

Valores	**Moed**	**Valor**
Frete:	DOLAR DOS EUA	5,00
Seguro	DOLAR DOS EUA	40,00
VMLE:	DOLAR DOS ESTADOS UN	1.250,00
VMLD:	DOLAR DOS ESTADOS UN	1.295,00

Tributos	**Suspenso**	**A Recolher**
I.I.:	0,00	366,97
I.P.I.:	0,00	240,57
Pis/Pasep:	0,00	39,59
Cofins:	0,00	182,39
Direitos Antidumping:	0,00	0,00

➢ 수입증명서 (Comprovante de Importação)

- 세관 담당자가 모든 내용을 검수하여 Siscomex에 입력된 정보가 제출한 서류가 세관에서 확인한 바와 일치하고 현행 세관법규를 준수함이 입증되면 세관 담당자가 해당 수입신고서의 통관을 처리함

- 이는 통관의 완료가 기록되었으며 수입자에게 물품이 실제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함
- 물품 통관은 세관 통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수입증명서임
- 오늘날에는 DI 또는 SISCOMEX에 등록된 정보로 대체가 가능해 상징적인 항목이 되었지만 세관당국은 수입 화물이 있는 창고 이외에도 Siscomex를 통해 특정 기능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수입업자에게 물품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을 알 필요는 있음
- 위생 당국에게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청원서
② 연방정부 납세양식(GRU)을 통해 위생감시 심사요금(TFVS) 납부증명서
③ 재무법규에 의거하여 작성된 공무원의 사찰을 위한 출입 허가서
④ 상업송장(Invoice)
⑤ 선하증권
⑥ 알파벳 또는 숫자로 식별된 화물의 배치(batch) 또는 배합에 관한 신고서
⑦ 해당 위생 규정의 형태로 제품의 생산자 또는 제조업체가 발행한 배치 또는 배합별 품질관리 분석 보고서
⑧ 아르헨티나 원산지 제품에 대한 “의약품, 식품 및 기술의 국가 행정” 증명서
⑨ 제3자의 수입을 허가하는 등록 소장 선언서
⑩ 주정부, 시정부 또는 연방구역 정부의 관할 위생 당국이 발행한, 국내에서 제품 관련 유통(수입, 보관 등)에 필요한 영업허가서, 승인 또는 관련 문서
⑪ 회사대표이사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Anvisa에 제품등록/수입, 유통 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법인의 위임장
⑫ 물품을 보관중인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발행한 물품이 보관 환경에 계류되었음과 해당 위치를 증명하는 보증 문서

- ⑥과 ⑦에 명시된 서류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는 원본 또는 사전에 공증된 사본을 지참해야 함
- CVPAF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⑨항목의 문서 제출 면제대상임

4. 관세제도

가. 관리체계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 : 대외무역, 산업, 상업 및 서비스, 비즈니스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MDIC 산하 대외무역국(SECEX)의 역할

- 대외무역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의 구현에 필요한 표준을 수립함
- 재정 및 환율 정책 분야 내에서 융자, 수출 신용 회복, 보험, 운송, 화물 및 무역 진흥을 위한 조치를 제안함
- 수입관세 및 그 수정안에 대한 지침을 제안함
- 대외 무역과 관련된 국제 협정 또는 협상 참여
- 무역 방어 체제의 시행 및 해외에서 무역 방어 수사를 받는 수출업자를 지원함

○ 브라질 연방국세청(RFB) : 국세청은 재정 당국으로서 무역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조사 및 세금 징수에 주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표준(정책) 적용을 포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국세청은 항만, 공항 및 국경 세관에서 물품,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독함

○ 브라질 중앙은행(BACEN) : 외환정책을 구성하며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외화의 국내 입출에 대한 규칙을 제정함

나. 법률체계

○ 시행령 제7.574호, 2011년 9월 29일

-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결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세금 및 관세 법률의 해석에 대한 문의 과정, 상품의 세금 분류, 서비스의 분류, 무형 자산 및 재산에 변경을 가져오는 기타 운영에 관한 분류, 또한 브라질 연방국세청이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명시한 다른 프로세스를 규정함

○ 시행령 제7.213호, 2010년 6월 15일

- 2009년 2월 5일의 시행령 제6759호를 수정 및 추가하는 본 시행령은 세관 활동의 관리와 대외무역 업무에 대한 통제, 관리 및 과세를 규제함

○ 시행령 제6.759호, 2009년 2월 5일

- 관세 활동의 관리 및 대외무역 업무에 대한 통제, 관리 및 과세를 규제함

○ 시행령 제70.235호, 1972년 3월 6일

- 세무 행정 프로세스를 다루며 수정 조치를 제시함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브라질의 식품 규격표준화는 기본적으로 브라질 농축업부(MAPA) 및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두 기관이 수행함

○ ANVISA는 공중 보건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규제, 통제 및 검사를 담당함. 식품과 관련하여 ANVISA는 기본적으로 동물 기원 제품이 아니거나 일반적으로 동물 기원 제품의 50% 미만을 포함하는 식품을 규제함

○ 위생감시의 업무 아래에 있는 식품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뉨

- 공업화/가공화 이전에 의무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식품
  - 기능성, 또는 건강보조 식품
  - 유아식품
  - 장내 영양을 위한 식품
  - 새로운 식품과 새로운 식재료
  - 기능성, 또는 건강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격리된 생물학적 및 프로바이오틱 물질
- 등록 의무 면제 식품
  - 설탕 및 감미료 식품
  - 식품 첨가물
  - 규정식 감미료
  - 염분이 추가된 물
  - 천연 미네랄워터 및 천연수
  - 보조영양 정보가 있는 식품 및 음료
  - 체중 조절용 식품
  - 영양소 제한이 있는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 당분 섭취 조절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 임산부와 모유수유 여성을 위한 식품
  - 노인을 위한 식품
  - 운동선수를 위한 식품

- 사탕, 초코볼 및 껌
- 커피, 보리, 차, 마테차 및 가용성 식품
- 초콜릿 및 코코아 식품
- 기술 지원 첨가물
- 포장
- 효소 및 효소 제제
- 향신료, 조미료 및 소스
- 식용 아이스크림 및 식용 아이스크림 재료
- 얼음
- 식품을 준비하기 위한 혼합물 및 즉시 먹을 수 있는 식품
- 식물성 기름, 식물성 지방 및 식물성 크림
- 곡류, 전분, 밀가루 및 가루 식품
- 식물성 단백질 식품
- 야채, 과일 제품 및 식용 버섯
- 소금

○ 브라질 농축업부(MAPA)는 독점적으로 동물성 원료(육류, 우유, 계란, 꿀, 생선 및 이에서 유래된 식품), 일반적인 음료(비알코올, 알코올 및 발효) 및 채소만을 검열함

○ 예외 : 식품 및 음료의 경우 동물 기원인 경우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음 - 시장의 모든 제품, 특히 제품 표시에 관한 책임은 위생감시기관(Vigilância Sanitária)의 공동책임임

나. 법률체계

○ 브라질의 식품 관련 법률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자주 업데이트 됨. 식품 유통 관련 기본이 되는 법률의 목록은 아래에 나열함.[16)]

1) 식품 관련 기본 법률

- ANVISA
  - 식품 미생물학 - Resolução - RDC nº 12 de 2 de janeiro de 2001
  - 올바른 제조 관행 – Resolução - RDC nº 275, de 21 de outubro de 2002
  - 식품 표시

16) 각 유형의 식품법률 참조 : http://portal.anvisa.gov.br/legislacao-por-categoria-de-produto

► 보완 영양 정보 - RDC nº 54, de 12 de novembro de 2012 및 RDC n° 3, de 4 de fevereiro de 2013

► 포장 식품의 일반 라벨링 - RDC n° 26 de 02 de julho de 2015

► 글루텐 법 - RDC nº 259, de 20 de setembro de 2002 및 RDC nº 123, de 13 de maio de 2004

► 순량(net weight) 정보 - Portaria Inmetro nº 157, de 19 de agosto de 2002

► 포장 식품과 음료의 필수 영양 표시 - RDC n° 360, de 23 de dezembro de 2003 및 RDC nº 359, de 23 de dezembro de 2003 및 RDC nº 163, de 17 de agosto de 2006 및 RDC nº 31, de 5 de junho de 2012

- MAPA(브라질 농축업부)

· 동물 기원 제품 – RIISPOA[17)]

· 올바른 제조 관행[18)]

· 식품 표시 – IN 22/2005[19)]

· 음료 관련 법률 – 와인 및 포도 유래 제품은 법률 nº 7.678, de 08 de novembro de 1988; 이를 규정하는 법령 Decreto n° 8.198, de 20 de fevereiro de 2014. 일반적으로 음료를 규제하는 법률 nº 8.918, de 14 de julho de 1994; 이를 규정하는 법령Decreto nº 6.871, de 4 de junho de 2009.

► 각 유형의 식품에 관한 법률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 가능 http://www.agricultura.gov.br/legislacao-1

► 식물 기원 제품은 브라질로 수입 허가가 가능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20)]

► 지시 규범 Instrução Normativa nº 31, de 15 de agosto de 2013에서는 식물성 제품에 잔류하는 살충제 및 기타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오염원의 매개변수(파라미터)를 정함[21)]

---

17) http://abrafrigo.com.br/wp-content/uploads/ 2017/01/Decreto-nº-9.013_29_03_17_NOVO-REGULAMENTO-RIISPOA.pdf

18) http://extranet.agricultura.gov.br/sislegis-consulta/ consultarLegislacao.do?operacao=visualizar&id=3015

19) https://ambbrasilia.esteri.it/resource/2009/09/INTotale.pdf

20) http://www.agricultura.gov.br/assuntos/importacao-e-exportacao/importacao/consulta-de-produtos-de-importacao-autorizada

21) http://www.agricultura.gov.br/assuntos/vigilancia-agropecuaria/importacao-e-exportacao/procedimentos-area-vegetal

2. 품목별 검역절차

-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검역(Qurantine)은 브라질에 존재하지 않는 해충/병균의 도입 및 확산을 예방하고 이를 위해 식물과 유사제품들, 생물학적 제어를 위한 유기체와 살아있는 동물들을 통제함
- 검역절차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 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검역은 일반적으로 사육 또는 국내 반입 되는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연구를 위한 수입 식물의 표본에도 적용 되는데 수입업자는 브라질 농축업부에 사전 문의를 해야 함

3. 동물 기원 제품

- 동물 기원 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브라질과 수출국의 위생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증이 사전 필수 사항이며 수출하는 회사의 면허 및 제품과 그들의 정보 표시가 브라질 농축업부 산하 농축업보호청의 동물기원제품 심사부서(DIPOA)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음
- 살아있는 동물을 수입할 경우 연방 농축업부 감독관으로부터 사찰 및 서류 감사를 받게 됨. 동물 검역 기준은 동물보건국(DSA)이 설정하게 됨
- 수입 물품들은 소비를 위해 반출되기 이전에 동물기원제품 심사부서(DIPOA)로 위생 및 공업 부분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되며 만약에 필요하면 실험실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제출해야 함
- 위생 요구 사항은 각 종류 및 제품에 따라 달라짐. 임시 또는 최종 결정은 법령, 지시 규범 또는 규정에 의해 수립 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수입을 하기 전에 브라질 농축업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인 규칙은 지시 규범 Instrução Normativa 16/2012호에서 조회가 가능함
- 동물 기원 제품에는 반드시 국제위생진단서(CSI)가 동봉되어야 함
- 동물 기원 식품 수입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

- 1. 브라질 위생감독기관이 수출대상 국가와 인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조치 시행
- 감독관청:MAPA Brasill(브라질 농업, 축업 및 공급부) www.agricultura.gov.br
- 절차 : 수출국가 위생감독기관을 통하여 브라질 MAPA 사절단/심사를 요청하여, 해당 국가 위생 규정을 인정 받아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함

선적 전

↓

- 2. 시설(Facility)의 수출 허가 획득
- 감독관청: 수출 국가의 위생 감독: 농업 또는 가축
- 장소: 원산지
- 절차: 회사는 수출 희망하는 모든 상품 목록을 수출국가 위생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기
- 허가 받은 시설 조회 가능한 링크:

http://sigsif.agricultura.gov.br/sigsif cons/ !ap exportador hab pais rep net?p relatorio=prod ha pais.rdf&p id pais=25&p id area=1&p id produto=&p serial=798306450&p id pais=25&p id ar &p id produto=&p serial=820744199

선적 전

↓

- 3. 생산공장 현장에서 성분 조사(정체 및 품질 기술 규정 RTIO / 제품 라벨 등록– PGA SIGSIF 시스템)
- 절차 : 제품의 모든 성분을(첨가제 포함) 분석하여 브라질 법 준수함을 확인ㄴ
- 담당 : 생산 수출업체, 수입 업체 또는 브라질 자문
- 과정 기간 :20~210일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라벨 표기기준은 다음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연방법 제986/1969호, III장
-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259/200호(일반 식품 표기기준)
- 연방법 제10,674/2003호(글루텐 선분 포함 관련 정보)
-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359호 및 제360/2003호(영양성분 표기기준)
- RDC 제340/2002호(타르트라진 염료(INS 102)가 포함될 경우)
- RDC 제26/2015호(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식품)
- RDC 제136/2017호(제와 유당 성분 표기)
- 이 외에도 제품의 기술 규정에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특정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 영양표기는 소비자에게 한 식품의 영양 특성을 알리려는 제품의 성분표기에 대한 설명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열량 및 영양소 표기
- 영양성분 표기(보완 영양 정보)

○ 영양성분 정보는 제조, 포장 및 유통이 되어 소비자에게 즉시 제공될 준비가 된 모든 식품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함

○ 영양 정보의 기술 규정(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360/2003호)은 다음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 알코올 음료
- 식품 첨가물 및 기술 지원 첨가물
- 향신료
- 인간의 소비를 위한 천연 광천수 및 기타 물
- 식초
- 소금(염화나트륨)
- 커피, 마테차, 차 및 다른 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다른 허브
-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식당 및 상업 시설에서 제조 및 포장된 식품
- 사전 측정된 제품 또는 판매처에서 임의로 분할이 가능한 제품

- 과일, 야채 및 신선육, 냉장육 및 냉동육
- 100cm^2 또는 그 이하의 표시가 가능한 표면적이 있는 식품. 이 예외는 특수 식품 또는 영양 성분 표시가 제시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영양성분정보는 의무적으로 부분별(portion)로 표시[22]되어야 하며 제품의 특정 기술 규정에 다른 규칙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제외 대상으로 분류됨

○ 100g 또는 100ml 별로 영양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특정기술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됨

○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영양소 목록과 선택적 영양소는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360/2003호, 항목 3 기재되어 있음

○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360/2003호로 인해 정해진 영양성분 표시의 샘플은 Anvisa(위생감시국)의 웹사이트에 있는 소비자 안내서(Manual de Orientação aos Consumidores)에서 조회가 가능함[23]

○ 수입업자는 수입과정 외에도 식품의 성분표기 및 위생 관리에 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22) 관련 법령 : 위생감시국 결의안 RDC 제 359호 및 360/2003호

23) http://portal.anvisa.gov.br/documents/33916/396679/manual_consumidor.pdf/e31144d3-0207-4a37-9b3b-e4638d48934b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구분	의무/옵션	모델
1) 제품명	의무	의무 라벨링에 표기 되어있는 정보 예 자료 : 브라질 농축산업연구공사(Embrapa)
2) 원료명 리스트	의무	
3) 액체 성분	의무	
4) 원산지 또는 수입 업체 회사명 및 주소	의무	
5) 배치 번호	의무	
6) 보관방법	의무	
7) 유통기한	의무	
8) 필요 시, 식품의 조리 방법 및 사용법	의무	

나. 용어정의

○ 라벨링 : 식품 포장에 기술된, 인쇄된, 도장 찍힌, 새겨진, 석판 인쇄된, 접착제로 붙어진 모든 설명, 이미지, 도표 등의 표시 사항

○ 포장 : 식품을 보호하고, 운송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기, 포장 또는 포장지

포장	1차 포장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 또는 보호하는 포장재
	3차 포장	1개 또는 여러 개의 2차 포장을 수용 또는 보호하는 포장재
포장식품 (packaged-food)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 될수 있는 포장재에 담겨있는 식품
소비자		식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재료		첨가물까지 포함하여 식품의 제조 또는 준비에 사용되며 본형 또는 변형된 형태로 최종 제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원료		처리 또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형이 되어야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
식품 첨가물		영양공급 없이 식품의 생산, 가공, 준비, 처리, 보관, 저장, 운송 또는 손으로 다룰 때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징 변형 또는 미각을 변경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재료 첨가물은 직접 또는 간접적 함량 되어 식품의 구성 요소가 됨.(영양 특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되는 영양 보강제 또는 이물질은 제외됨)
음식물		자연 상태, 반 처리 또는 처리 후 섭취되는 모든 물질. 음료를 포함하는 인간 섭취용이며 조리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 (화장품, 담배 및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물질은 포함되지 않음)
식품 판매명		식품의 실체와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명칭을 뜻함. 제품의 고유한 정체성과 품질을 규정하는 특정 기술기준에 정의
식품 배분		식품을 용량 별로 분배하고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 및 제공하는 작업
로트 또는 배치		동일한 조건 아래, 일정 시간 내, 동일한 제조사 또는 배분업체가 가공한 유형의 집합물
원산지		식품이 생산되었거나 또는, 여러 나라에서 가공되었지만 중요한 변형이 이루어진 최종 국가
주 표시면		제품명, 브랜드 또는 로고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강조되어 있는 라벨링 부분
표기방식		라벨에 기재하는 방식
식품의 판매 명칭		제품명 또는 생산 회사명과 함께 브라질법에 의거하여 이행된 기술적 연구로 승인받은 이름이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포장재, 식품유형, 가공 조건 또는 처리 과정 등과 같은 기타 정보도 표시될 수 있음

다. 표기방식

○ 원재료명 : 아래 정보들이 표기 되어야 함

- 식품 첨가물의 역할 또는 필수 기능
- 풀네임 또는 INS 번호(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Codex Alimentarius), 또한 동시에 풀네임과 INS번호 표시가 가능. 첨가물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기능별로 표시되어야 함. 식품용 첨가제는 원재료명 목록 끝에 이어 표시되어야 하며, 함량 비율의 하향순서로 나열되어야 함
  예외로 설탕, 밀가루, 마테차, 포도주 등 단 한 개의 원재료 식품이 있음
  향/향료의 경우 기능 표시만 필수이며 향/향료의 기술기준에 정의된 구분의 표기는 선택사항임

○ 식품 첨가제 표시

- 식품 라벨 재료목록에 표기. 첨가제는 원재료명 목록 끝에 이어 표시되어야 하며 같은 목록에 일부분이어야 함. 향 및 향료의 기능은 꼭 표시해야 하나 구분 표시는 선택사항임. 구분은 브라질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능에 따라 분류되게 됨 : 산화 방지제, 색소, 방부제, 감미료, 향료, 산미료, 등

○ 유통기한 : 유통기한은 아래 표현을 사용해야 함

- “consumir antes de...”(... 까지 드십시오)
- “válido até...”(...까지 유효), “validade...”(... 기한) ou “val:.. (기한 약자)”
- “vence...”(...에 만료됨), “vencimento...”(만료날짜), “vto:...”(만료날짜 약자) ou “venc:....”(만료날짜 약자)
- “consumir preferencialmente antes de...”(....까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통기한는최소한 아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3개월 이하의 유통 기한은 일월
- 3개월 이상의 유통 기한은 월년
- 기한이 12월이면 “.....년 말”로 표시 가능. 유통기한은 숫자로 표시 또는 월은 해당 첫 3개 문자의 알파벳으로 표시 가능

라. 유의사항

○ 주 표시면에는 식품의 명칭, 품질, 순도 또는, 규제된 경우, 혼합물, 제품 내용물의 명목 수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과 가장 관련 있는 형태 및 색상 대조에 포함되어서 정확한 모습이어야 함. 의무적 표시의 문자와 숫자는, 순량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1mm 이상이어야 함

○ 향신료와 허브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장 후 라벨을 붙이기 위한 주 표시면의 표면이 10cm^2 미만인 소형 제품은 의무 정보에 명시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최소 제품의 판매 명칭과 브랜드는 표기해야 함. 소규모 단위를 담는 역할을 하는 포장은 필요한 모든 의무 정보를 표기해야 함

○ 수입업자는 국내에 반입할 때 1차 또는 2차 포장의 외국어 라벨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기해야 함

- 해외에서 사용되는 상품명
- 제조자 명
- 제조지
- 배치 또는 배합의 코드 번호
- 해당 위생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제조일
- 가능한 경우, 만료일 또는 만기일

○ 위생 당국은 회사의 기술적 책임자와 ANVISA에서 제품의 정규화를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수입물품 또는 제품 라벨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식품수입의 경우 라벨의 번역본에 수입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음

3. 라벨링 샘플

항목	정보	사진
제품 판매 명칭	귀리와 꿀이 포함된 통밀 비스킷	
순량	200g	
수입업자의 원산지 또는 사업체 명칭 및 주소	수입업자 : XXX do Brasil Ltda, Avenida Castro Alves,numero - Cidade, SP.	
성분 목록	ALÉRGICOS : CONTÉM AVEIA E DERIVADOS DE SOJA, TRIGO E CENTEIO. PODE CONTER CEVADA ELEITE. CONTÉM GLÚTEN 곡류(통밀가루(22%) 및 귀리(21%), 밀가루(12%) 및 라이 가루(5%))에 철, 엽산, 설탕, 식물성 기름, 전화 당, 염분, 화학적 팽창제(중탄산 암모늄), 향료, 유화제(대두 레시틴) 및 항산화제(TBHQ) 포함 알레르기 주의 : 콩, 귀리 및 대두, 밀과 귀리 유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리와 우유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루텐 포함	
배치 식별	82611xxxx-19:47	 INFORMAÇÃO NUTRICIONAL Porção de 30g (5 biscoitos) Quantidade por porção / %VD(*) Valor energético 128 kcal = 538 kJ 6% Carboidratos 21 g, dos quais: 7% Açúcares 8,0 g ** Proteínas 3,1 g 4% Gorduras totais 3,7 g 7% Gorduras saturadas 1,2 g 5% Gorduras trans não contém ** Fibra alimentar 1,5 g 6% Sódio 54 mg 2% * % Valores Diários de referência com base em uma dieta de 2.000 kcal ou 8.400 kJ. Seus valores diários podem ser maiores ou menores dependendo de suas necessidades energéticas. ** VD não estabelecida.
저장 방법	최상의 보전을 위해 건조하고 시원하며 무취의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패키지를 연 다음에는 쿠키를 건조하고 잘 덮인 용기에 담으십시오.	
유통 기한	유효 기간 : 05/18/2019	
사용 방법	해당 사항 없음	

항목	정보	사진
제품 판매 명칭	볶은 가루 커피	
순량	500g	
수입업자의 원산지 또는 사업체 명칭 및 주소	생산자 : XXX Av. Bras lia, 514X - Bairro São benedito Santa luzia - MG/Brasil CEP XXXX CNPJ XXXXX	
성분 목록	성분이 단일화된 제품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치 식별	L 31MGXX 4:26	
저장 방법	가루의 향과 맛을 유지하려면 패킷을 냉장고 안의 밀폐된 용기에 관하십시오.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유통 기한	02/08/19	
사용 방법	준비팁 : 물 1리터 당 커피 4 큰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물이 끓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포가 나타나면 천천히 필터 또는 스트레나의 중심에 있는 커피 가루 위에 물을 부어 잠기게 하십시오.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Ⅳ

멕시코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93

제2장 통관제도 94

1. 관리・법률체계 94
2. 통관절차 96
3. 제출서류 97
4. 관세제도 101

제3장 검역제도 105

1. 관리・법률체계 105
2. 품목별 검역절차 110
3. 제출서류 113

제4장 라벨링 제도 115

1. 관리・법률체계 115
2. 표시사항 116
3. 라벨링 샘플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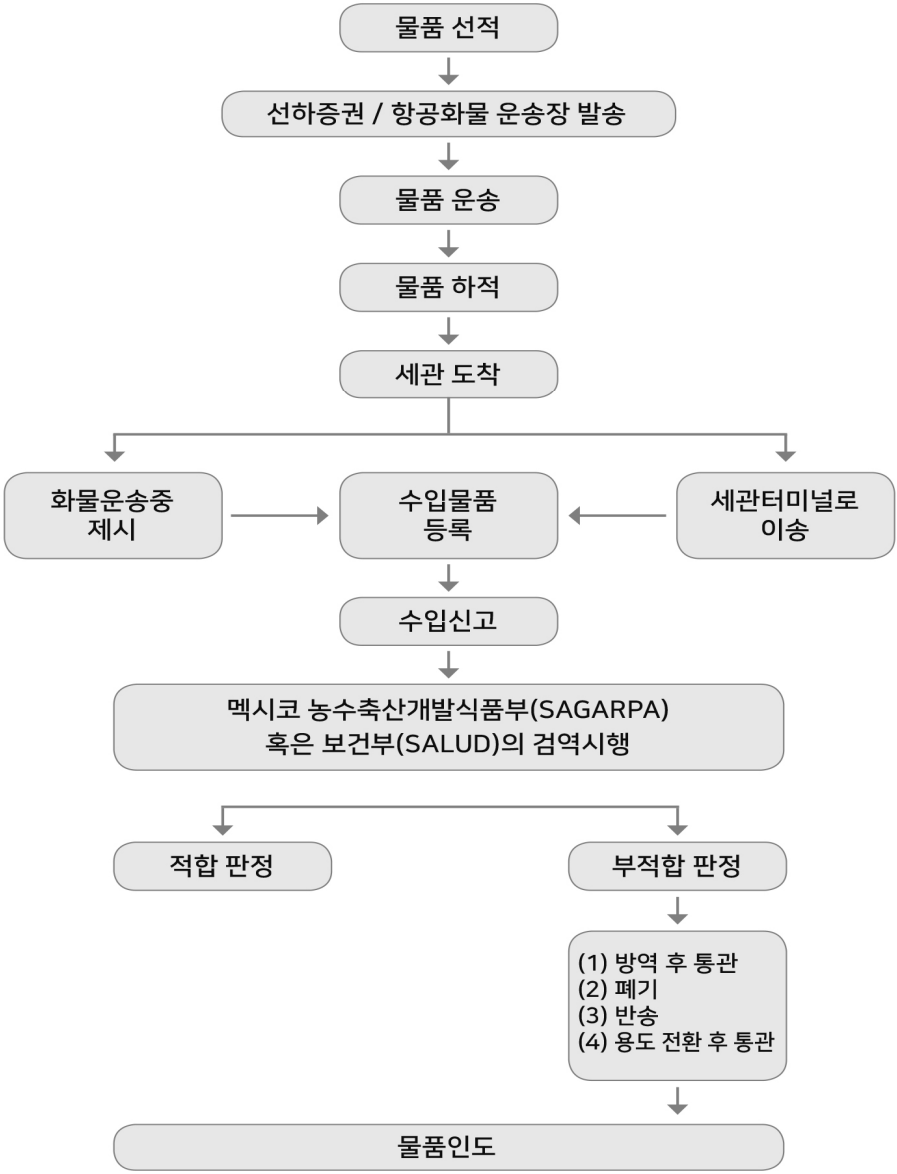
물품 선적
선하증권 / 항공화물 운송장 발송
물품 운송
물품 하적
세관 도착
화물운송중 제시
수입물품 등록
세관터미널로 이송
수입신고
멕시코 농수축산개발식품부(SAGARPA) 혹은 보건부(SALUD)의 검역시행
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
(1) 방역 후 통관
(2) 폐기
(3) 반송
(4) 용도 전환 후 통관
물품인도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 對멕시코 수입은 연방관세법(Ley Aduanera) 96조 및 101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에 적용되며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거나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의 수입에도 해당됨
- ○ 멕시코 통관은 재무부 소속 조세청 산하의 세관관리국에서 관장함
- ○ 세관관리국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누어짐

〈멕시코 통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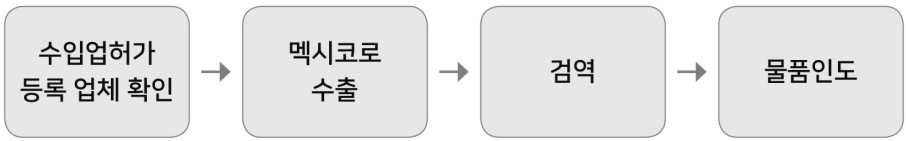

- ○ 멕시코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멕시코 수입업체가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함

○ 정식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통관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정식 수입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의 허가증에는 수입취급가능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 거래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실제 취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멕시코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농축수산부(SAGARPA : 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Desarrollo Rural)의 검사대상이 됨
○ 검사와 검역은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 소속 연방위생보건위원회(Cofepris) 및 농축수산부 소속 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SENASICA)의 주도로 동시에 실시되며 검사관의 샘플검사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출 및 폐기되며 멕시코 내로 반입할 수 없음

〈멕시코 항구별 물동량〉

(단위 : 톤, %)

순위	항구명	물동량	비중
1	도스 보카스 (Dos Bocas)	13,319,244	12.30%
2	카요데아르카스 (Cayo Arcas)	12,259,807	11.40%
3	만사니요 (Manzanillo)	12,257,311	11.40%
4	베라크루즈 (Veracruz)	11,599,824	10.70%
5	코아트자코알코스 (Coatzacoalcos)	11,068,753	10.30%
6	라사로카르데나스 (Lázaro Cárdenas)	9,617,027	8.90%
7	알타미라 (Altamira)	9,354,738	8.70%
8	툭스판 (Tuxpan)	5,975,869	5.50%
9	푼타 베나도 (Punta Venado)	3,446,470	3.20%
10	탐피코 (Tampico)	3,067,943	2.80%
	기타	16,017,212	14.80%
	총계	107,984,198	100%

* 자료원 : 멕시코 교통통신부(SCT)
* 2018년 5월 누계 기준 멕시코 내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는 도스 보카스
* 그 뒤를 카요데아르카스, 만사니요, 베라크루즈 등이 뒤따르고 있음
* 특히 만사니요 항의 경우 한국 등 아시아발 물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음

나. 법률체계

① **사전수입승인제**(Persimo)

- ㅇ 멕시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 것. 수입업자는 보건부에 판매증서와 성분분석표, 상업송장, 라벨부착 샘플, 인지대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ㅇ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식품상태 보전을 위해 냉장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② **사전수입신고제**(Aviso)

- ㅇ 사전에 한국식약청에서 발급한 판매증명서와 성분분석표를 멕시코 보건부에 제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서류통과 확인서만으로 해당물품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바로 통과되는 제도임
- ㅇ 2011년 10월 발효된 규정에는 멕시코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화물은 사전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ㅇ 해상운송 시 해운사와 국제화물 에이전트가 멕시코행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선적화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 상선회사들은 배가 출발하기 3일 전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기도 함

2. 통관절차

〈멕시코 주요 통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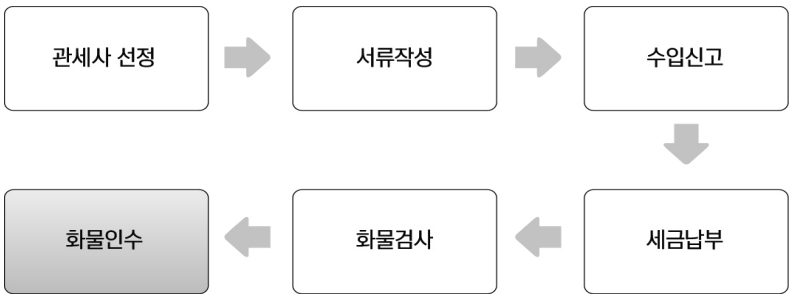

- ㅇ 관세사를 선정한 후 수출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
- ㅇ 한국 관세청에 수출신고
- ㅇ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수입허가서 제출

○ 멕시코 세관에 관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

- 입항지 상업은행에 납부

○ 멕시코 세관에서 서류 검토

- 원산지 표시 유무, 저가신고(덤핑) 여부 검토, 서류구비 여부 확인

○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여부 결정 및 화물 검사

- 수입물품 전수검사
- 위법사실 발견 시 물품 압수 혹은 벌금 부과

○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화물 인수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명

① 수출신고서

○ 한국 관세청에서 발급하며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을 신고해야 함

○ 수출신고서는 영문, 국문 두 가지 언어로 작성가능하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함

〈수출신고서 샘플〉

[별지 제1호 서식]

UNI-PASS

수 출 신 고 서 (갑지)

※ 처리기간 : 즉시

제출번호 99999-99-9999999	④신고번호	⑤신고일자	⑥신고구분	⑧C/S구분
①신 고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	YYYY/MM/DD	X	X

②수 출 대 행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수출자구분 X 수 출 화 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 (소재지) 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⑨거래구분 XX	⑩종류 X	⑪결제방법 XX
	⑫목적국 XXXXXXX	⑬적재항 XXXXXXX	⑭선박회사 (항공사) XXXXXXX
	⑮선박명(항공편명) XXXXXXX	⑯출항예정일자 XXXXXX	⑰적재예정보세구역 XXXXXXX
	⑱운송형태 XX XXX		⑲검사희망일 YYYY/MM/DD
	⑳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③제 조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부호 XXX	㉑L/C번호 XXXXXXXXXXXXXXXXXX	㉒물품상태 X	
	㉓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X	㉔반송 사유 XX	
④구 매 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 (구매자부호) XXXXXXXXXX	㉕환급신청인 X (1: 수출대행자/수출화주, 2: 제조자) 간이환급 XX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㉖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㉗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㉘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

㉙모델 · 규격	㉚성분	㉛수량	㉜단가(XXX)	㉝금액(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모델 ·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XX)	9,999,999,999.99	999,999,999.99

㉞세번부호	9999.99-9999	㉟순중량	999,999,999,999(XX)	㊱수량	999,999,999,999(XX)	㊲신고가격(FOB)	₩999,999,999
㊳송품장번호	XXXXXXXXXX	㊴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X)	㊵원산지	XX-X-X	㊶포장갯수(종류)	999,999(XX)
㊷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㊸총중량	999,999,999(XX)	㊹총포장갯수	999,999 (XX)	㊺총신고가격 (FOB)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9		
㊻운임(₩)	999,999,999	㊼보험료(₩)	999,999,999,999	㊽결제금액	XXX-XXX-999,999,999,999,999		
㊾수입화물관리번호	XXXXXXXXXXXXXXXXXX	X	㊿컨테이너번호	XXXXXXXXXX	X		

※신고인기재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51세관기재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52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XXXXXXXXXX 53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54적재의무기한	YYYY/MM/DD	55담당자	XXXXXX(XXXXXX)	56신고수리일자	YYYY/MM/DD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초소,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portal.customs.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자료원 : 한국 관세청

② **선하증권**(Bill of Loading, B/L)

- 선주,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어 특정 선박에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명기한 서류
- 선하증권은 송화인과 선주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계약증서와 상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역할을 함

〈선하증권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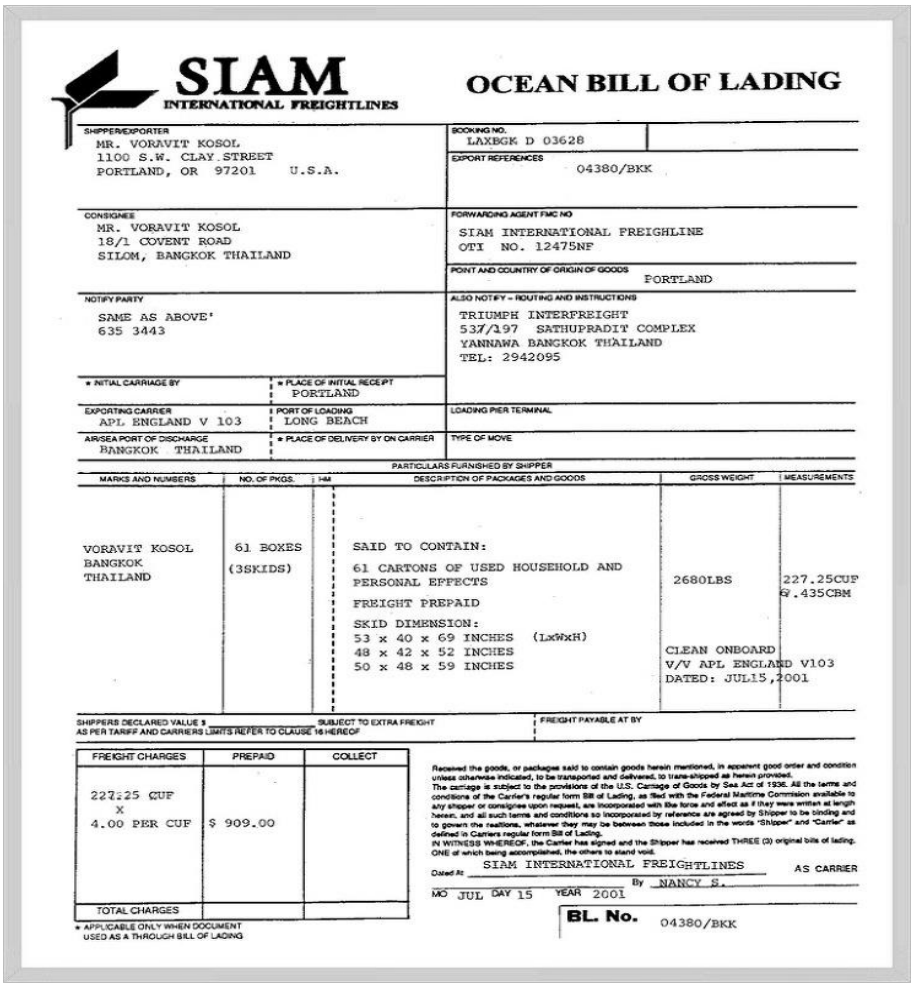

SIAM
INTERNATIONAL FREIGHTLINES

OCEAN BILL OF LADING

SHIPPER/EXPORTER
MR. VORAVIT KOSOL
1100 S.W. CLAY STREET
PORTLAND, OR 97201 U.S.A.

BOOKING NO.
LAXBGK D 03628

EXPORT REFERENCES
04380/BKK

CONSIGNEE
MR. VORAVIT KOSOL
18/1 COVENT ROAD
SILOM, BANGKOK THAILAND

FORWARDING AGENT FMC NO
SIAM INTERNATIONAL FREIGHLINE
OTI NO. 12475NF

POINT AND COUNTRY OF ORIGIN OF GOODS
PORTLAND

NOTIFY PARTY
SAME AS ABOVE'
635 3443

ALSO NOTIFY – ROUTING AND INSTRUCTIONS
TRIUMPH INTERFREIGHT
537/197 SATHUPRADIT COMPLEX
YANNAWA BANGKOK THAILAND
TEL: 2942095

* INITIAL CARRIAGE BY
* PLACE OF INITIAL RECEIPT
PORTLAND

EXPORTING CARRIER
APL ENGLAND V 103

PORT OF LOADING
LONG BEACH

LOADING PIER TERMINAL

AIR/SEA PORT OF DISCHARGE
BANGKOK THAILAND

* PLACE OF DELIVERY BY ON CARRIER

TYPE OF MOVE

PARTICULARS FURNISHED BY SHIPPER

MARKS AND NUMBERS	NO. OF PKGS.	HM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GROSS WEIGHT	MEASUREMENTS
VORAVIT KOSOL BANGKOK THAILAND	61 BOXES (3SKIDS)		SAID TO CONTAIN: 61 CARTONS OF USED HOUSEHOLD AND PERSONAL EFFECTS FREIGHT PREPAID SKID DIMENSION: 53 x 40 x 69 INCHES (LxWxH) 48 x 42 x 52 INCHES 50 x 48 x 59 INCHES	2680LBS CLEAN ONBOARD V/V APL ENGLAND V103 DATED: JUL15,2001	227.25CUF @.435CBM

SHIPPERS DECLARED VALUE $
AS PER TARIFF AND CARRIERS LIMITS REFER TO CLAUSE 16 HEREOF

SUBJECT TO EXTRA FREIGHT

FREIGHT PAYABLE AT BY

FREIGHT CHARGES	PREPAID	COLLECT
227.25 CUF X 4.00 PER CUF	$ 909.00	
TOTAL CHARGES		

* APPLICABLE ONLY WHEN DOCUMENT USED AS A THROUGH BILL OF LADING

Received the goods, or packages said to contain goods herein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to be transported and delivered, to trans-shipped as herein provided.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of 1936.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rrier's regular form Bill of Lading, as filed with the Federal Maritime Commision available to any shipper or consignee upon request, are incorporated with the force and effect as if they were written at length hereon, and all such terms and conditions so incorporated by reference are agreed by Shipper to be binding and to govern the realtions, whatever they may be between those included in the words "Shipper" and "Carrier" as defined in Carriers regular form Bill of Lading.
IN WITNESS WHEREOF, the Carrier has signed and the Shipper has received THREE (3) original bills of lading,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stand void.

Dated At SIAM INTERNATIONAL FREIGHTLINES AS CARRIER
By NANCY S.
MO JUL DAY 15 YEAR 2001

BL. No. 04380/BKK

* 자료원 : 인천항만공사

③ 상업송장(Invoice)

- ㅇ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물 내용안내서 및 계산서
- ㅇ 수출업자에게는 상품 대금이나 비용 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수입업자에게는 수입 계산서 역할을 함
- ㅇ 매도자 성명과 주소,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선적된 물품 리스트, 수하인, 대리 판매상, 상품명세, 수량, 가액 혹은 가격 및 수수료 등을 표시해야 함
- ㅇ 특히 멕시코 수출 시 현지에서 실제 항구 도착 물품에 대한 현지 통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에 관세에 대한 지불이 완료되므로 수입자와 계약한 내용을 기초로 한 송장과 관세 납입 필증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함

〈상업송장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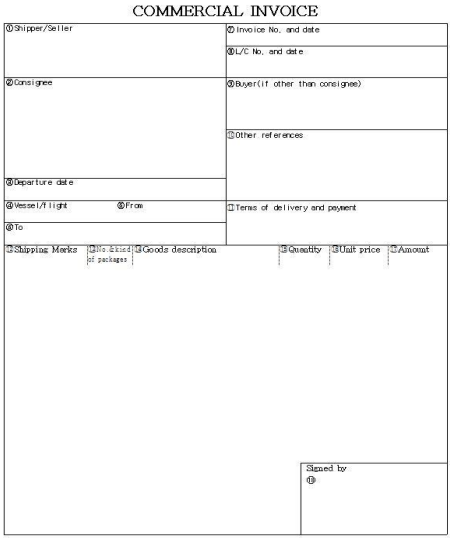
COMMERCIAL INVOICE

①Shipper/Seller	⑦Invoice No. and date
	⑧L/C No. and date
②Consignee	⑨Buyer(if other than consignee)
	⑩Other references
③Departure date	
④Vessel/flight ⑤From	⑪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⑥To	

⑫Shipping Marks	⑬No. & kind of packages	⑭Goods description	⑮Quantity	⑯Unit price	⑰Amount

Signed by
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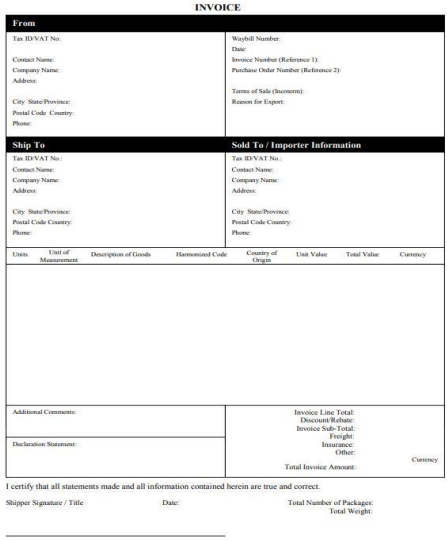
INVOICE

From	
Tax ID/VAT No: Contact Name: Company Name: Address: City State/Province: Postal Code Country: Phone:	Waybill Number: Date: Invoice Number (Reference 1): Purchase Order Number (Reference 2): Terms of Sale (Incoterm): Reason for Export:
Ship To	**Sold To / Importer Information**
Tax ID/VAT No.: Contact Name: Company Name: Address: City State/Province: Postal Code Country: Phone:	Tax ID/VAT No.: Contact Name: Company Name: Address: City State/Province: Postal Code Country: Phone:

Units	Unit of Measurement	Description of Goods	Harmonized Code	Country of Origin	Unit Value	Total Value	Currency

Additional Comments:	Invoice Line Total: Discount/Rebate: Invoice Sub-Total: Freight: Insurance: Other: Currency Total Invoice Amount:
Declaration Statement:	

I certify that all statements made and all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re true and correct.

Shipper Signature / Title Date: Total Number of Packages:
Total Weight:

* 자료원 : 인천항만공사, UPS

④ 원산지증명서

- ㅇ 수출업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ㅇ 또한 원산지 증명서와 통관서류의 대조 불일치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1)]

※ 웹인증 또는 EDI(전자무역, 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을 통하여 증명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항목 1 : 수출업체명, 주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기입
항목 2 : 생산업자(수출업체)명,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기입
항목 3 : 수입업체명,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기입
항목 4 : HS CODE 기입
항목 5 : 세부 품목내역으로 품목명, 재질, 수량(Pcs, Mts), 규격, 중량
항목 6 : 송장 번호
항목 7 : Criterio de Origen 난에 A, B, C 표기
A : 농산품 중 100% 한국 내 생산 품목
B : 수입 원부자재 이용 제조 생산 품목
C : 가공하지 않은 광물 또는 석유화학 원료
항목 8 : País de Origen란에 Hecho en Corea del Sur로 명기
항목 9 : 동 증명서의 장수 기입 및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
항목 10 : 수입업체의 대표 이름 및 서명
항목 11 : 상공회의소의 정격 도장으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및 담당자 서명 날인

* 자료원 : 대한상공회의소

4. 관세제도

가. 관리체계

○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산하 부서인 조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SAT)의 세관관리국(Aduana Mexico)이 관할하며 세관관리국은 다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눠짐

- 중앙조직 : 관세기획과, 관세사무관리과, 연구, 과학서비스과, 정보통계분석과, 총무, 연수과 등으로 구성됨
- 지방조직 : 전국에 지방세관 8개소, 일반세관 47개소, 국제공항세관 48개소, 기타 세관 243개소가 설치돼 있음

○ 또한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22개의 부(Sección)와 98개의 류(Capítulo)로 구성)

○ 관세체계는 0%, 3~5%, 10~13% 15~20%, 23~35%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대상 품목 관세율은 아래와 같음

1) 대한상공회의소에 비치된 멕시코용 고유 양식을 이용해 작성(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단계별 관세율 대상품목〉

(단위 : %)

관세율(%)	적용 품목
0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마킬라도라 및 제조업에 이용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및 반제품
3~5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소량만 생산되는 일부 기계류와 부품
10~13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부품
15~20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소비재 및 부품류
23~35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 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

○ 수입식품의 경우 최고 관세율은 35%이며 특별 아이템(주류, 담배, 추출물 등)의 적용 관세율은 0~160%까지 다양함

〈품목별 평균 관세〉

(단위 : %)

품목	평균 관세율
동물, 생선, 채소 제품	17
식품, 음료, 담배 제품	28
섬유, 나무 펄프	10
케미컬, 플라스틱	4
설비, 무기, 제조업 장비	9
기계, 운송	5
금속, 미네랄, 나무 제품	3
돌, 유리, 아트, 귀금속	5
식용 채소와 특정 뿌리 등	17
식용 과일과 견과류, 선인장 껍질, 과일	19
커피, 티, 마테차, 향신료	21
시리얼	19

나. 법률체계

○ 멕시코는 통상법 제 21~25조에 의거해 사전허가, 수출입쿼터, 원산지표기에 대한 다양한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상기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 절차는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되며 수입이 제한된 품목과 수출이 제한된 품목은 아래와 같음

〈수입허가 대상 품목〉

품목(분야)	내용
석유 관련 제품	국영석유공사(Pemex)의 공식의견서 필요 LPG의 경우, 에너지부(Sener)의 의견서도 필요
무기류, 폭발물, 군사차량	국방부(Sedena)의 공식의견서 필요
중고 의류	내무부(SG)의 공식의견서 필요
재생용 중고타이어	재생담당업체의 대한 상세내역서 필요
자동차 반제품 임시수입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해 멕시코에서 완성한 후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동 반제품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 필요
해외공관 직원 차량	외교부(SRE)의 증빙서류 및 재무부에서 발행한 임시수입허가증 사본 제출
장애인용 차량	최근 6개월 이내에 공식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상세한 장애 내용 포함)
방탄 차량	방탄관련 멕시코 품질협회(NORMEX) 증명서 필요
견인차	수입제품이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음을 인증하는 멕시코제조업협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Transformación) 발행 증명서 필요
치즈 및 유제품	유제품산업협회나 제조업협회 의견서 제출 필요
중고컴퓨터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교육부(SEP)의 허가서 필요
시가, 캐러멜, 껌	수입 첫 해에는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수입내역에 대한 세관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수입 제한 품목〉

품목(분야)	내용	HS-Code
살아있는 생선	농어, 숭어, 미꾸라지, 메기, 민어, 노래미, 붕어, 연어, 초어 등	0301.9901
종자, 분, 초분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초분	1208.9003, 1209.9907
마리화나	마리화나 종자 및 관련 제품	1211.9002, 1302.1102, 1302.1902, 1302.3904
화학제품	유해 화학물 및 의약품	2903.5903, 2903.5905, 2910.9001, 2925.1901, 2931.0005, 2929.1101, 3003.4001, 3003.4002, 3003.9005,
멸종위기동물	거북이, 거북이알, 카구아마 자라	4103.2002
폭력적인 이미지의 전사지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아동용 전사지(데칼코마니)	4908.9005, 4911.9105
역사유물	교육부(SEP)에서 고고학적 유물로 지정한 역사적인 유물	9705.0005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 단순평균관세율은 4.4%, FTA 및 각종 경제협정 체결국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0.95%, 산업특혜프로그램을 적용한 공산품 가중치 평균관세율은 3.4% 수준
- 멕시코 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대외교역시장 개방 등을 기조로 통상정책을 운영 중임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농식품 검역 관련 국가기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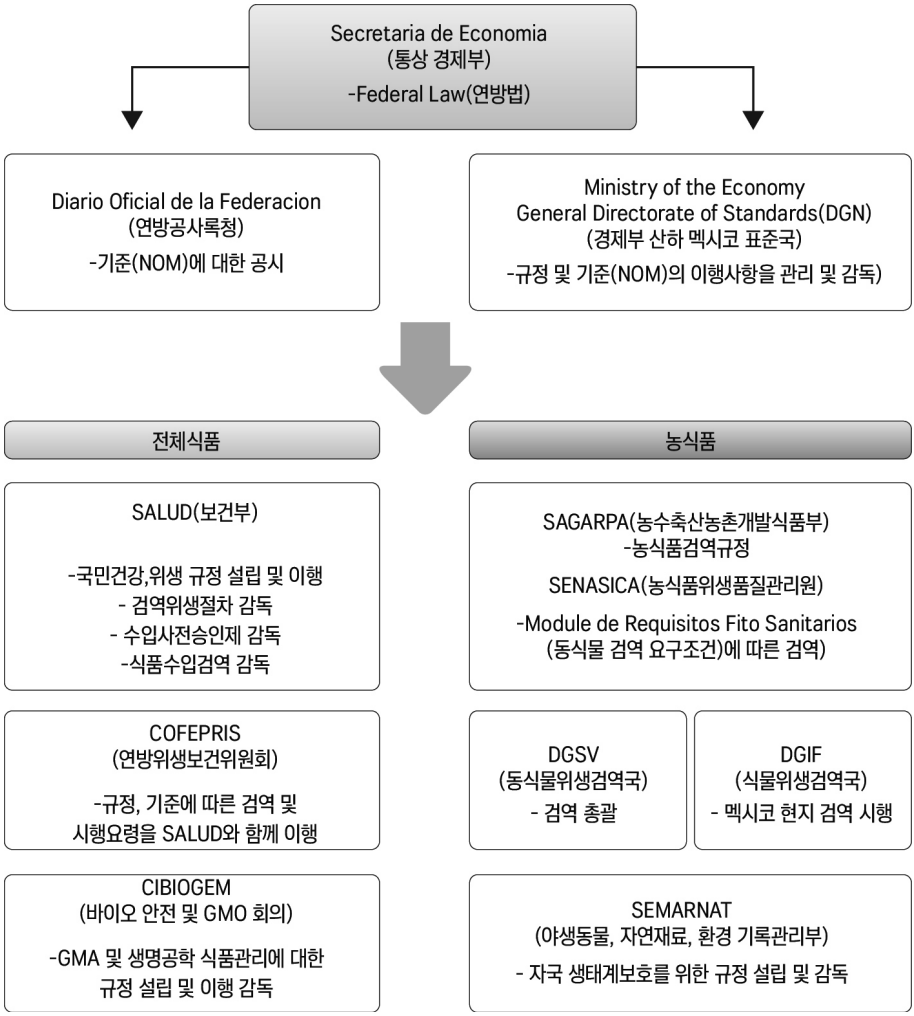

- 멕시코 연방법(Federal Law)에 근거, 연방보건위원국(Cofepris), 바이오 안전 및 GMO 회의(CIBIOGEM), 동식물위생검역국(DGSV), 식물위생검역국(DGIF) 등이 관리
- 멕시코 농수축산 농촌 개발 식품부(SAGARPA)에 등록된 국내 수출작업장과 검역시장에서 생산되고 검역된 사실을 입증하는 검역증명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발급받아 준비해야 함
- 멕시코는 모든 수입품에 멕시코 위생검역증명서(HRF : hojas de requisitos fitosanitarios)를 요구하며 해당 검역 및 위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거부됨
- 멕시코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입 검역 모듈(링크 : https://sistemasssl.senasica.gob.mx/mcrfi/)을 통해 필요조건을 확인할 수 있음

〈멕시코 검역조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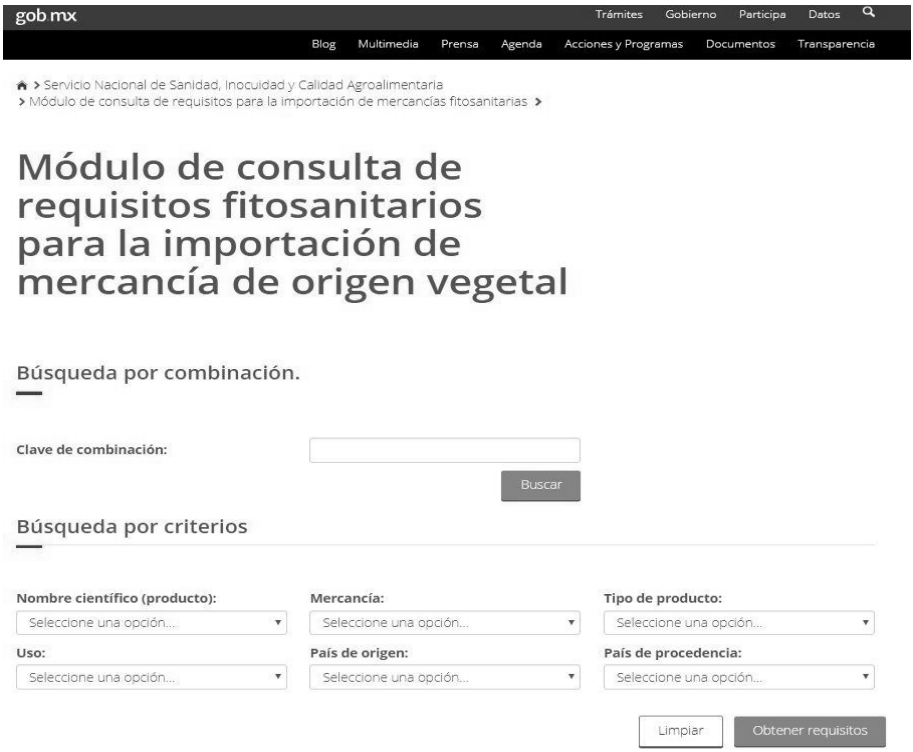

* 자료원 : 멕시코 농식품 품질 안전관리원(SENASICA)

○ 동 사이트를 이용 시 수출품의 고유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검역고유번호 입력란(Clave de combinacion)”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됨

○ 그러나 검역고유번호를 모를 경우 상품품종, 일반 상품명, 종류, 용도 등을 선택해 검역고유번호를 알아야 함

〈검역 모듈 검색 항목 설명〉

검색항목		설명
Clave de Combinacion	검역고유번호	해당 수출 건 이전에 동일한 품목으로 검역을 수행하였다면 현지 수입 관세사를 통해 상품의 분류, 사용용도 그리고 원산지 정보가 담긴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고유조건에 대한 검색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음
Nombre científico(producto)	학문기술명(상품품종)	학문적으로 기술되는 상품의 명칭 ex) 팽이버섯 : Flammulina velutipes
Mercancía	일반 상품명	HS Code에 따라 분류되는 상품의 명칭
Tipo de producto	물품의 종류	분류되는 해당 물품의 종류 ex) 신선농식품 : Fresco(Fresh)
Uso	물품의 사용용도, 기능	물품의 사용용도를 기입함 ex) Consumo-소비용(consume), Simente-종자용(seed)
País de origen	원산지	Certificate of Origin상의 원산지 국가를 기입
País de procedencia	원산지 내륙지역명	Certificate of Origin상의 구체적인 내륙지역명을 기입

○ 동 모듈을 사용할 경우 검역고유번호나 학문 기술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항목들을 모두 채워 넣었다면 다음과 같은 분류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설명(Detalle)를 누르면 통관 및 검역 요건 확인이 가능함

〈검역조건 검색법〉

* 자료원 : 멕시코 농식품 품질 안전관리원(SENASICA)

- ㅇ 상세설명을 클릭한 경우 검역조건 및 수입통관 및 검역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 정보가 나옴
- ㅇ 아래는 아르헨티나산 배를 내륙 소비용으로 수입 시 검역조건을 검색한 것.

〈아르헨티나산 배 검역조건과 수입통관 및 검역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

Requisitos a cumplir por el importador

#	Requisito	Ver tratamiento
	Medidas fitosanitarias	
1	Certificado Fitosanitario emitido por la autoridad fitosanitaria	
2	Inspección fitosanitaria en el punto de entrada al país	
3	El Certificado Fitosanitario deberá especificar alguna de las siguientes declaraciones adicionales: 1) Con base en el tratamiento en frío y la inspección, las frutas de este embarque están libres de plagas cuarentenarias y cumplen con los requisitos señalados en el Plan de Trabajo, este producto es originario de (provincia de origen) ó 2) "Las peras de este embarque, fueron inspeccionadas y encontradas libres de plagas cuarentenarias, de acuerdo al Plan de Trabajo bajo un enfoque de sistemas acordado entre DGSV y SENASA".	
4	Los vegetales sus productos y subproductos de importación deberan venir libres de suelo	

Puntos de entrada

Aeropuerto Internacional de Guadalajara, Jal.
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d. de Méx.
Altamira, Tamps.
Lázaro Cárdenas, Mich.
Manzanillo, Col.
Matamoros, Tamps.
Tampico, Tamps.
Tuxpan, Ver.
Veracruz, Ver.

○ 검역조건(Requisitos a cumplir por el importador)

1.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함
2. 식물위생 검역증명서가 필요함
3. 식물위생 검역증명서에는 1) 검역 과정에서 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사 과정과 증명 내용 2) 동식물위생검역국(DGSV)과 농림축산검역본부(SENASICA)의 검역절차에 따라 해충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동 수입 과일과 그 부산물은 흙이 제거된 상태로 수입되어져야 함

○ 수입통관 및 검역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Puntos de entrada)은 과달라하라 국제공항, 알타미라 항구, 만사니요 항구 등

나. 법률체계

○ 멕시코에 들어오는 식품의 기준은 멕시코 표준국(DGN : Dirección General de Normas)에 의해 규정됨

○ 멕시코에 식품과 음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가공식품, 음료는 추가 절차가 필요함

○ 신선육이나 냉장, 냉동된 육류제품수입은 멕시코 수축산농촌개발식품부(SAGARPA)의 사전승인이 모든 가공식품은 멕시코 보건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특정 어류나 살아있는 가축, 소고기 제품, 거북이 알, 특정 종자 등의 수입이 금지됨

○ 식품에 첨가된 첨가물을 허용하는 상세기준은 CICOPLAFEST에서 발간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배포하는 공식 병원균 카탈로그(catalogo oficial de plaguicidas)에 명시되어 있음

○ 멕시코 원산지 표시 기준: 멕시코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한 원자재 비율을 각각 협상, WTO 원산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

○ 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연방법(Ley Federal sobre Metrología y Normalización)은 제품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품검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동 법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는 표준국(DGN-Dirección General de Normas)을 설치, 상품검사 제도로 멕시코공식표준(NOM-Normas Oficiales Mexicanas)을 운영

○ 멕시코와 수출 품목에 대한 검역타결이 완료되면 해당 품목의 수출입검역요령에 대한 행정규칙이 설립됨

○ 법령 안에 멕시코가 검역의 원산지 국가 시행을 위임할 인증기관을 선정하여 공시하게 되며 실제 수입통관 시 해당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시하여야만 통관이 유효

○ 멕시코 위생검역 증명은 농수축산 농촌개발 식품부 산하 농식품 품질안전관리원(SENASICA)에서 관리

2. 품목별 검역절차

가. 농산물

○ 2018년 8월 기준 멕시코와 검역타결이 완료되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식물 및 과일종자 배가 유일하며 이외 감자, 참외, 오이, 수박, 메론, 토마토, 딸기, 고추, 가지, 참다래, 포도, 자두, 복숭아, 대추, 사과, 감, 감귤 등 한국의 주요 농산물은 수출이 불가능함

〈농산물 검역 및 위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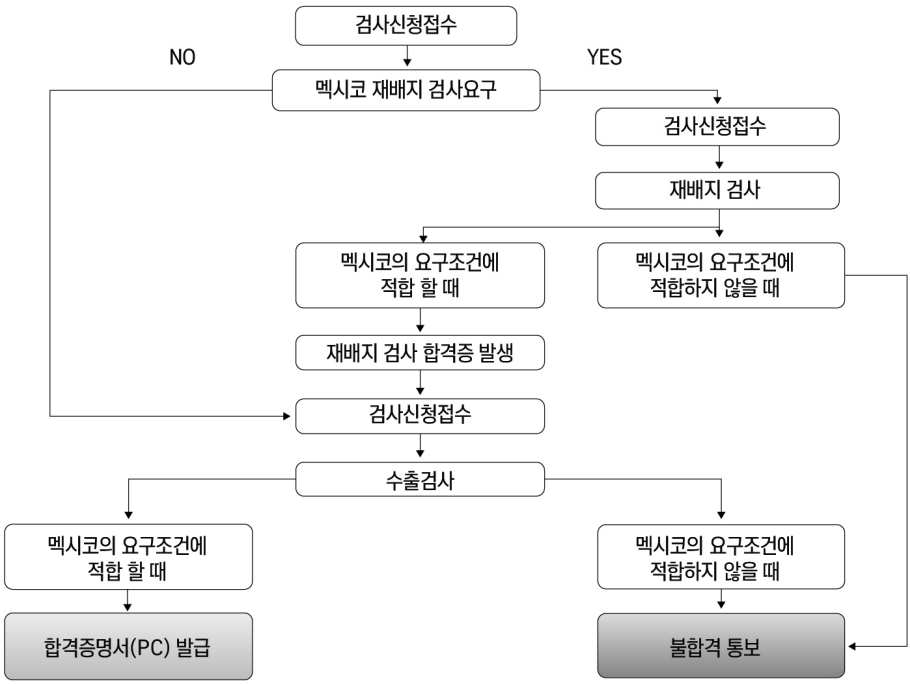

* 자료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검역관이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멕시코 측이 지정한 검역병해충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지검역을 재배기간 중 매년 실시한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 또한 포장상자에 해당 배 생과실에 관한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함

〈포장상자 표기 내용〉

○ Species :
○ Variety :
○ Orchard unique numeric code no. :
○ Packinghouse unique numeric code no. :
○ packing date :

"To Mexico"

〈국문 번역〉
○ 종 :
○ 품종 :
○ 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
○ 수출선과장 고유등록번호 :
○ 포장일자 :

"멕시코 수출용"

* 자료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나. 축산물

○ 검역신청은 관할지역 지역본부에 수출검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역신청서를 제출

○ 축산물 수출 시 제일 먼저 도축검사를 실시해야 함

○ 도축검사 시 검역관이 검역시장에 출장하여 가축에 대한 생체,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축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도축검사신청서를 현장에 파견된 검역관에게 제출

〈축산물 수출검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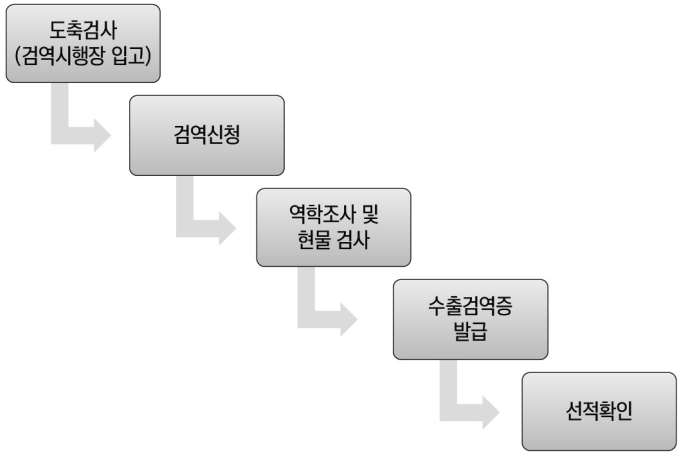

* 자료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다. 수산물

〈수산물 수출검역절차〉

○ 멕시코 내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신청을 해야 함

○ 수산 생물 검역관이 지정 검역물 및 지정 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함

○ 수산 생물 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일정한 검역대상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라. 가공식품

○ 가공식품의 경우 NOM[2] 규정을 확인하고 기준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제품에 부착할 경우 NOM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3]

○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공산품처럼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평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엄격한 안전 및 규격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 또한 대부분의 포장가공식품이 'NOM-051-SCFI/SSA1-2010'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집에 따라 라벨링 작업을 해 검역을 완료한 것으로 판정

○ 라벨링 규정이 애매하여 추가로 NOM 검증을 받아야 할 경우 멕시코 표준국(DGN)으로 NOM 검증 신청을 하거나 DGN으로부터 인증검사를 위임받은 인증기관에 '라벨링 검증(VERIFICACIÓN)'을 신청하고 수출 상품의 샘플을 통해서 NOM에 따르는 라벨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멕시코 위생검역증명서

○ 농식품품질안전관리원(SENASICA)에서 발급하며, 수입 식물 위생관리를 위해 해당 품목이 멕시코 정부에서 요청하는 검역 및 위생 요구조건을 충족했는지를 증명하는 증서

나. 수출식물검역증명서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하며 해당 식물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 방역관에게 검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

2) Norma Oficial Mexicana의 약자로 멕시코 표준규격인증제도. 멕시코 내 유통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규격, 안전성, 시험평가 방법, 라벨링, 포장 등을 규정

3) NOM 규정을 미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이 되어 유통된 경우 물품의 압수 및 벌금 부과

〈수출식물검역증명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12.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수출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f_____ No:_____
TO: The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_____

화물정보 DESCRIPTION OF CONSIGNMENT

수출자 성명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_____
수하인 성명 및 주소 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_____
포장종류 및 개수 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_____
식별마크 Distinguishing marks: _____
수출국 Country of export: _____
원산지 Place of origin: _____
운송수단 Declared means of conveyance:_____
도착항 Declared point of entry: _____
품목 및 수량 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_____

학명 Botanical name of plants:_____

위의 식물, 식물성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 및/또는 시험되었고, 수입 체약당사국이 명기한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규제 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요건들을 포함한 수입체약당사국의 현행 식물위생 요건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lants, plant products or other regulated articles described herein have been inspected and/or tested according to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the quarantine pests, including the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nd to conform with the current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부기사항 ADDITIONAL DECLARATION

소독사항 DISINFESTATION AND/OR DISINFECTION TREATMENT

소독일시 Date:_____ 소독방법 Treatment:_____
약제명 Chemical(active ingredient):_____ 기간 및 온도 Duration and temperature:_____
약제농도 Concentration:_____ 부기사항 Additional information:_____

발급기관 Place of issue:_____
식물검역관 Name of authorized officer:_____
발급일자 Date:_____(서명, Signature) _____

※ No financi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is certificate shall attach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r to any of its officers or representatives.(이 증명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소속 검역관 또는 대표자에게 어떠한 재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자료원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멕시코 공산품 안전기준 NOM-050-SCFI/SSA1-2010 규정에 따라 멕시코 내 유통하는 모든 제품은 라벨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라벨링은 생산된 수출국의 라벨을 붙여도 상관은 없으나 스페인어로 작성된 라벨이 그 위를 덮도록 부착해야 하며 부착된 라벨은 최종 소비가 이루어질 때가지 탈착되지 않을 강도로 부착되어야 함

○ 두 라벨을 함께 구별하여 넣을 경우 스페인어 라벨의 글자 크기를 수출국의 것과 같거나 크게 기입해야 함

○ 만약 상품 라벨링이 규정을 충족했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NOM 인증기관을 통해 NOM 라벨링 검증을 받을 수 있음

① 정식 수입 전 샘플을 멕시코 현지로 발송하기 위해 멕시코 경제부기준관리처(DGN)나 대표적인 공인시험분석기관인 NYCE나 ANCE를 통해 견본수입 허가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견본수입이 허가되도록 함

② 견본수입이 허가되면 공인 또는 민간 NOM 공인인증발급기관에 NOM 라벨링 검증을 신청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NOM 라벨링 검증 구비서류〉

신청분류	라벨링 검증
적용대상품목	공산품 및 농식품
신청구비서류	1) 라벨링 검증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verificacion de informacion comercial) 2) 라벨링 검증 신청 계약서(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verifi cacion de etiquetado) 3) 회사정관(ACTA Constitutiva) 4) 연방 납세자 등록증(Cedula de RFC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참고사항	만약 수출업체의 대리자가 신청 시 위임장(Carta Poder)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검증이 완료되면 인증발급기관으로부터 검증서를 받을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은 NOM 라벨링 규정을 충족했음을 입증

○ 농식품의 경우 NOM 공인 검증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NOM 인증마크나 NOM을 이행했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착할 의무는 없음

○ 단, 검증서를 기반으로 한 NOM 이행 문구를 추가할 경우, 세관마다 라벨링 충족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검증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구 분	필수 / 선택	샘 플 사 진
1) 수출입업체의 정보	필수	
2) 수입업체의 납세번호	필수	
3) 제조업체 정보	필수	
4) 가공 및 포장일자	필수	
5) 로트(생산) 번호	필수(단, 개별 낱개 포장인 경우 모든 포장에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나 개별판매를 위한 라벨이 부착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문구를 표기해야함)	
6) 유효기간	필수(단, 식초, 식용소금, 고체 설탕, 향증진 및 색소가 첨가된 설탕, 츄잉껌에는 기한을 표기할 필요가 없음)	
7) 원산지	필수	
8) 상품의 상업용 이름	선택	
9) 원재료 목록	필수(단, 개인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해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신선식품처럼 라벨이 기입된 포장 안의 원재료가 하나이며 부가적인 영양적 특성을 가미하지 않았을 경우 라벨의 원재료 표기를 제외할 수 있음)	
10) 영양정보	필수(단, 포장된 상품의 재료가 하나일 경우, 허브, 향신료 또는 그들의 화합물인 경우, 커피 추출물, 커피빈, 카페인이 없는 커피인 경우, 허브 추출 팩, 카페인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은 차, 추가적인 재료를 포함하지 않는 인스턴트 용해제품 및 재료의 경우 영양정보 표시에서 제외)	

나. 용어정의

- IDR : 일일 권장 섭취량
- IDS : 일일 필요 섭취량
- kj : 킬로 줄(joule)
- kcal : 킬로칼로리

- VNR : 영양성분표
- Contenido Energetico : 에너지 함량
- Proteinas : 단백질량
- Grasas : 지방
- Grasas saturada : 포화지방
- Carbohidrato : 탄수화물
- Azucares : 당
- Sodio : 나트륨량
- Fibra DieEtica : 식이섬유
- Calcio : 칼슘
- Hierro : 철

다. 표기방식

- 포장된 제품과 비알코올 음료는 그 명칭, 상품명, 법적인 이름, 책임자의 회계 장부상 주소 및 정보가 표기되어야 함. 표기의 제한은 없지만 주소를 기입할 때 거리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그리고 행정구역명(구, 동, 읍, 면)은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수출품의 가공 완료일자와 포장일자를 기입해야 함. 포장의 경우 최초 포장이 진행된 후에 그 포장은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이전에 개봉되거나 시각적인 수정을 거칠 수 없음
- 유통기한과 권장소비기한의 표기는 아래와 같음

〈유통기한과 권장소비기한의 표기〉

구분	유통기한	권장소비기한(판매기한)
정의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기 전에 저장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기한이 지난 후에는 소비될 수 없음.	정해진 저장조건 안에서 보관 될 수 있는 (판매기한으로서 기한이 지난 후에도) 품질은 떨어질 수 있으나 소비될 수 있음.
표기규정	3달 이하의 유통기한 - 월, 일자까지 표기 3달 초과의 유통기한 - 년도, 월까지 표기	
스페인어 표기법	Fecha de caducidad(날짜) Caducidad(날짜), Fecha Cad(날짜) * 그 외 가능 표기법 CAD, Cad, cad, Fecha de Expiracion, Expira, Exp, exp, Fecha de Vencimiento, Vencimiento	Consumir preferentemente antes del(날짜) Cons.Pref. antes de(날짜) Cons Pref(날짜)

라. 유의사항

○ 상품명과 액면가 표기 시 특정한 기준이 없다면 상품의 주요 원재료의 특성을 기준으로 함. 상품의 특성에 영향을 끼친 가공 및 처리를 진행했다면 규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가공의 명칭을 라벨에 기입해야 함

- 단, 유전적으로 변형된 상품에 대한 명칭은 별도 규정을 따를 수도 있음

○ 개인소비자에 판매되기 위해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신선식품처럼 라벨이 기입된 포장 안의 원재료가 하나이며 부가적인 영양적 특성을 가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라벨의 원재료 표기를 제외할 수 있음

○ 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5%를 넘을 경우에는 그 재료의 구성성분을 '원재료 량/총량'으로 표기해야 하며 해당 재료는 비타민, 무기질, 칼슘증진제와 같은 첨가제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도 포함

○ 물이 요리에 쓰이는 등의 용도를 위해 포장된 상품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도 원재료로 표기하지만 쉽게 증발하거나 포장 전 제조과정에서 증발한 제품수분의 양은 원재료에 표기하지 않음

○ 원재료 수치 표기는 최종 상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의 제조, 유통 또는 보관과정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함

○ 가감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표기가 라벨에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함유량을 표시해야 함

○ 과민성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은 유전학적인 명칭을 표기해야 함

〈과민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및 원재료 표기 항목〉

1) 글루텐을 포함한 시리얼 종류
   ex) 보리, 밀, 호밀, 귀리, 소맥분, 글루텐 포함 곡물 잡종 종자 및 그 부산물
2) 바닷가재, 새우와 같은 갑각류
3) 달걀 및 그 제품
4) 생선 및 그 제품
5) 견과류 및 그 제품
6) 콩 및 그 제품(콩 식용유와 같이 대두로 만든 기림은 제외)
7) 우유 및 낙농품(단 포도당인 lactose가 들어간 것)
8) 잣과 같은 나무에서 취득하는 견과류와 그 파생물
9) kg당 10mg이 넘는 아황산이 들어간 제품

3. 라벨링 샘플

- 멕시코는 최근 가공식품의 라벨에서 영양 정보와 각종 첨가물의 표시에 대한 방법을 개정했음
- 기존의 표 형태에서 그래픽 형태의 라벨링을 붙이도록 개정되면서 국내 가공식품 수출업체가 유의해서 확인해야 함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Grasa Saurada	포화지방 함유량 표시, Cal, kcal로 표기, 표기방식은 %	
Otras Grasas	기타 지방 함유량 표시, Cal, kcal로 표기, 표기방식은 %	
Azucares Totales	당분 함유량 표시, Cal, kcal로 표기, 표기방식은 %	
Energia	에너지 함량 표시, Cal, kcal로 표기	
Sodio	나트륨 함유량 표시, mg, g로 표기, 표기방식은 %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Ⅳ

EU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관세제도
제5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25

제2장 통관제도 126

1. 통관절차 126
2. 관리・법률체계 128
3. 통관 수속 130
4. 화물의 통관 131
5. 원산지 규정 133
6. 구비서류 134
7. 품목별 통관제도 136
8. 통관 시 유의사항 150

제3장 검역제도 155

1. 검역제도 일반 155
2. 품목별 검역제도 161

제4장 관세제도 166

1. 관세제도 일반 166
2. 농산물의 관세제도 167

제5장 라벨링 제도 169

1. 라벨링 제도 일반 169
2. 법률규정 및 최근 동향 178

STEP #1 적하목록 사전제출	관할 세관
▼	
STEP #2 물품 반입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STEP #3 수입신고	통관 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
▼	
STEP #4 수입 신고서 처리	관할 세관
▼	
STEP #5.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관할 세관

* 출처 :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

제 2 장 통관제도

1.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수출절차	유의사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운송인이 관할 세관에 제출하는 정보 - 화물 상세 정보(물품명,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인적 정보(AEO 인증 여부 포함) -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 - 기한 내 적하목록 미제출(1회 이상) - 적하목록 허위 제출(3회 이상)
물품반입	EU 지역 수입 물품의 통관 前 반입 장소(보세구역) - 세관 지정 세관 사무소 -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자유지역(Free Zone) - 상기 장소에서의 물품 반출, 검사 및 샘플 채취 등은 세관 허가 대상 수입물품 도착 보고 - 다음 해당자는 보세구역 반입 즉시 도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수입 물품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절차 이행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 · 도착 보고 생략 대상 물품: 우편물, 여행용품, 기타 상업적 가치가 낮은 물품 등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
수입신고	수입신고서(SAD :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신고의 방식 - 세관의 통관 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 -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
수입신고 처리 (Acceptance of a declaration)	세관은 일부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아래 사항을 추가요구 - 기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 검증 및 추가 자료 제출 - 수입 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납세 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

* 출처 :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

나. ENS(Entry Summary Declaration) 전송

- 2011년 1월 1일부터 유럽 EU Manifest 사전 신고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선사는 유럽의 첫 기항지 항구 세관에 ENS(Entry Summary Declaration)를 전송해야 함. 적용대상 화물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화물, 유럽을 통해 환적 되는 화물, 환적을 목적으로 유럽에서 재취급(re-loaded)되는 화물, FROB(Freight Remaining on Board) 화물 등임
- ‘ENS’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시간은 운송 수단별로 각기 다름. 해상 운송(단거리 제외)의 경우 선적 전 24시간, 벌크화물(단거리 제외)의 경우 유럽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단거리 해상 화물의 경우 EU영역 최초 항구 도착 2시간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함. 항공운송의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은 출발 전,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은 도착 4시간 전에 신고해야 함. 육상운송의 경우 유럽의 첫 번째 도착지에 이르기 1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함
- ENS 데이터 제출 의무자는 항공사나 선사(Carriers)이며, 포워더 등은 항공사나 선사의 동의를 거쳐 간략 ENS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음. 의무 기재사항은 수출입 업체 정보,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ross Weight), HS CODE, 위험품목 코드(위험품목일 경우) 등이며, 유럽 공동 세관등록번호(EORI : Economic Operators’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가 있음. 물품명세 기재 시 ‘일반 화물’, ‘전자제품’ 등과 같은 모호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되며 정확한 용도에 맞는 의미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함

다. 도착 통보

- 화물의 도착과 함께 운송인 혹은 대리인이 첫 번째 세관의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함. 도착 통보는 사전 적하 목록 제출제도(ENS)에 따라 제출한 목록과 화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이는 안전과 위험요인을 제어하기 위함으로 세관에서 사전 적하 목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함.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금지 조치가 가능함. 도착 통지는 유럽의 회원국에 의해 구현되며, 법안은 세관이 속한 국가의 시스템을 따름

라. 수입신고

- 신고 대상은 비역내산 물품(=비공동체 물품 : Non-community goods)로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물품임.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 신고인이며, 수입신고서(SAD :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신고 방식을 따름

- 신고 방식에는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과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이 있음.

○ 제출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요건 구비 증명자료 등임. 제출 시기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 신고인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세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이후에 제출을 허용함

마. 통관 서류 심사 / 물품검사(통관심사)

○ 유럽 통관 시 필요한 필요 서류는 Tax Authority 등록인증서 사본 1부, 세관 관세평가서, 관세, 세관수수료, 부가세 영수증, 세관 신고신청서,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신고신청서는 통관신고인이 작성하고 서명 및 봉인은 수입업자가 하여야 함

○ 세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육안으로 검사를 실시함. 이때,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함. 세관당국은 검사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는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이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물품선별검사를 실시함. 별도의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역내 운송 허가를 통지함

바. 화물 반출

○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세관에서 관세 영수증과 B/L원본을 수입업체에 건네줌. 통관심사와 관세납부를 마친 제품은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며, 수입업자의 공장 혹은 창고로 이동하게 됨. 유럽은 28개국 유럽국가로 구성된 단일 시장으로 역내 국가 간 관세가 철폐되어 있으며 역외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에는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음

2. 관리・법률체계

가. 대(對) EU 기본 수출・입 관련 법

○ 가입된 유럽연합은 각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출・입 법규를 통일하여 동일한 통관 및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6년 6월 23일자로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고 2017년 3월 29일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개시되면서 향후 영국에 대한 통관 및 관세 제도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 국가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물건(서비스 포함)은 회원국간 관세 장벽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EU에서 공표한 수출입 법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

○ 한편 유럽연합은 가격 담합 및 덤핑 및 시장 독점 등과 같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금지하고 있음

○ EU 27개 회원국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나. EORI 번호(EU 인증 수출자번호)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는 수출입 업자의 세관등록 번호를 의미함

○ EORI는 2009년 7월 1일에 EU 전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EORI 번호는 EU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번호임

○ 관세납부를 위해 1개 회원국에 등록한 수출입업자는 EU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EORI 번호를 취득할 수 있음

○ EU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수출입업자는 통관, 수입화물정보(ENS)나 수출화물정보(EXS)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EORI 번호를 받게 됨

다. 상품 분류 변경 사항

○ 2017년 10월 12일 EU 집행위는 규정 2017/1925를 통해 아래와 같이 상품 분류를 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상세내용

- 신규 CN / TARIC 코드

분류 (CN code/TARIC code)	상품 명세
1006	쌀
1006 20	현미
	-- 반숙한
1006 20 11	--- 둥근 낟알
1006 20 13	--- 중간 낟알
	--- 긴 낟알
1006 20 15	---- 길이 및 폭이 2에서 3 정도 크기
1006 20 17	---- 길이 및 폭이 3 이상 크기
	----- 아로마틱 쌀
	------ 바스마티 쌀
1006 20 17 13	------- 바스마티 370, 바스마티 386(인도), 바스마티 217(인도), Type-3 (인도 데라둔), 타라오리 바스마티 (HBC-19 인도), 란비르 바스마티(인도), 커넬 바스마티(파키스탄), 푸사 바스마티, 수퍼 바스마티

3. 통관수속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Packing List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를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통관 의뢰
- 통관 의뢰를 맡은 운송회사 또는 통관 전담 회사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해당 관세를 납부 후에 통관이 완료됨
- 네덜란드로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 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5일, 육로나 항공운송 수입품은 2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통관에는 대체로 2~3일 소요되며 통관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음
  출항 → 입항 → 하선(보세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납부

4. 화물의 통관

가. 수입신고서의 종류

-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1)]
-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이 양식을 사용함

나. 온라인 통관제도

-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제3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위해 온라인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온라인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 세관이 제공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직접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온라인 통관 신청 가능

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E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 제3국에서의 수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 안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가 거래되었을 때도 적용됨
-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가 국가에 제공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국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세금과도 관계가 있음
-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를 넘어야하며, 1개 또는 2개의 감면부가가치세율(단 5%는 넘어야 함)을 각국이 지정할 수 있음
-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18.01)▐

(단위 : %)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9
체코	21	10 / 15

1) 제3국(유럽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한 후 제3국에 운송하는 경우 등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덴마크	25	
독일	19	7
에스토니아	20	9
그리스	24	6 / 13
스페인	21	10
프랑스	20	5.5 / 10
크로아티아	25	5 / 13
아일랜드	23	9 / 13.5
이탈리아	22	5 / 10
사이프러스	19	5 / 9
라트비아	21	12
리투아니아	21	5 / 9
룩셈부르크	17	8
헝가리	27	5 / 18
몰타	18	5 / 7
네덜란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 13
폴란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루마니아	19	5 / 9
슬로베니아	22	9.5
슬로바키아	20	10
핀란드	24	10 / 14
스웨덴	25	6 / 12
영국	20	5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5. 원산지 규정

가. 개요

○ 한-EU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임

○ 특히 한-EU FTA의 경우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재료 조달방식이나 해외가공 공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인증수출자

○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28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신고가 가능함

○ 수출 당시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EU 수입통관 시점 2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특혜 관세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 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임

○ 통상 완전 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구분함

○ 또한 위와 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됨

1) 완전생산기준

○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 산업품이 주로 해당됨

▌완전 생산 기준▐

구 분	내 용
광물성 생산품	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
식물성 생산품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산 동물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 당사국 영역에서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한 상품 – 당사국 영역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한 어로로 획득한 상품과 배타적으로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2) **실질변형기준**

○ 세번 변경기준

- 세번 변경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HS Code의 관리가 중요함,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거나 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그 증빙을 구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부가가치 기준

-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및 MC법의 유형이 있음

○ 가공공정기준

- 역내에서 협정이 정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섬유제품 등에 적용됨. 가공공정 기준은 실제로 그 공정을 거쳐 생산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시설 목록 및 생산일지 등이 요구됨

6. 구비서류

가. 수입통관 필요 서류

○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가 구비되어야 함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식품의 관세분류번호(TARIC CODE = HS CODE /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운송회사 혹은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등은 전담 업체에서 준비함

○ 수입 통관신고는 수입금액이 만유로가 넘는 경우 필수이며 DV1 서류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통관 시 제출해야 함

○ 커미션이나 저작권료가 있는 상품의 경우, 인보이스 상에 그 금액을 포함하여 함께 계산되어야 하며, 만유로 이하 또는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제외되기도 함

나. 수입 금액별(6,000유로 기준) 서류작성

1) 6,000유로 이하인 경우

○ 판매가가 6,000유로 이하인 경우 협정 세율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이 추가된 FTA 인보이스가 필요함

○ 원산지 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customs authorization none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EXPORTER SIGNATURE AND NAME
- (1) 해당 국가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칸으로 남겨둠
- (2) 원산지 입력

2) 6,000유로 이상인 경우

○ 수출국가에서 인증한 수출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출자 관리번호와 함께 위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

7. 품목별 통관제도

가. 일반 포장제품

1) 통관 구비서류

- ㅇ 선하증권(B/L), 인보이스(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ㅇ 경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준비해야 함
- ㅇ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2) 물품검사

- ㅇ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
- ㅇ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함
- ㅇ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는 통관절차 때 지불
- ㅇ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함

3) 통관 시 적용되는 기준

❑ 상품분류 번호

- ㅇ EU 28개 회원국은 모두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됨
- ㅇ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함
- ㅇ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함

❑ 원산지 규정

- ㅇ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함
- ㅇ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임

❑ **관세부과액**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 개발비 등)들도 있음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됨

나. 건강식품

1) EU, 건강식품과 관련된 광고문구 규제화

○ EU는 '12년 12월부터 건강식품과 관련 식품 라벨이나 광고, 홍보물에 집행위가 승인한 카피문구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식품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12년 5월 16일 EU 집행위는 건강식품의 라벨과 광고 선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카피문구(222개)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리스트에 없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함
- EU가 건강식품 관련법(1924/2006)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건강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피문구 리스트(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함
-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첫째, 2008년에 유럽 식품청(European Food Authority)이 각 회원국에서 접수한 카피문구가 4만4000개나 돼, 이를 일차적으로 추린 후 4600개의 합당성을 심층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다가 둘째, EU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의 토론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임
- 식품업체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222개의 카피문구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음

2) 포지티브 리스트 카피문구 내용[2)]

○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나 물질이 인체 성장발육과 발달, 일정한 인체기관의 기능에 작용하는 역할

2) 포지티브 리스트와 관련 카피문구와 사용조건 : http://ec.europa.eu/nuhclaims 참고

○ 심리적 또는 행동 심리적면에서의 기능
○ 체중조절 기능, 배고픔을 약화시키는 기능, 포만감 강화 또는 섭취 열량 감소 기능과 관련된 기능 등
○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예
- 칼슘은 뼈 건강 유지에 필요함
-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 콜레스테롤의 정상수준 유지에 좋음
- 소금섭취를 줄이면 정상적 혈압 유지에 좋음
- 식물스테롤(plant sterols)과 식물스타놀(plant stanols)는 콜레스테롤의 정상수준 유지에 좋음(이 두 식물은 마가린과 요구르트에 사용됨)
- 호두는 혈관의 신축성 향상에 도움이 됨
- 오메가3 알파 리노레닉산은 혈액의 정상적 콜레스테롤 수준 유지에 도움이 됨
- 비타민 D는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됨
- 비타민 C는 정상적 신경 기능에 도움이 됨

❑ 포지티브 리스트 카피문구 예

○ 영양(nutrition)관련 대표적인 허용 단어는 아래와 같음

주요 허용단어	설 명
Low Energy	40kcal(170KJ)/100g 이하의 일반식품 20kcal(80KJ)/100ml 이하의 음료(액체) 식품 4kcal(17KJ)/1인분(6g,대략 한 티스푼) 이하의 감미료
Energy-reduced	최소 30%의 열량을 줄인 식품으로 열량 저하 방식 표기 요
Energy-free	4kcal(170KJ)/100g 이하의 식품 0.4kcal(1.7KJ)/1인분(6g,대략 한 티스푼) 이하의 감미료
Low fat	3g/100g 이하의 지방 함유(일반식품) 1.5g/100ml 이하의 지방 함유(음료/ 액체 식품)
Fat-Free	0.5g/100g 또는 100ml 이하 지방 함유 식품으로 'X% fat-free'의 표기는 금지
Low Saturated fat	1.5g/100g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일반식품) 0.75g/100ml 이하의 포화지방 함유(음료/ 액체 식품) 포화지방산 및 트랜스지방산 총량은 총열량의 10%를 초과해선 안 됨
Saturated fat-Free	0.1g/100g 또는 100ml 이하의 포화지방(트랜스 지방) 함유 식품
Low Sugars	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주요 허용단어	설 명
Sugars-Free	0.5g/100g 또는 100ml 이하의 설탕 함유 식품
With no added sugar	단당류나 이당류 및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식품으로 당 성분을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을 경우 'Contains naturally occurring sugars' 표기
Low Sodium/Salt	0.12g/100g 또는 100ml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Very low sodium/salt	0.04g/100g 또는 100ml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Sodium-Free or Salt-Free	0.005g/100g 이하의 나트륨(소금) 함유 식품
No Added Sodium/Salt	나트륨(소금)이 식품에 첨가되지 않은 0.12g/100g 또는 100ml 이하의 나트륨(소금)과 상응하는 염 함유 식품
Source of fibre	최소 3g/100g 또는 1.5g/100kcal의 섬유질 포함 식품
High fibre	최소 6g/100g 또는 3g/100kcal의 섬유질 포함 식품
Source of protein	제품 열량 중 최소 12% 이상이 단백질 유래인 식품
High protein	제품 열량 중 최소 20% 이상이 단백질 유래인 식품
그 외	Source of XXX, High XXX, Contains XXX, Increased XXX, Reduced XXX => Regulation (EC) 1925/2006의 제6조에 표시된 양에 따라 영양소의 이름을 뒤에 넣어 사용가능(예 : High of Vitamin, Name of Mineral/s)

3) 건강식품과 관련된 카피문구 규제

○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 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 사용은 금지됨

○ 금지된 카피문구의 예

- 그린티(녹차)는 정상 혈압유지를 도와줌
  (Green tea helps maintain normal blood pressure)
- 로얄 젤리는 면역성 원기향상에 좋음
  (Royal jelly benefits the immune and/or vitality).
- 비타민과 미네랄과 혼합된 타우린(활력음료수에 함유)은 정신건강에 좋음
  (Taurine, when combined with vitamins and minerals, boosts mental performance)
- 글루코사민은 관절 건강에 좋음
  (Glucosamine helps maintain joints)

4)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서 제출

- 업체는 해당 판매시장 회원국 당국(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벨기에 식품안전 검사기관 AFSCA)에 집행위 허가 법인(EC No353/2008)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학적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회원국 당국은 2주 내로 EU식품청에 신청 건을 통보
- EU식품청은 이를 여타 회원국과 집행위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
- 집행위는 EU식품청의 의견을 조회한 후 특히 중소기업에는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평가서류 준비와 관련 조언과 기술적 방법을 제시함

○ 유럽식품청은 유효한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개월 내로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함

○ 신청서 제출집행위는 유럽식품청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집행위 결정 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채택되면 즉시 신청자에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발표함(기존 포지티브 리스트에 승인받은 리스트 추가)

○ 유럽식품청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집행위는 이를 신청자에 통보함

○ 신청서 형식

1장 행정 및 기술 자료

1.1. 목차

1.2. 신청서

1.3. 기본 정보

1.4. 제출된 건강 정보 상세 내역

1.5. 신청서 요약

1.6. 참고 문헌

2장 식품 및 구성성분 특징

2.1. 식품 구성성분

2.2. 식품 및 식품 분류

2.3. 참고 문헌

3장 관련 과학 자료 총괄 요약

3.1. 모든 확인된 과학 자료 정리표

3.2.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정리표

3.3.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요약
3.4. 비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요약
3.5. 결론
4장 확인된 과학 자료군
4.1. 관련된 과학 자료 확인
4.2. 확인된 자료
5장 부록
5.1. 용어 및 축약어 해설
5.2. 발행된 관련 자료 복사본
5.3. 비 발행된 관련자료 학술 보고서
5.4. 기타

5) 시사점

○ 건강식품, 어린이용 식품과 같이 카피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제품에 관해서 법규를 어기고 판매될 시 판매 금지 및 수거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라벨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기농(Organic) 식품

- 2014년 7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은 양자간 유기농 식품 동등성 협의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 2월 1일부로 한국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서로도 EU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협정을 발표함[3)]
- 가공 식품 중 95% 이상의 유기농 재료가 쓰인 것들에 한해서 유럽연합으로 수출될 수 있는 유기농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

가공처리 된(processed) 식품 예	비가공처리(unprocessed) 식품 예
– 다양한 혼합 식품(견과류, 말린 과일, 냉동 야채) – 치즈, 절인고기, 소시지, 베이컨 – 아기용 음식, 영아용조제분유 – 저온 살균한 제품(우유, 과일주스) – 커피, 차 – 꿀, 초콜릿, 와인, 맥주	– 신선 과일 및 야채 – (다른 채소류와 혼합되지 않은)냉동 콩류 – (다른 과일류와 혼합되지 않은)말린 망고

3) EU 2015/131 of 23 January 2015

- EU에 수입되는 한국산 유기농 제품에는 한국 또는 EU의 유기농 인증 마크가 라벨(또는 패키징)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원산지, 제조사 이름, 연락처, 포장지 회사 정보, 유기농 인증서 발급 기관명 그리고 인증서 번호가 라벨에 기입되어야 함

EU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부착된 식품	로고 상세
	 – EU 유기농 인증 마크 및 인증번호 기입 – 제3국가(Non EU product)에서 생산되었음을 언급

다. 동물성 가공식품

❑ '17년 EU 수입제도 변경 내용

○ 2017년 1월 수입분부터 유지방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품목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4)]

○ [변경 요약] 수의검사 제외 품목 변경내역

- 육류 추출물, 육즙 : 수의검사 제외에서 폐지
- 유지방, 계란 : 전체 20% 미만 포함일 경우만 가능

○ 규정 변경으로 가공육 포함 복합식품은 정식 수의검사 통관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성 재료 원산지와 복합식품 제조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EU 혹은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 한다는 일반조건이 있어 육류추출물 포함제품의 정식통관 가능여부 및 방법은 추가 조사를 통해 추후 공유예정

4) 관련 규정 : 「EU Commission Decision 2016/1196」 동물성 성분 포함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통관 가능 여부와 검사증 필요유무에 대한 규정

▌수의검사 제외규정 변경내용 원문▐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빵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초콜릿 과자류(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가공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참고 1]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 변경사항(영국 Port Health 공문)

새롭게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이 새로운 수입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변경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됨 변경내용 및 수입조건을 확인하여 비용과 손실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
유럽연합결정 Commission Decision 2007/275(이하 결정 'Decision')는 국경검사소(Border Inspection Post)에서 수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결정(Decision) Annex II에 나와 있는 식품 목록을 제외한 모든 육류 및 육류제품은 수의학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임
최근 Annex II는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으로 대체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에 적용될 예정임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는가?
전체 변경 내용: http://ahvla.defra.gov.uk/documents/bip/ovs-notes/2016-20.pdf
다음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품들임

◆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 및 이를 함유하는 제품(예 : 면류 및 육수류)
-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육류 분말은 육류 제품에 포함될 것임
- 이는 특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혹은 육류 분말을 함유하고 있는 인스턴트 면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면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형태(복합식품)와 별도의 포장을 동봉하고 있는 형태(복합식품 혹은 육류제품) 모두 해당됨
- 해당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육류제품 혹은 복합식품 증명서 및 수입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필요조치 : 변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현재 수입되는 면류, 육수 및 육류 분말 중 육류제품 및 복합식품 수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음

◆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 충전이 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젤라틴이 동물성일 경우)은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임
- 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젤라틴 수입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승인된 제3국가의 승인된 젤라틴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함
  - 요구된 표기사항에 맞게 표기를 해야 함
  - 수입 시 젤라틴에 대한 보건 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동봉되어야 함
  - 기타 수입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경고사항 : 현재 중국에는 승인된 젤라틴 업체가 없음으로, 중국은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사람이 섭취할 목적의 동물성 성분 젤라틴 캡슐 수입이 불가능할 것임
- 필요조치 : 아래 유럽연합 홈페이지에서 승인된 업체 목록 확인
  (http://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 충전된 젤라틴 캡슐
- 충전된 젤라틴은 동물성 가공제품(예 : 어류 기름 캡슐은 어류 제품으로 분류) 혹은 함유성분에 따라 복합식품으로 평가함
- 수입하고자 하는 충전된 젤라틴 캡슐의 젤라틴이 EU 승인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 동식물 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연락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 필요조치 : 아래 동식물 건강국 국제무역센터(APHA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에 연락처 정보 확인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1835/contacts- international-trade.pdf

◆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유기 화합물은 처음으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될 것임. 특히 크레아틴(creatine), 시스테인(cysteine), 시스틴(cystine)이 언급됨
- 필요조치
  · 본 결정 'Decision' 제 29장에 명시된 요구조건 세부사항 확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D1196&from=EN#page=12
  · 기타 규제품목에 대한 수입조건 확인은 동식물건강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문의. 적은 양(총 20% 미만)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의학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반면 제품에 함유된 동물성 성분은 EU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및 유사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매용 식품 보충제
-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성분(캡슐의 동물성 성분 포함) 총량이 20% 이상일 경우, 수의학적 검사 대상임. 해당제품은 유럽연합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6/759에 명시되어 있는 고(高)정제 제품 보건 증명서(the health certificate for highly-refined products)를 동봉해야 함
- 필요조치 : 고정제 제품 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참조
  http://www.porthealth.eu/import-process-highly-refined-products

◆ 알코올성 음료
- 달걀, 크림 등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음료는 복합식품일 가능성이 높음. 복합식품의 수입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함
- 수의학적 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을 함량하고 있는 달걀 및 유제품도 달걀 및 유제품 성분에 대한 잔류량 지침 승인을 받은 국가의 생산품이어야 함

Annex II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품목 목록 변경사항
아래는 기존과 개정된 Annex II의 비교표임. 개정본의 CN코드별 제품 구분과 수의학 검사 면제 대상 범위 확인 필요
** 즉. 완전히 조리되었거나 혹은 성분 전체가 열처리되어 모든 원재료가 변성된 제품
Decision 2007/275/EC의 Article 6(1)(a)(i) 참조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비스킷 빵 케이크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CN 코드	설명
초콜릿 과자류(사탕류 포함)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1902 19, 1902 30, 1902 40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가공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육류 추출물, 육류 농축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참고 2]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이란?

식물재료와 결합된 동물성 가공농산품을 함유하는 인체 섭취용 식품을 일컬어 복합식품이라 한다.
복합식품은 아래 과정을 통해서 제조될 수 있다.
・미리 가공된 육류에 식물재료를 결합한다(예를 들면, 비프 샌드위치); 또는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동안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다(예를 들면, 조리된 새우 스프링롤)

동물성 원재료를 함유하고 있거나 인체 섭취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식품은 복합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경고 - 식물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육가공품과 복합식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육가공품은 식물재료를 함유하고 있다 - 동물성 가공식품은 식물재료를 함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식물재료가 동물성 식품의 제조과정의 일부로 요구되거나 이러한 동물성 식품에 어떤 특성을 부여할 경우 복합식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는 농후제로 작용하거나 장식용이나 토핑으로 제공되는 설탕이나 풍미의 가미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물성 기름이나 토마토소스의 참치는 가공 수산물로 간주되지만 복합식품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기름이나 토마토소스는 참치 통조림 제조공정의 일부(가공하기 전에 캔에 액체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음)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특히, 맛과 점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이용 가능한 추가 지침이 있고 아래에서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가공 육제품은 복합식품과는 수입요건이 다르다.

복합식품이 수의검역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일반적으로 동물성 재료를 함유하는 모든 식품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수의검역으로 보호된다. 복합식품은 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제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이 결정의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 수의검역에서 면제된다(위원회 결정 2007/275의 부록 II를 클릭하면 Europa 웹사이트가 열린다).

주(註) - 냉동 복합식품
최종 복합식품은 분명히 육제품과 식물재료의 결합 후 동물성 성분을 변화(물리적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조리되었거나 열처리된 것이다.
저온살균과 같은 가벼운 열처리는 동물성 성분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동물성 내용물의 성질이 변했는지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간과 중심온도 추이에 따른 조리과정을 보여주는 생산자 도면과 같은 증거가 요구된다.

면제 복합식품 – 제6조
복합식품이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면 수의검역에서 면제된다:
1. 어떠한 육제품 조각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전체 동물성 내용물이 중량으로 50% 미만이다.
3. 생산품이 주위온도에서 저장 안정성을 나타내거나 냉동 시 제조과정에서 재료 전체를 완전히 익히거나 열처리했기 때문에 미가공 제품의 성질이 변했다.
4. 복합식품이 인체 섭취용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5. 복합식품이 깨끗한 용기에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밀폐 처리되었다.
6. 복합식품이 상업문서를 수반하고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상업문서와 표시가 복합식품과 그 성분의 성질, 수량, 포장 수, 원산지 및 제조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록 II에 수록된 면제 제품
수의검역 면제 제품은 아래와 같다.
- 비스킷
- 빵
- 케이크 - 카스텔라, 과일케익 등(아래 '주' 참조)
- 초콜릿
- 과자(사탕 포함)
- 소량의 육제품을 함유하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 포장된 식품보충제 및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또는 키토산을 포함하는 식품보충제(캡슐형 순수 어유는 면제되지 않음)

- 어육으로 채워진 올리브
- 육제품과 혼합하지 않았거나 육제품으로 채우지 않은 파스타와 국수
- 고기 추출물, 고기 농축물, 동물성 지방, 또는 어류 오일이나 분말이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최종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국 건더기와 향료

* 주 : 케이크를 구운 후 축산물(예를 들면, 크림)이 첨가되면 최종제품은 더 이상 수의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스킷, 빵, 케이크, 과자 등이 수의검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굽는 과정이 동물이나 공중보건 위험요소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구운 후 축산물이 첨가되면 복합식품은 수의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유제품을 함유하는 복합식품

유제품을 함유하는 생산물은 조항 6(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은 유제품이 승인된 제3자로부터 공급되고 명시된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 규정 (EU) 605/2010(발표 당시 최신 통합버전으로 연결되는 링크)에는 현행 목록이 들어 있다.

수의검역 대상이 아닌 복합식품의 수입

당기관에서는 탁송물이 수의검역 대상인지 결정하기 위해 수입식품을 검사한다. 이에 따라 송장 사본, 포장목록 및 선하증권 사본이 요구된다. 해당 복합식품이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는지(따라서 수의검역에서 제외되는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비율과 원산지를 포함해서 각 동물성 재료의 상세정보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의 첨가 및 뒤이은 열처리 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합식품(이상적으로는 공정흐름도 형식) 제조과정의 세부정보(특히, 상세한 적용시간과 온도 및 달성된 중심온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수출업자나 제조업자가 제공해야 하고 해당 탁송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수의검역 대상이 아닌 복합식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동물성 재료는 EU 회원국이나 EU에 동물성 생산물 자체를 공급하도록 승인을 받은 비회원국의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각 동물성 재료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관련 제3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동물성 재료의 승인된 잔류농약 계획을 수립한 EU 비회원국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동물성 재료는 EU 승인 시설의 것이어야 한다. 승인된 잔류농약 관리 계획을 수립한 국가 목록은 위원회 시행결정 2015/1338[PDF]에 수록되어 있다.

수의검역 밖의 복합식품의 경우, 재료의 원천과 관련된 요건을 점검하는 일은 국내 지방당국의 책임이다.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의 수입요건

규정 28/2012의 요건이 적용되는 수의검역 대상 복합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위생 증명서

복합식품이 아래 요소를 함유할 경우 Regulation 468/2012에 규정된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 가공육
- 가공 유제품(냉동을 요함)
- 저장이 안정적일 경우 50% 이상의 유제품
- 50% 이상의 가공 수산물
- 50% 이상의 가공 난제품

이 식품이 50% 이상의 기타 축산물(예를 들면, 젤라틴, 꿀, 콜라겐)을 함유할 경우, 순 제품에 적용되는 EU 위생증명서가 요구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가공 육제품 내용물은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승인된 잔류농약 관리 계획이 있는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 한다는 일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성분

규정 28/2012에 의하면 동물성 재료는 복합식품을 제조한 국가와 동일한 국가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이 낮은 동물위생위험 국가가 다른 저위험 제3국이나 EU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해서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존재한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저위험국은 EU를 포함한 다른 저위험국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저위험국은 고위험국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 고위험국은 다른 나라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은 사용할 수 없고 EU의 육제품이나 유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육제품 함유와 관련해서 복합식품 원산지 국가가 EU에 처리 A(위원회 결정 2007/777 부록 II 파트 2 참조. 처리 A는 저위험국을 의미함)를 거친 육제품만 수출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복합식품은 처리 A를 거친 육제품만 EU에 수출하도록 승인된 다른 국가나 EU에서 공급된 육류로 제조할 수 있다(처리 A의 의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2007/777 부록 II 파트 4 참조).
- 유제품 함유와 관련해서 복합식품의 원산지 국가가 EU에 유제품을 수출하도록 승인되었고 위원회 규정 605/2010의 칼럼 A(날것)나 칼럼 B(저온살균)에 속하는 경우, 이러한 복합식품은 같은 칼럼의 다른 국가나 EU의 유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복합식품 제조국이 칼럼 C에만 속할 경우, 이러한 유제품 함유물은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동일 국가나 EU에서 들여온 것이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들여올 수 없다. 예를 들면, 태국(규정 605/2010의 칼럼 C에만 속함)에서 공급되고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이 칼럼 A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분유로 제조되었다면 수입이 불가능하나 EU산 분유로 제조되었다면 수입이 가능하다.

[참고 3] FAQ

우유분말과 식물성 기름으로 제조되는 아이스크림 과자를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품은 복합식품입니까? 그리고 이 제품은 수의검역 대상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복합식품에 해당하므로 수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복합식품은 냉동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검역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최종 복합식품은 요리되었거나 우유분말의 성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열처리를 거쳤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과자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혼합물의 저온살균은 동물성 성분의 성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수의검역을 받는 복합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육류파이(조리된 육류 함유)
- 통조림 참치 샐러드(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채소를 곁들인 참치 함유)
- 닭고기 카레(소스에 채소와 조리된 닭고기의 결합)
- 50% 이상 조리된 새우를 함유한 새우 스프링롤
- 비조리 저온살균 치즈를 함유하는 피자(냉동과 조리되지 않은 최종 생산품을 요함)
- 저온살균 크림층이 있는 과자(냉동과 비조리 크림 가미 최종 생산품을 요함)

수의검역을 받지 않는 복합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 50% 미만의 치즈와 비육류를 함유하는 완전 조리 피자
- 50% 미만의 새우를 함유하는 완전 조리 새우 스프링롤
- 50% 미만의 저온살균 계란을 함유하는 마요네즈

복합식품이 아니면서 식물재료 함유 육가공품인 식물재료를 함유하는 식품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 미가공 육류를 함유하는 비조리 육류파이(날고기이므로 복합식품이 아님)
- 빵가루를 묻힌 생새우(새우가 날것이기 때문에 복합식품이 아님)
- 견과류를 가미한 꿀(꿀이 날것이기 때문에 복합식품이 아님)

- 기름에 담근 참치 통조림(제조에 필수적인 식물재료)
- 칠리 마리네이드에 담근 조리된 참치 살코기(마리네이드로 참치에 풍미와 질감 등의 특성 가미)
- 조리된 빵가루 묻힌 새우(빵가루로 새우에 특성 부여; 새우 비율과는 관계없이 적용)
- 연육/게맛살(때때로 소량의 식물재료를 첨가함으로써 어육에 특성을 부여함)
- 빵가루를 묻힌 조리된 해덕(빵가루를 묻힘으로써 어육에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 반죽 치킨 너겟(반죽으로 치킨에 풍미와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 포도당이나 소량의 양파가 함유된 다진 쇠고기(포도당/양파로 다진 쇠고기에 특성을 부여함)
- 딸기 요구르트(딸기로 요구르트에 풍미, 질감 등과 같은 특성을 부여함)
- 과일 고명이 있는 우유 디저트(과일 고명으로 우유 디저트에 향미, 질감 등과 같은 특성을 가미함)
- 반죽된 조리 치즈(예를 들면, '파니르 파퍼')(반죽으로 치즈에 질감 등의 특성을 부여함; 치즈 비율과는 관계없이 적용)
- 어육 함유율이 10%이고 기타 재료로 설탕과 물을 사용한 생선 소스. 이러한 제품은 수산물이다(이러한 제품을 복합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관련 식물재료가 없음). 수산물로 수의검역을 받는다. 50% 규칙은 복합식품에만 적용된다.
- 물과 2% 탈지분유 및 설탕을 함유하는 야쿠르트와 같은 요구르트 음료. 이러한 제품은 유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을 복합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관련 식물재료도 없다.
- 인도산 굴랍자문, 라스굴라 및 기타 유사 통조림 제품. 이러한 제품은 캔의 시럽과 코티지 치즈볼 5%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관련 식물재료가 없는 유제품이므로 인도에서 수입할 수 없다.

8. 통관 시 유의사항

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표기 강화

○ EU는 인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표기(Labelling) 법규를 적용

○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기해야 함

○ 성분 대부분은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포장 라벨에 기록돼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표기돼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고 및 리콜조치 적용

알레르기 항원 표기 예 1.	알레르기 항원 표기 예 2.

나. EU 등 전 세계적으로 Allergen 관련 식품 규제 강화 예정

- ○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모든 공급업체에 제품 성분 표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임
- ○ 한국기업이 유럽 식품시장 진출 확대 위해서는 정확한 Allergen 표기 필수
- ○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한국 식품의 Allergen 성분 미표기로 인한 해당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 및 리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
  - Allergen 성분 미표기로 인한 경고 및 리콜 조치와 라벨링재제작은 해당 제조・유통기업에 비용과 시간적으로 손해이며, 이미지 하락과 Allergen 성분 미표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됨
- ○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 Allergen 성분 미표기는 고의적이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와 Allergen 성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발생
  - 일례로 고추장은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콩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매우 생소한 정보임
- ○ 유럽에서는 Allergen 성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더욱 넓게 퍼져 있고 규제도 더욱 까다로운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함

다. 통관부서 연락처

국가명	웹사이트 & 문서	국가명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https://www.bmgf.gv.at/home/Schwerpunkte/Tiergesundheit/Veterinaerwesen_Handel/Grenztieraerztlicher_Dienst/Liste_der_oesterreichischen_Grenzkontrollstellen	이탈리아	http://www.salute.gov.it/portale/ministro/p4_5_3_2_2.jsp?lingua=italiano&label=ufficiPerifericiid=80&menu=ufficiPerifericidir=pif&p=sedi&catUff=PIF
벨기에	https://ec.europa.eu/food/animals/vet-border-control/bip-contacts_en 문서참조(이하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리투아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불가리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룩셈부르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사이프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라트비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체 코	http://eagri.cz/public/web/en/svs/portal/bip-in-the-czech-republic/	몰 타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독 일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네덜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덴마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폴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에스토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포르투갈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그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루마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페인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웨덴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핀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베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프랑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바키아	http://www.svps.sk/zakladne_info/his.asp
헝가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영 국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아일랜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위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노르웨이	https://www.mattilsynet.no/language/english/		

라. 농식품 對 EU 수입 거절 시 대응요령

- ㅇ 신속한 대응 필요
- ㅇ 수입품에 대한 농식품 검역을 규정하는 EU규정 882/2004 제5장(Chapter 5)의 54항 [Article 54-(3)]은 회원국이 기업에게 항소절차와 기한 등을 안내할 의무를 명시함
- ㅇ 회원국 단위세관, 검역당국 등이 EU규정에 명시된 절차(샘플링, 테스팅 법, 항소절차 안내여부)를 따랐는지도 요청해야 함
- ㅇ EU의 유해물질 발견 시 조치
- ㅇ 아플라톡신 등 일부물질은 집행위 규정 669/2009에 견과류 내 요주의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견과류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 시 아플라톡신 검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음
- ㅇ EU의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플라톡신 관련 중국, 가나, 인도 등 다수 적하물이 수출자에게 재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ㅇ 따라서 관련 수입품은 특별한 주의가 요청됨

※ 참고자료

❑ 웹사이트

- ㅇ EU 제13조 조항 원문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2006R1924:20080304:EN:PDF
- ㅇ 유럽연합 수입제도 규정
  http://ec.europa.eu/trade/import-and-export-rules/import-into-eu/
- ㅇ 유럽연합 통관제도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home_en
- ㅇ 유럽연합 수출입 절차 및 정책 http://ec.europa.eu/trade/
- ㅇ 유럽연합 유기농 제품 관련 공식 웹사이트
  https://ec.europa.eu/agriculture/organic/index_en
- ㅇ 한-EU 오가닉 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eu-rules-on-trade/non-eu-trading-partners/countries/korea_en.htm
-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 국가별 부가가치세율 관련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eu-country-specific-information-vat_en

❑ **관련 책자**

○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통한 입법화방안을 중심으로(저자 : 한상필)

○ 주간 EU 동향(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missiontoeu.mofa.go.kr/korean/eu/missiontoeu/eu/news/index.jsp

○ EU 정책 브리핑 3차 개정판, 2016 /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제 3 장 검역제도

1. 검역제도 일반

가. 개요

- ㅇ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식품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됨
- ㅇ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및 수시 감독함
- ㅇ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함

나. 농식품 검역

- ㅇ 산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 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의 경우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다. 화훼류 검역

- ㅇ Directive 2000/29/EC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 특정 식물에 대해 병충해 방지 및 수입국에서 사전에 검역 및 안전한 식물이라는 내용을 담을 식물위생 증명서[5]를 작성하여 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ㅇ 병충해를 일으키지 않은 안전한 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물위생검역증이 면제되며 그 밖에 소량의 식물, 비판매용, 연구용(실험용), 테스트용 등으로 사용될 목적에도 면제될 수 있음
- ㅇ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품의 경우는 유럽연합 각 국가에서 이행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함.
- ㅇ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 검사, 2)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에서 발급 여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될 경우 영어 번역 첨부 등임

5) 한국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함

○ 화훼류 또는 목공품(종이제품 제외) 수입 시 포장에 쓰이는 나무 패키징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에서 아래와 같이 규제하고 있음[6)]

- 제품 겉면을 포장하는 패키징 외에도 물건과 물건 사이를 지지하는 지지대, 받침대, 팔레트 등 모두 해당됨
- 이러한 EU의 방침은 병충해와 같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무를 재료로 한 목재 박스가 유럽 회원국 도착 후 만일에 있을 해충 및 전염병 등의 방지 목적임
-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ISPM no. 15'의 절차에 따라 고온에서 소독된, 껍질을 벗겨 만든 나무 또는 'ISPM no. 15' 도장이 패키징에 찍힌 것이어야 함
- 한편 나무 상자의 두께가 6㎜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나무 상자 전체가 풀이나 합판, 판자(veneer) 등으로 가공된 것은 금지됨

ISPM15 도장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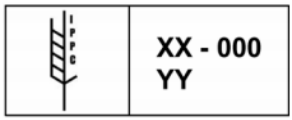	– 3가지 코드로 구성됨(국가, 생산자, 사용 처리된 방법) –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제적인 코드로 사용된 목재가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되었는지 쉽게 알려줌

라. 검역 인증서(Certificate of Inspection)

○ EU 규정 1235/2008의 19a조에 의거 2017년 10월 20일부로 EU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전자 검역 인증서 시스템 전면 도입

○ 이는 제품의 추적가능성을 높이고 위조를 방지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유기농 제품 수입 관련된 정확한 통계데이터 구축을 위함이며 웹 기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항시 접근이 가능함

○ 전자 인증 발급 번호는 TRACES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되며 제3국의 인증서 발급기관, 위원회와 EU 가입국 관할 기관, 수입업자, 최초 화물 인수인 및 EU 가입국 내 관할 책임자가 TRACES를 통해 전자 인증서를 열람할 수 있음

○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의 전자 검역 인증서는 TRACES(Trade Control & Expert System)를 통해 작성되어야 하며 현재 전자 서명이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입력된 전자 검역 인증서는 TRACES를 통해 인쇄되어 EU 영토 내에 도착하여야 함

6) 관련 법령 : Directive 2005/15/EC (FAO에서 2002년 제정한 식물위생 표준 법률 'ISPM no. 15'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부터 발효됨)

○ 전자 검역 인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7)8)]
- 발행기관(제품 검역기관)
- 검역 인증서 일련번호
- 생산자, 수출업자 및 관할 당국
- 원산국, 수출국, 허가국, 도착국
- 수입업자, 최초 화물 인수인
- 제품설명(CN 코드, 상품명, 수량, 품목 수, 중량), 컨테이너 번호, 씰 번호, 총 중량
- 운송 수단(종류, 신원, 국제 운송 서류품목)
- 인증서 발행기관, 수입업자, EU 회원국 관할 당국 및 최초 화물 인수인의 서명

마. 최근 검역 근황

1) EU,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 업데이트

○ 2018년 6월 유럽위원회에서는 EU에 수입된 채소 및 과일류에 대한 2017년과 2018년 상반기의 border check 결과(각 회원국의 세관, 검역소에서 검역, 위생 등의 문제로 수입 불허 또는 보류된 건들 결과 정리)에 대해 발표하며 위생검역 강화 대상 아이템을 추가 또는 해지함

○ 농약 과다 검출, 곰팡이 및 세균 검출 등의 문제가 반복 또는 위험 물질(원료)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위생검역 강화 대상으로 지정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 기존의 검역대상 리스트에 있었던 식품 중 해지 및 추가된 품목은 아래와 같음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해지된 품목	검역대상 리스트에서 추가된 품목 (2018년 6월 기준)
- 완두콩(케냐): 과거 농약잔류 허가량 초과 - 카이란(중국): 과거 농약잔류 허가량 초과 - 참깨(나이지리아 및 수단) : 과거 농약잔류 허가량 초과 - 참깨(인도): 과거 살모넬라 균 검출 - 구장나무 잎(인도): 살모넬라 균 검출 - 건포도(이란) : 과거 ochratoxin A 검출	- 구기자(중국) : 농약잔류 - 오크라, 고추(인도) : 농약잔류 - 순무(레바논 및 시리아) : Rhodamine B * 아래의 품목은 검역 빈도가 감소한 품목임 - 파인애플(베냉) : 농약잔류 - 레몬(터키) : 농약잔류 * 아래의 품목은 추가적인 위생증명을 요구하는 품목임 - 참깨(나이지리아, 우간다 및 수단) : 살모넬라

7) TRACES 로그인 사이트 :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login
8) 전자 검역 인증서 신청 및 발급 가이드(https://ec.europa.eu/agriculture/organic/sites/orgfarming/files/quick_re)

○ EU에서는 식품의 농약 잔류치, 식품 첨가물, 세균(해충)에 대한 검역이 엄격히 행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산 농산물 수입 시 사전에 제품별 요구하는 내용(예 : 최대 농약 허용치)을 확인해야 함

2) 아플라톡신(Aflatoxins) 검역 강화

○ 곡물의 곰팡이로 인한 독소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기후에서 발생, 독성이 있고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균임

○ 땅콩, 견과류, 옥수수, 쌀, 무화과, 각종 건조식품 및 향신료, 날채소오일, 코코아 등에서 발견되며 그 위험성을 인지하여 스리랑카산 고추 및 파프리카, 세네갈산 땅콩, 볼리비아산 땅콩, 감비아산 땅콩, 조지아산 헤이즐넛, 마다가스카르산 땅콩, 시에라리온산 수박, 수단산 땅콩, 미국산 피스타치오 등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위생검역 강화대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

○ 견과류 및 씨앗류, 곡류에서 쉽게 퍼지는 아플라톡신에 대해 한국산 식품(곡류, 건조식품 등)의 수출 시에 곰팡이 오염 등에 주의가 필요함

3) 비스페놀 A 사용 제한 강화

○ 2018년 6월 7일 유럽위원회는 식품 접촉 소재 중 비스페놀 A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2018년 9월 6일부터 적용됨

○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 운반하기 위해 허용되는 규제 제한과 식품 및 음료 캔에 사용되는 코팅 재료의 제한범위 확대. 2011년부터 0세에서 3세 영유아 식품에 코팅되거나 젖병 및 컵 제조 시 사용되는 비스페놀 A 금지사항 또한 연장함

○ Regulation(EU) No 609/2013에 명시된 유아용 조제분유, 가공 시리얼, 이유식 등과 접촉하게 되는 재료 및 소재엔 비스페놀 A 금지. 식품업자는 서면신고 시 코팅된 소재 및 품목을 갱신,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식품 코팅제 및 보관 소재로 사용되는 비스페놀 A인 하이드록시페닐프로판(CAS번호 0000080-05-07) 사용량을 0.05mg으로 제한

○ Regulation(EU) No 10/2011 부속서의 표 1에서 소재 번호 151에 관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됨

번호	소재명	제한범위	기재사항
151	비스페놀 A	0.05 mg	- 폴리카보네이트 유아 젖병 제조에 사용금지 - 어린이용 컵 또는 병 제조에 사용금지

4) 살충제 람다 사이할로트린(lambda-cyhalothrin) 규제 변경

- 2018년 7월 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EC) No 396/2005에 대한 붙임 II, III 개정을 통해 식품 내 람다 사이할로트린 최대 잔류 허용기준 변경
- 쌀, 케일 등 곡물에 대한 MRL 위험 확인, 최대 잔류 허용치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규정을 변경하도록 제안함
- 관련 규정 붙임 II에 새로운 변경기준을 규정하고 해바라기씨, 콩, 차 등에 대한 최대잔류허용치 관련 정보에 대한 추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의 18(1) (b)에 명시된 특정 한계치나 기본 MRL이 적용되어야 함
- 케일, 쌀 등을 제외한 식품 내 람다 사이할로트린 최대 잔류 허용치는 2019년 1월 26일 이전에 EU로 수입된 것에 한해 개정 전에 규정된(EC) No 396/2005를 따르기로 함
- 개정 사항

식품 코드	식품 명	최대 허용치(mg/kg)
0110000	감귤류	0.2
0120000	트리너츠(tree nuts)	0.01
0130010	사과	0.08
0130020	배	0.08
0130030	마르멜로(Quinces)	0.2
0140010	살구	0.15
0140030	체리	0.3
0140030	복숭아	0.15
0140040	자두	0.2
0151010	포도(table grapes)	0.08
0151020	와인포도	0.2
0154010	블루베리	0.2
0154020	크랜베리	0.2
0161030	올리브	1
0161060	감	0.09
0162010	키위	0.05

식품 코드	식품 명	최대 허용치(mg/kg)
0162020	리치(lychees)	0.01
0163010	아보카도	0.01
0163020	바나나	0.15
0163030	망고	0.2
0163040	파파야	0.01
0163070	구아바	0.01
0211000	감자	0.01
0213020	당근	0.04
0213080	무	0.15
0231010	토마토	0.07
0231020	후추	0.1
0231030	가지	0.3
0232010	오이	0.05
0234000	사탕옥수수	0.05
0243010	양배추	0.3
0243020	케일	0.01
0244000	콜라비	0.01
0251020	상추	0.15
0251060	루꼴라	0.7
0252010	시금치	0.6
0260010	콩	0.4
0260030	완두콩	0.2
0260050	렌틸콩	0.2
0270010	아스파라거스	0.02
0401020	땅콩	0.2
0401050	해바라기씨	0.01
0401070	대두, 콩	0.01
05000300	옥수수	0.02
0500060	쌀	0.01

5) **EU, 위생검역 관련 법규 개정**

- ㅇ 2018년 7월 3일 Regulation(EC) No 669/2009의 화물운송에 관한 규칙이 변경, 개정됨. 관련 규정 붙임 I의 식품목록을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해당조항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ㅇ 식품안전이사회는 최근 식품 사건 발생에 관해 제3국 감사, 분석 실시, 관련 규정 제15조에 의거해 2년 단위 보고서 목록을 수정함
- ㅇ 운송에 의해 유럽에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선박, 항공기에 적재되어 다른 공항이나 항구에 하역되면 입국 지점은 최종 도착지가 됨
- ㅇ 지정된 입국 지점의 당국이 규정 (EC) No 396/2005에 명시된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붙임I에 열거 된 사료 및 식품 위탁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EC) 제882/2004조 제19조 (3)항에 따라 즉시 국경 통관 거부를 통고해야 함

2. 품목별 검역제도

가. 임산물 및 화훼류

- ㅇ 유럽연합에서 '긴급히 주의가 필요한(위험)종'으로 지정한 것들은 아래와 같음
  - Anoplophora chinensis(Forster, 동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하늘소 일종) : Decision 2012/138/EC
  - Anoplophora glabripeenis(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하늘소 일종) : Decision 2015/893/EU, 위험종으로 지정
  - Aromia Bungii(Faldermann)(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벚나무 사향 하늘소) : Decision(EU) 2018/1503, 위험종으로 지정
  - Diabrotica virgifera(옥수수 근충) : Directive 2000/29
  - Dryocosmus kuriphilus Yasumatsu(밤나무 혹벌) : Decision 2006/464/EC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4/690/EU에 의해 폐지)
  - Epitrix. Epitrix spp. - Decision 2012/270/EU, as amended by Decision (EU) 2016/1359(벼룩의 일종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견)
  - Gibberella circinata(소나무 줄기바름병) : Decision 2007/433/EC
  - Pepino mosaic virus(페피노 모자이크병) : Decision 2004/200/EC
  - Phytophthora ramorum(참나무역병) : Decision 2002/757/EC(Decision (EU) 2016/ 1967 개정)

- Pinewood nematode(소나무 선충) : 남유럽(포르투갈, 이탈리아, 남프랑스)에서 나타남 : Decision 2012/535/EC
- Pomacea(Perry, 왕우렁이) : Commission Decision 2012/697/EU
-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감자갈쭉병) : Decision 2007/410/EC(Decision (EU) 2015/749에 의해 폐지)
- 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ae(참다래 궤양병) : Decision(EU) 2017/198
- Rhynchophorus ferrugineus(red palm weevil, 붉은 야자나무바구미) : Decision 2007/365/EC
- Spodoptera frugiperda(Smith)(아메리카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나방 일종)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8/638
- Xylella fastidiosa(포도피어슨병균)

○ 수입 과정 중 긴급 통제 조치를 취한 종 및 품목은 감귤 검은무늬병(Phyllosticta citricarpa, Decision(EU) 2016/715 및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7/801을 통해 개정), 이집트산 감자에 대한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Decision 2011/787/EC), 중국산 목재 포장재(Decision 2013/92/EU 및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7/728을 통해 개정), 태국산 품목에 대한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Decision 98/109/EC) 등이 있음

○ 그 외 유럽연합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럽식품안정청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종으로 소나무 줄기마름병(Gibberella circinata), 밤나무 혹벌(Dryocosmus kuriphilus)과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 과실 검은 무늬병(Phyllosticta citricarpa)이 있음

1) 소나무 줄기마름병(Gibberella circinata)

○ Directive 2007/433/EC

○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으로 Gibberella circinata는 소나무와 더글라스 전나무(Douglas firtrees)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임

○ 유럽에서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소나무 줄기마름병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오염된 씨앗, 목재로 만든 제품,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장식용 식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퍼짐

○ 이 Gibberella circinata에 감염된 나무는 느린 성장과 심각한 가지 손상이 특징임

- 이 해충의 영향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 매우 심각할 수 있음
- 패널은 나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빠르게 유럽의 다른 취약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 이 해충은 천만 헥타르가 넘은 소나무 서식지역과 숲을 황폐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충격은 막대할 수 있음
- 패널에 따르면 씨앗, 식물, 나무, 토양, 해충에 감염된 기계 등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해충이 유럽연합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2) **밤나무 혹벌**(Dryocosmus kuriphilus)

- Decision 2006/464/EC(이후 2014/690/EU 개정됨)
- 밤나무 혹벌은 아시아가 원산지이나 현재는 미국에 있는 밤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밤나무 혹벌은 가을에 나무의 싹에 알을 낳고 봄에 유충이 나뭇잎을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이를 혹선충이라고 부르며 잎의 성장을 방해함
- 이 해충은 식물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밤의 생산량을 감소시킴
- 밤나무 혹벌은 감염된 밤나무를 다른 지역에 식재하면서 확산됨
- 이 해충이 이탈리아 북부인 피드몬트(Piedmont) 지역에 유입되면서 현재는 거의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밤나무 혹벌이 발견되고 있으며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헝가리에서도 보고되고 있음
- 패널은 포르투갈 북부, 스페인 북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밤 생산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결론을 지음
- 이 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위험을 감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식품안전청은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3)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

- Decision 2015/789/EU
- 유럽연합에서는 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위험한 해충이라고 규정, 다양한 질병을 일으켜 농업에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함
-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 10월 이탈리아 남부 Apulia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주로 올리브 나무에 영향을 끼침

○ 유럽연합에서 Directive 2000/29/EC를 통해 포도피어슨병균을 매우 위험한 해충으로 지정하였고 각 회원국에도 본 해충이 유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의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함

○ 박테리아는 식물의 목질부에 거주하면서 매미나 작은 곤충들에 의해 전염되며 뿌리에서부터 나무 전체까지 퍼져 결국에는 종을 사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본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특별한 해결책은 현재 없다고 발표함

○ 이탈리아 남부 Apulia에서 처음 발견된 포도피어슨병균은 이러한 작은 벌레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 자두나무에서도 발견됨

○ 현재 유럽연합에서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이탈리아(Brindisi, Taranto 및 그 주변)로 최소 570,000 헥타르의 크기로 예상되며 올리브 나무가 주 생산원인 본 지역에 해충 감염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

4) **과실 검은무늬병(Phyllosticta citricarpa)**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8/85

○ 2018년 1월 18일 유럽 위원회는 규정 no 2016/715를 개정해 과실 검은무늬병이 제3국에서 수입되는 과실을 통하여 유럽연합국 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함

○ EU 지침서 no 2000/29/EC (2000.05.08)는 식물에 유해한 생물 예방조치 및 증식억제 관련 규정

- 본 생물이 발생시키는 과실 검은무늬병은 과일 농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 유럽연합은 해당 지침에 특정 과일류 Citrus L., Fortunella Swingle, Poncirus Raf.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시
- 유럽연합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우루과이산 특정 과실 및 쥬스로 인한 검은무늬병 확산 방지를 위해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6/715의 제3장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EU에 도입, 운반되어야 함

○ 본 규정은 유럽연합 내 영토의 식물 위생 보호 유지를 위해 필요함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7/1279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래한 특정 과실 Citrus L.의 Thaumatotibia leucotreta(Meyrick) 보호 조치에 관해 EU 지침서 no 2000/29/EC의 붙임 IV에 16.6항 도입함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EU) 2016/715는 위 조항을 적용, 개정되어야 함

○ 관련 규정 제8조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우루과이산 특정 과실의 주스 산업 공정과정 시 유럽연합 내 도입 및 이동에 관해 적용, 대체됨

나. 시사점

○ 유럽 식품안전청의 패널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을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밤나무 혹벌의 경우는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유럽으로 소나무 및 전나무, 그리고 밤나무 관련 제품 수출시 해당 해충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검역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최근 검역 근황
www.foodmanufacture.co.uk
https://ec.europa.eu/agriculture/organic/electronic-certificate_en

○ 유럽연합 임산물, 화훼류 수입 관련 웹사이트
http://ec.europa.eu/food/plant/index_en.htm
https://ec.europa.eu/food/plant/plant_health_biosecurity/legislation/emergency_measures_en

○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emergency control'이 필요한 해충 정리
http://ec.europa.eu/food/plant/plant_health_biosecurity/legislation/emergency_measures/index_en.htm

○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 관련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공식 언론 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5346_en.htm

○ 한국의 불법조업국(IUU) 해지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공식 언론 자료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fo/index_en.htm

○ 2018년 6월 기준 위생검역리스트 업데이트 정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8R0941&from=EN

○ 과실 검은무늬병 관련 법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8D0085

제 4 장 관세제도

1. 관세제도 일반

○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

○ 2014년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본 협정은(기존 27개국 외) 크로아티아를 포함 총 28국에 적용되도록 개정됨

▌상품 양허 결과▐

(단위 : 억불, %)

양허 유형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 중	對EU수입액	비 중	품목수	비 중	對한국수입액	비중
즉시(A)	9,195	81.7%	182	66.7%	9,252	94.0%	318	76.6%
2~3년(B)	625	5.5%	61	22.2%	282	2.9%	69	16.7%
5년(C)	718	6.4%	22	8.1	269	2.7%	28	6.7%
5년 내(A)+(B)+(C)	10,538	93.6%	265	97%	9,803	99.6%	415	100%
6~7년	111	1.0%	4	1.4%				
10년	399	3.5%	3	1.1%				
10년 초과	169	1.5%	1	0.5%				
양허제외/현행관세	44	0.4%	0	0.0%	39	0.4%	0	0.0%
합계	11,261	100%	273	100%	9,842	100%	415	100%

※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 자료 출처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http://www.fta.go.kr/eu/), https://news.kotra.or.kr

❑ EU 관세제도 관련

○ 2016년 7월 한-EU FTA 체결된 지 5주년이 지남으로써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모든 품목(양허제외인 특정 농산물 제외)에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됨

○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대한 대비 필요

2. 농산물의 관세제도

○ 농산물은 양측에 민감한 아이템임을 고려하여 쌀과 같은 중요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으로 예외적 취급)

※ 안전수칙(긴급수입제한조치) :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경제 및 자국 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의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관세 인상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쇠고기, 돼지고지, 사과, 맥주맥/맥아, 감자전분, 인삼, 설탕, 발효주정, 변성전분이 적용됨)

○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즉시 관세 철폐 또는 5년 내 완전 철폐로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함

- 즉시 철폐 : 음료(과거 33.6%), 간장(과거 7.7%), 면류, 김 등

▌대EU 한국 농산물 수입 시 관세 조건▐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1,896	91.8%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킷, 음료, 간장, 파스타(속을 채운 것, 기타), 위스키(기타), 식물성액즙(기타), 젤라틴, 김, 기타공예품, 기타음료, 난초 등
3년	10	0.5%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콩 등
5년	119	5.8%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잎담배 등
양허제외	39	1.9%	쌀, 쌀 관련 제품(우리 16개 세 번, EU 39개 세 번에 해당)
합계	2,064	100%	

※ 품목 수는 HS 2006 기준

* 출처 :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www.fta.go.kr)

○ EU는 품목수 기준 98.1%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완전 철폐하며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에 대해 예외적인 양허제외 또는 시장진입가격제도(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가)를 적용함

※ **참고자료**

- ㅇ 유럽연합 TRADE(한-EU FTA 개요) : http://ec.europa.eu/trade/
- ㅇ 유럽연합 FTA 정책 : http://ec.europa.eu/trade/policy/
- ㅇ 관세율 검색(EU에 수입 시) : http://madb.europa.eu/madb/euTariffs.htm
- ㅇ 출처 :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A quick reading guide’(2010)
- ㅇ EU의 무역(수출입) 보호 정책
  http://ec.europa.eu/trade/policy/accessing-markets/trade-defence/
- ㅇ 출처 :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10 key benefits for the European Union’(2011)
- ㅇ 한-EU FTA 공식 웹사이트(한국어) : http://www.fta.go.kr/eu/doc/2/

제 5 장 | 라벨링 제도

1. 라벨링 제도 일반

가. 일반사항

1)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 ㅇ EU 식품 라벨링 법 Regulation(EU) No 1169/2011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식품 정보에 대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FIC 규정, Food Information on Consumers'라고 알려져 있음
- ㅇ 이 규정은 기존에 있던 식품 라벨링 법을 개선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라벨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식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00/13/EC :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 외양, 식품의 광고 등의 내용을 담음
  - 90/496/EEC : 영양정보에 대한 라벨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음
  - 위 2개의 법 내용을 포함, 그 외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ㅇ 2014년 12월 13일 개정된 식품 라벨링법 No 1169/2011의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에 대한 정보도 라벨링에 기입해야 함
- ㅇ 2017년 7월 13일 유럽 집행위는 알레르기 유발 제품 및 물질 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 소비자, 업체 및 국가 당국이 새로운 규정 요구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2)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적용 일정

- ㅇ 2011년 12월 12일 : Regulation(EU) No 1169/2011 발효
- ㅇ 2014년 01월 01일 : 다진 육류의 특정 필수 표기사항 적용 시작(부속조항 VI의 B 부분)
- ㅇ 2014년 12월 13일 :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적용
- ㅇ 2016년 12월 13일 :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 적용 시작
  - 2014년 1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3일 사이에는 새로운 영양정보 라벨링 실시는 업체의 자발성에 따름

3)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주요 내용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는 반드시 쉽게 읽을 수 있게 표기(최소한의 글자 폰트는 지킬 것)
- 알레르기 유발 요소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기입(레스토랑 등에 납품되는 비포장된 음식에도 해당)
- 기본 영양정보 기입
- 신선 육류(돼지, 양, 염소, 가금류)에 대한 원산지
-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원거리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원료 내에 함유된 조작된 나노 물질 리스트
- 정제된 오일 또는 지방에 사용된 채소류의 원산지
- 다양한 종류의 고기(생선)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formed meat’ 또는 ‘formed fish’라는 문구를 넣을 것
- 해동되어 판매되는 식품 내역

나. 라벨링 표기 및 변경사항

1) 의무 기재사항

- 제품명
- 제품성분 리스트
- 알레르기 항원인자
-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 함유량
- 제품의 실 중량(net weight)
- 유효기간(최소한의 기간 또는 사용가능날짜)
- 보관 방법
- 회사명 및 주소
- 원산지
- 사용법
- 알코올 도수가 1.2%를 초과하는 경우 알코올 강도
- 영양정보

○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라벨링 요구

식품 분류	표기
1. 공기 충전 포장 식품	
1.1. 규정 1333/2008이 허가한 공기 충전으로 식품 보존기간이 증가한 경우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
2. 감미료 함유 식품	
2.1. 규정 1333/2008이 허가한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식품명에 'with sweetener(s)' 표기
2.2. 규정 1333/2008이 허가한 설탕과 감미료를 동시에 함유한 식품	식품명에 'with sugar(s) and sweetener(s)'
2.3. 규정 1333/2008이 허가한 아스파탐 혹은 아스파탐-아세설팜 소금을 함유한 식품	'contains aspartame(a source of phenylalanine)'을 E번호 형태로 원료에 표기 혹은 'contains a source of phenylalanine'의 형태로 원료에 표기
2.4. 규정 1333/200/이 허가한 폴리올 함량이 10%가 넘어가는 식품	excessive consumption may produce laxative effects
3.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유 식품	
3.1. 리쿼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을 100mg/kg 혹은 10mg/l 이상 함유하는 과자류나 음료류	원료 리스트에 'contains liquorice' 표기 혹은 원료 리스트에 없을 경우 식품명에 표기
3.2. 리쿼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을 4g/kg 이상 함유하는 과자류	원료 리스트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혹은 원료 리스트에 없을 경우 식품명에 표기
3.3. 리쿼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이나 암모늄염을 50mg/l, 300mg/l 이상 혹은 알코올성의 경우 1.2% 이상을 함유하는 음료류	원료 리스트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혹은 원료 리스트에 없을 경우 식품명에 표기
4. 고카페인 음료 및 카페인 첨가 식품	
4.1. 커피, 차, 혹은 커피나 차 추출물이 첨가된 식품으로 식품명에 표기가 된 경우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음료 -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경우 - 농축 혹은 건조 형태의 경우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경우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을 100ml당 mg 함유량에 따라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표기

식품 분류	표기
4.2. 생리학적 목적으로 카페인이 첨가된 식품(음료 제외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을 mg 당 100g/ml 함유량에 따라 식품명이 보이는 곳에 표기 식품 보충제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 라벨 부분에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을 기재
5.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피토스타놀 및 피토스타놀에스테로 함유 식품	
5.1.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피토스타놀 및 피토스타놀에스테로 함유 식품	1) 'with added plant sterols' or 'with added plant stanols' 문구를 식품명이 보이는 곳에 표기 2)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피토스타놀 및 피토스타놀에스테르 함량을 % 혹은 g 형식으로 원료 리스트에 기재 3) 'the food is intended exclusively for people who want to lower their blood cholesterol level' 문구 표기 4) 'patients on cholesterol lowering medication should only consume the product under medical supervision' 문구 표기 5) 임산부나 수유중인 산모 및 5세 미만 유아에게 영양학적으로 부적합함을 의미하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 6) 식품의 섭취는 캐로틴 흡수를 위하여 과일 및 채소류 섭취 등 균형잡힌 식단과 병행되어야 함을 명시 7) 하루에 3g 이상 섭취를 피해야 함을 명시 8) 1회 섭취분에 함유된 식물스테롤 및 식물스타놀 양을 명시
6. 냉동 육류, 육가공품 및 수산물	
6.1. 냉동 육류, 육가공품 및 수산물	냉동 일자 혹은 수차례 냉동 된 경우 첫 냉동 일자 표기
7. 착색료가 들어간 식품	
Sunset yellow (E 110)	착색료명이나 번호를 표기 : 부작용이나 어린이 주의사항에 명시
Quinoline yellow (E 104)	
Carmoisine (E 122)	
Allura red (E 129)	
Tartrazine (E 102)	
Ponceau 4R (E 124)	

*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III)[9], 아일랜드 식품안전청(www.fsai.ie)

9) Food_Information_pre-packed_foods.pdf,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169/2018-01-01

2) 주요 변경사항

○ 의무 기재사항 중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이중 원산지의 육류 제품의 원산지 내용만 변경됨

3) 식품 원산지에 관한 새로운 라벨링 채택

○ 유럽위원회는 2018년 5월 28일 식품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함. EU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

○ 식품 정보에 관한 규정(FIC)에 따라 식품의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국산 토마토가 주요 성분인 이탈리아 토마토소스’ 등)

○ 식품업체의 다양한 식품 가공 방법을 고려해 책정.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원산지 표기 사항

- 돼지, 양, 염소 등 육류 및 가금류의 원산지 표시: 고기 양육 및 도살 장소에 대한 표시는 Regulation(EU) No 1337/2013 채택
- 식품 재료로 사용된 육류 원산지 표시 : 식품 주성분으로 사용된 육류의 원산지 표기 필수
- 육류 외 식품 원산지 표시 : 식품의 50% 이상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 또는 발생지 표기 필수

다. 표시방법 유의점

1) 알레르기 항원인자

○ 아래 표에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 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성분 리스트에 포함해야 함

○ 또한 보다 명확하게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알레르기 항원인자를 강조할 때는 ‘Contains’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인자 성분을 표기해야 함

○ 구체적 표기 방식은 제품성분 리스트 규정에 따름

1.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카뭇트 또는 이들의 합성종 및 제품.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밀을 기본으로 한 덱스트로스를 포함한 포도당 시럽 - 밀을 기본으로 한 말토덱스트린 - 보리를 기본으로 한 포도당 시럽 -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곡물
2. 갑각류와 해당 제품들
3. 계란과 해당 제품들
4. 어류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비타민 또는 카로테노이드을 위한 보인자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 맥주와 와인에 청징제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또는 부레풀
5. 땅콩과 해당 제품들
6. 대두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완전히 정제된 대두유와 지방 - 대두에서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혼합된 토코페롤(E306), D-알파 토코페롤, D-알파 토코페롤 초산염, D-알파 토코페롤 숙신산 - 대두에서 유래한 식물스테롤과 식물스테롤 에스테르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 대두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스테롤로 제조된 스타놀에스테르
7. 우유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농산물의 에틸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유장 - 락티톨
8. 견과류 : 아몬드(Amygdalus communis L.), 헤이즐넛(Corylus avellana), 호두(Juglans regia), 캐슈(Anacardium occidentale), 피칸 넛(Carya illinoinensis(Wangenh.) K. Koch), 브라질넛(Bertholletia excelsa), 피스타치오 넛(Pistacia vera), 마카다미아 또는 퀸즐랜드 넛(Macadamia ternifolia)과 해당 제품들
9. 샐러리와 해당 제품들
10. 겨자와 해당 제품들
11. 참깨와 해당 제품들
12.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상태의 총 SO2 량을 기준으로 아황산과 황화의 농도가 10㎎/㎏ 또는 10㎎/L인 경우
13. 루핀과 해당 제품들
14. 연체동물과 해당 제품들

*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II)

2)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의 함유량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성분 또는 성분의 카테고리의 함유량을 기재해야 함
- 제품 이름에 성분 이름이 나타나 있을 때
- 제품 라벨에 언어, 그림 또는 그래픽으로 성분을 강조했을 때
- 성분의 이름 또는 생김새 때문에 다른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을 특징화하여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때
- 단, 'with sweetener(s)' 또는 'with sugar(s)'라는 문구로 커버할 수 있는 경우, 첨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정보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함유량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가
  - 수분 제외 실 중량을 이미 기재했을 때
  - 다른 유럽연합 조항에 따라 라벨링에 이미 함유량이 표기되었을 때
  - 향미 목적으로 극소량을 사용했을 때
  - 제품의 이름에 이미 나타나 있을 때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별 함유량은 아래와 같이 표기함
- 제품 사용 시점에서 각 성분의 양에 부합하는 %로 표기
- 제품 이름의 바로 옆 또는 제품성분 리스트와 이어 표기
- 제품이 열처리 또는 다른 처리 후에 수분이 손실될 경우, 완제품에 가장 가까운 상태의 성분별 함유량으로 표기
- 휘발성 성분의 양은 완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표기
- 농축 또는 건조에 사용된 성분으로 제조 과정에서 재합성된 성분의 양은 농축 또는 건조되기 이전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되는 농축 또는 건조 제품의 경우, 성분의 양은 재구성된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3) 영양정보

○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영양정보
- 열량
-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의 양

○ 의무 영양정보 외에 보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양정보
- 불포화지방

- 다불포화지방
- 폴리올
- 전분
- 식이섬유
- 비타민 또는 미네랄: 상당량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유량에 대한 영양정보 기재 시 참고 할 성인기준 1일 비타민 및 미네랄 권장 섭취량

Vitamin A(㎍)	800	Chloride(㎎)	800
Vitamin D(㎍)	5	Calcium(㎎)	800
Vitamin E(㎎)	12	Phosphorus(㎎)	700
Vitamin K(㎍)	75	Magnesium(㎎)	375
Vitamin C(㎎)	80	Iron(㎎)	14
Thiamin(㎎)	1.1	Zinc(㎎)	10
Riboflavin(㎎)	1.4	Copper(㎎)	1
Niacin(㎎)	16	Manganese(㎎)	2
Vitamin B6(㎎)	1.4	Fluoride(㎎)	3.5
Folic acid(㎍)	200	Selenium(㎍)	55
Vitamin B12(㎍)	2.5	Chromium(㎍)	40
Biotin(㎍)	50	Molybdenum(㎍)	50
Pantothenic acid(㎎)	6	Iodine(㎍)	150
Patassium(㎎)	2,000		

*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A

○ 상당한 양의 비타민 및 미네랄 기준
- 음료를 제외한 제품의 100g 또는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음료 제품의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7.5%일 때
- 패키지가 1회 분량일 경우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비타민 및 미네랄 외에 영양정보 기재 시 참고할 성인기준 1일 권장 섭취량

열량 또는 영양소	섭취 기준
열량(Energy)	8,400kj / 2,000kcal
지방총량(Total Fat)	70g
포화지방(Saturates)	20g
탄수화물(Carbohydrate)	260g
설탕(Sugars)	90g
단백질(Protein)	50g
소금(Salt)	6g

*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B

○ 열량 및 영양소 표시 단위 변환표

– carbohydrate	17 kj/g – 4 kcal/g
– polyols	10 kj/g – 2.4 kcal/g
– protein	17 kj/g – 4 kcal/g
– fat	37 kj/g – 9 kcal/g
– salatrims	25 kj/g – 6 kcal/g
– alcohol(ethanol)	29 kj/g – 7 kcal/g
– organic acid	13 kj/g – 3 kcal/g
– fibre	8 kj/g – 2 kcal/g
– erythritol	0 kj/g – 0 kcal/g

*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V

○ 영양성분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과 표현을 사용하여 표기함

energy	kj/kcal
fat	g
of which	
– saturates,	g
– mono-unsaturates,	g
– polyunsaturates,	g
carbohydrate	g

of which	
– sugars,	g
– polyols,	g
– starch,	g
fibre	g
protein	g
salt	g
vitamins and minerals	

* 출처 :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V

※ 참고자료

- ○ EU 라벨링 규정
  https://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labelling_legislation_en
  https://www.gov.uk/food-labelling-and-packaging/
- ○ 새로운 EU 라벨링 규정(1169/2011/EU) 전문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11R1169
- ○ 영국 식품안전청
  https://www.gov.uk/food-labelling-and-packaging/
- ○ 유기농 식품 관련 수입조건, 라벨링 관련 정보
  https://ec.europa.eu/agriculture/organic/index_en

2. 법률규정 및 최근 동향

❑ 유럽연합 통관 시스템 현대화

- ○ 본 법안은 위임법령(delegated act)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검토되어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관세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 식품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식품 유통 검사 규정 도입

- ○ 2017년 3월 15일 유럽연합의회는 기존에 시행하던 식품 유통 검사 규정 EU Official Control rules, Regulation(EC) No 882/2004를 더욱 강화하여 Regulation(EU) 2017/625 규정을 도입함

- 2013년 유럽 말고기 스캔들 이후 유럽연합은 기존에 존재하던 식품 단속 규정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2016년 6월 15일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관련 규정과 합의를 도출
- 해당 규정은 2017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6년 이내에 모든 세부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

○ 신규 도입된 규정은 기존의 식품 안전 관련 단속 규정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식품 및 사료, 동물 및 식물의 위생에도 적용되며 유럽연합 내부 시장 식품 뿐 아니라 수입되어 들어오는 품목에도 적용
- 기존의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적용하여 과거 위반 기록 보유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될 예정
- 단속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전 유통 단계를 포괄하여 이루어짐
-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 단속 당국은 년 1회 수행보고서를 공개해야함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규제 법률 채택**[10)]

○ 2002년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의 위험성이 감지된 후 유럽식품안전처(EFSA)는 2015년 과학적 견해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암 유발 가능성 때문에 식품을 통한 섭취 정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2017년 7월 19일 EU 위원회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감소를 위한 법률 제안을 채택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함

○ 기준수치

식품	기준수치(㎍/kg)
제빵류	
밀가루 빵	50
그 외 빵	100
아침식사 시리얼	
겨, 통밀 및 미정제 곡물 시리얼	300
밀, 호밀류	300

10) 관련 법규 : Commission Regulation(EU) 2017/2158의 붙임 Ⅳ 참조

식품	기준수치(μg/kg)
옥수수, 귀리, 쌀, 보리류	150
비스킷 및 와플	350
감자 크래커	400
얇은 귀리 비스킷	350
생강쿠키	800
그 외 비스킷	300
로스트 커피	400
인스턴트 커피	850
커피대용품	
시리얼 커피 대용품	500
시리얼과 치커리 혼합 커피 대용품	혼합비율에 따라 상대적임
치커리 커피 대용품	4,000
비스킷과 러스크를 제외한 베이비 푸드	40
비스킷과 러스크 베이비 푸드	150
기타	
감자튀김	500
감자칩, 감자크래커 및 감자류 식품	750

* 출처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7R2158

○ 아크릴아마이드의 신경계 장애 위험 요인이 연구됨

○ 아크릴아마이드는 잠재적인 위해요소이기에 하루제한용량을 정할 수 없지만 기준복용량 신뢰제한 Benchmark Dose Lower Confidence Limit(BMDL10)을 건강주의수준으로 제시

- 종양 : 0.17mg/kg bw/day
- 기타 신경계질환 : 0.43 mg/kg bw/day[11)]

11) mg/kg bw/day = milligrams per kilogram of body weight per day(몸무게 당 하루제한용량)

❑ 농약 Chlormequat chloride(CCL)의 최대 잔류량

○ 유럽연합은 EU에 수입되는 포도의 농약 잔류량 허용치를 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함

- 본 법안이 표결되면 대EU 최대 포도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EU 집행위에서 작성한 조정안은 식물의 성장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농약 chlormequat chloride(CCL)의 최대 잔류량(MRL)을 현행 0.05ppm에서 0.01ppm으로 감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CCL은 유해하지 않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포도 농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식품안전청에서는 1.06ppm 정도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규정함

○ 최근까지 EU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량 검사 기계는 최대 0.05ppm까지 검출이 가능했으나 점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0.01ppm까지 조사되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앞으로는 정밀하고 엄격한 검사가 각 EU 국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 L-트레오닌[12)]

- 최근 유럽연합집행위는 가축 및 동물용 사료를 만들 때 대장균(E-coli) 발효에 의해 제조 및 첨가된 L-트레오닌의 사용을 승인함
- 지난 2015년 3월 유럽연합식약청에서는 동물용 사료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변형 대장균이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L-트레오닌의 첨가는 동물뿐만 아니라 그 동물을 섭취하는 소비자 및 환경에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함
- 그러나 EU집행위에서는 과학적인 의견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L-트레오닌에 대한 추가의 연구를 요청, 마침내 EU식약청에서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L-트레오닌은 인간을 포함, 어떠한 종에도 유전자 조작과 같은 위험을 끼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림
- 특히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게는 L-트레오닌은 매우 유용한 물질로 반추위(한번 삼킨 음식물을 다시 입 앞으로 토하여 잘 씹은 후 삼킬 수 있는 특수한 위)의 활동이 저하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함

---

12) L-트레오닌은 모든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가축용 사료를 만드는 업장에서는 단백질의 섭취를 높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첨가물

○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식품

- 밀가루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글루텐 프리 식품은 유럽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는 글루텐 함량이 20ppm이하, 즉 1kg 당 20mg 이하여야 글루텐 프리 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유럽에서 글루텐은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은 라벨링을 통해 글루텐 정보를 기입하고 있음
- 각 회원국의 식약청에서는 다양한 글루텐 프리 제품에 대한 글루텐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샘플조사를 실시, 글루텐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리콜 등의 후속 절차를 실행함
  - (독일) 유기농 쌀로 만든 과자 : 글루텐 함량 137mg/kg-ppm으로 전량 회수
  - (독일) 쿠키 'Reiszerge' : 글루텐 초과 함량(85mg/kg-ppm), 소비자 리콜실시
  - (독일) 글루텐 프리 시리얼 : 글루텐 초과 함량(60.6mg/kg-ppm), 소비자 리콜 실시
- 건강을 중시하고 세계적인 '웰빙' 추세에 따라 글루텐 프리 식품이 주목받고 있으나 글루텐 함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폐기 또는 리콜되는 제품이 각 국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유아식품 및 특수의료용 식품

-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ncil) 규정 609/2013은 유아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및 식이 요법을 위한 하루치 식량 대체 식품에 대해서 규정함. 또한 본 식품들의 조리에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해 규정함
- 본 규정은 기술 및 과학의 발달, 소비자 건강 보호를 중시하여 개정 가능

1) Ferrous bisglycinate[13)]

- 2006년 1월 6일 유럽식품안정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의견을 따르면 ferrous bisglycinate는 철분 공급용으로 식품. 유아식품 및 영양식품에 사용 되어도 위험이 없다고 판단
- 최종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실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얻기 힘들어, 본 물질은 규정 no 609/2013에 등록 되지 않았으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 no 2017/1091은 본 물질을 등록하기로 함

13) 관련 법령 : 유럽위원회 규정 2017/1091은 Pos-Ca(Phosphoryl Oligosaccharides of Calcium) 및 ferrous bisglycinate

- 따라서 Ferrous bisglycinate는 분유, 곡류식품 및 유아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및 식이 요법을 위한 하루치 식량 대체 식품의 조리에 사용 허용됨

2) Pos-Ca (Phosphoryl Oligosaccharides of Calcium)

- 유럽위원회는 Pos-Ca를 칼슘 공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EFSA에 의견을 요청함
- 2016년 4월 26일에 EFSA는 본 물질은 특수의료용 식품에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의견에 기재한 사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14)]

14)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2903/j.efsa.2016.4488/full